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63호

2016. 8. 4.(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6-1586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제2016-160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3
제2016-1621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 고 시

제2016-222호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6
제2016-226호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10
제2016-227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11
제2016-228호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44
제2016-229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7
제2016-230호 「서울특별시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LED 모듈·커넥터· 전원공급용 컨버터 표준」 개정 고시	72
제2016-231호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95
제2016-232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123
제2016-233호 이문·회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회경3) 및 지형도면 고시	125
제2016-234호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36

◆ 공 고

제2016-1521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159
제2016-1579호 2016년도 제13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159
제2016-1581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공고	162
제2016-1582호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공고	163
제2016-159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163
제2016-159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164
제2016-1595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164
제2016-1596호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계획 공고	174
제2016-1598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177
제2016-1599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78
제2016-1620호 『2016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 추천공고	197
제2016-1623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98

제2016-162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99
제2016-162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광장) 실시계획 정정공고	201

◆ 구 고 시

제2016-80호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213
제2016-72호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214
제2016-8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광진구)	218
제2016-65호 도시계획시설(수도, 청소년수련시설)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은평구)	218
제2016-66호 도시관리계획(불광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 도면 고시(은평구)	221
제2016-9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서대문구)	222
제2016-10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마포구)	223
제2016-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강서구)	224
제2016-125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구로구) ..	230
제2016-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영등포구)	234
제2016-7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관악구)	243

◆ 구 공 고

제2016-631호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성동구)	245
제2016-606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광진구)	246
제2016-63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247
제2016-775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금천구)	255
제2016-9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동구)	259

◆ 사업소고시

제2016-1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62
제2016-1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62

◆ 기 타

제2016-289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3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586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내 창업·창직 지원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상의 근거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내 창업·창직 지원 공간 사용료 징수 내용 신설(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생이모작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 2133-7799, FAX : 02)2133-0863
 - E-mail : chiwoo94@seoul.go.kr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60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기존 4대문에서 한양도성 역사도심으로 변경된 역사도심의 공간적 범위를 기존 4대문안을 포함한 한양도성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역사도심의 범역을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확장함(안 제16조)
- 나. 기존 [별지 도면] 4대문 범역 확정을 [별지 도면] 역사도심 범역확정으로 변경함(안 별지 도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전화 : 02)2133-8324, FAX : 02)2133-0736, E-mail : kkon9@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621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정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함.

나. 대의표지에 관한 규정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동함으로 삭제함

다. 전문의용소방대 발대로 인하여 [별표1]의 전문기술지원반을 삭제하고 업무분장 내용을 조정함.(안 제2조)

라. 대원의 임용절차 및 사직의 경우 관련 서식들을 변경하고 해임 시 출석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안 제3조, 제4조)

마. 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규로 이동함으로 삭제하고 연임의 절차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바. 의용소방대 복제에 관한 규정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별도 정함으로 삭제함.

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시 동의를 얻도록 하며 교육·훈련과 소집수당 지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서식을 추가함.

파. 재해보상의 청구 서식을 1개로 통합하여 간소화 하고 기존 규칙의 조호를 변경함.(안 제10조~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참조 : 재난대응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전화 : 02-3706-1416, FAX:02-3706-1419, E-mail: 25235@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2호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 및 서울시고시 제2008-215호(2008.06.26.)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지정된 영등포구 당산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해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해제사유

본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된 구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요청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원안 가결) 됨

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가. 정비예정구역 위치 및 면적

위 치	면 적(ha)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영등포구 당산동2가 110 일대	1.57	서고시 제2004-204호(2004.06.25.)

나. 정비예정구역 계획내용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 시행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9	당산1동	110	1.57	210	-	50	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철거	
폐지	해 제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²)	구역지정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영등포구 당산동2가 110번지 일대	15,764	서고시2008-215호 (2008.6.26.)

라. 정비계획

- 용도지역 :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15,764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620	10.28	
	도 로	790	5.01	
	공 원	830	5.27	
택 지	소 계	14,144	89.72	
	택 지1	13,834	87.7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2	310	1.96	종교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도 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2	당산동2가 159-4	당산동2가 48-19	
변경	소로	2	-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2	당산동2가 159-4	당산동2가 48-19	도로폭 환원 10m → 8m
기정	중로	3	-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0	당산동2가 48-19	당산동2가 56	
변경	소로	2	-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0	당산동2가 48-19	당산동2가 56	도로폭 환원 12m → 8m
폐지	소로	3	6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5	당산동2가 147-1	당산동2가 159-2	
변경	소로	3	6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5	당산동2가 147-1	당산동2가 159-2	환원
폐지	소로	3	4	3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5	당산동2가 110	당산동2가 122	
변경	소로	3	4	3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5	당산동2가 110	당산동2가 122	환원
폐지	소로	3	2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5	당산동2가 53	당산동2가 71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5	당산동2가 53	당산동2가 71	환원

■ 공 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소공원	당산동2가 159-4번지 일대	830	-	-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택지1	13,834	당산동2가 110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 이하	238% 이하	22층 이하 (66m이하)
택지2	310	당산동2가 159-3 일대	종교시설	관련법규에 의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3. 위치도 및 해제도면 : 붙임과 같음

4. 구역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 실효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 실효일 : 고시 게재일

5.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02-2133-7237) 및 영등포구 주택과(02-2670-3660)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도면

붙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도면

□ 위 치 도



□ 정비예정구역도(기정)



□ 정비구역 결정도(해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6호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으로 수립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에서 지정된 영등포구 영등포동 570-17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으로 해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 1개소 (0.5ha)

○ 영등포구 영등포동 570-17번지 일대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15	영등포동	570-17	0.5	190%	12층 이하	60%	2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복 (전면)	2004. 6. 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2. 해제사유

2004.6.25.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영등포구청장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위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2.2.1.)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주민공람 등 해제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 해제 함.

3. 해제도면 : 붙임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02-2133-7187) 및 영등포구 주택과(02-2670-366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

■ 정비예정구역 해제도(영등포구 영등포동 570-17 일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7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장

1.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83호	도안사 은선묘아미타삼존도 (度岸寺 銀線描阿彌陀三尊圖)	1점	167×150	1762년 경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도안사)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84호	백자청화운현명만자문병 (白磁靑畵雲峴銘卍字文瓶)	1점	높이 31.5 입지름 4.3 굽지름 12.8	19세기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송암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85호	화계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華溪寺 木造觀音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불상1구 복장6건	불상 높이 79.8	조선후기	서울시 강북구 화계사길 (화계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86호	화계사 아미타괘불도 및 오여래도 (華溪寺 阿彌陀掛佛圖 및 五如來圖)	8점	조사보고서 별도 표기	1886년 경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87호	화계사 천수천안관음변상판 (華溪寺 千手千眼觀音變相板)	1점	113.8×77.7	조선후기	서울시 강북구 화계사길 (화계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88호	화계사 탑다라니판 (華溪寺 塔陀羅尼板)	3점	① 197.5×73 ② 150.4×66.8 ③ 128.5×68.5	① 1873년 ② 1873년 ③ 조선후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89호	화계사 아미타후불도 (華溪寺 阿彌陀後佛圖)	1점	265.5×249.5	1875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90호	화계사 명부전 지장보살도 (華溪寺 冥府殿 地藏菩薩圖)	1점	194.4×253.2	1878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91호	화계사 명부전 십대왕도 (華溪寺 冥府殿 十大王圖)	1점	137×83.5	1876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92호	화계사 명부전 시왕도 및 사자도 (華溪寺 冥府殿 十王圖 및 使者圖)	4점	① 135.5×209 ② 135.5×131.3 ③ 128.5×68.5 ④ 126.7×82.5	1878년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 도안사 은선묘아미타삼존도

홍색으로 물들인 비단바탕에 은선(銀線)으로 그리고, 얼굴·머리 등에 부분적으로 채색을 첨가한 은선묘아미타삼존도로, 화면에 아미타불·관음보살·지장보살·2비구(가섭, 아난존자) 외에 설법을 듣기위해 구름을 타고 모여드는 10타방불이 좌우 5구씩 최상단에 묘사된 배치구도임.

화기의 제작연대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나, 18세기 성행하던 선묘불화의 화풍으로 미루어, 1762년경에 조성된 작품으로 추정됨.

훼손과 변색이 보이지만, 당시 선묘불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는 유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백자청화운현명만자문병

‘운현(雲峴)’이라는 명문을 통해 19세기 후반 경(1864년 이후) 사옹원 산하 분원 관요에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수리·복원된 곳 없이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음. 독창적으로 적용된 사방연속 만자문(卍字文)의 표현을 통해 당시 새로운 유행과 수준 높은 미의식을 잘 보여줌.

역사성, 조형성, 보존상태 등으로 판단할 때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화계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화계사에 봉안되어 있는 설법인(說法印)의 관음보살상으로, 복장유물로 후령통 일괄과 백지몽치 3점, 전적류 3종이 확인되었는데,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5(용복사, 1634) 1책,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용복사, 1635) 3책, 염불작법(회용사, 1635) 5책과 기타 결수문 등 낱장 4매임.

전적류는 대체로 경기도 용복사에 보관되던 경판에서 인경한 것인데, 원각경 1책에는 1649(인조27)에 다시 인경했다는 목서(順治6年己丑(1649) 4月日)가 있어, 이 직후 불상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조성발원문은 전하지 않으나, 복장유물로 조성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고, 조선후기 불교조각으로서 조형적으로 뛰어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화계사 아미타패불도 및 오여래도

패불은 화면을 상·하 2단으로 구분지어 상단에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협시로 삼은 삼존 불상이 그려지고, 하단에는 중앙의 관세음보살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2구씩의 사천왕상을 배치함. 1879년 개운사 패불도와 거의 동일한 형식 및 양식적 특징을 보이며, 화기를 통해 광서 12년(1886) 궁순, 진철, 기경, 축연 등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오여래도와 인로왕보살도는 패불도와 함께 사용하였을 의식용 불화로, 세부표현 및 이목구비, 색채 등으로 보아 패불도와 동일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임.

19세기 중반 이후 서울·경기지역 불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패불도의 양식파악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일괄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화계사 천수천안관음변상관

천수천안관음을 형상화한 목판으로, 사자와 위에 앉은 천수관음보살을 선재동자가 합장하여 경배 드리는 장면임. 『화계사약지』(1938년)에 1874년 탄생한 순종의 수명장수를 기원하여 수

를 놓아 제작한 수관음보살도(1875년)를 하사받은 기록이 전하고 있는데, 이 목판의 도상과 유사하여 모본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조성시기는 알 수 없으나, 1875년 수관음보살도를 참조한다면 이 목판은 1875년 이전, 즉 1873년경에 탐다라니와 함께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임.

조선후기 불화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목판으로, 서울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화계사 탐다라니판

① 비로자나장엄장대누각탐다라니목판 : 8개의 목재를 연결하여 정밀하게 판각한 것으로, 간기에 의하면 ‘동치 계유(1873년) 단양일’에 조성되었으며 성월이 씌.

② 원통궁전탐다라니목판 : 6개의 목재를 연결하여 판각한 것으로 간기에 의하면 1873년에 조성되었고 성월이 씌. 형태 및 재질, 상태 등을 볼 때, 관음보살이 머무르는 원통전을 묘사한 탐다라니를 관음변상판과 함께 조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③ 연화교향탐다라니목판 : 5개의 목판을 연결하여 만들었으며 간기는 없으나 형태와 재질, 기법 등으로 보아 같은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천수천안관음변상판〉과 비교하여 화엄경의 선재동자의 구도행에 연관된 내용들로 구성된 것으로,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함께 일괄 조성된 탐다라니로 볼 수 있음. 판각 솜씨와 보존상태가 좋은편이고, 일괄 세트로 구성된 예가 드물기 때문에 서울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화계사 아미타후불도

화기에 의하면 화계사 대웅보전 상단후불탱으로 조성되었으며, 화면 중앙의 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육보살, 십대제자, 사천왕이 시립한 군도식 배치구도를 취함. 화산당 재근(華山堂 在根)이 수화승으로, 19세기 후반 서울, 경기도 일대의 불화 특징을 잘 반영한 완성도 높은 작품임.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화계사 명부전 지장보살도

화계사 명부전의 본존인 지장보살삼존상의 후불화로 봉안되어 있으며, 중앙의 지장보살삼존을 중심으로 4왕과 6보살, 사천왕상이 좌우에 대칭되게 늘어서 있고 화면 상단 좌우에는 각각 9구씩의 화불이 그려짐. 9구의 화불들이 구름을 타고 하강하는 모습은 지장보살도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성임.

화기에 의하면 1878년 화산당 재근(華山堂 在根)이 수화승이며, 19세기 왕실의 상공들이 조성 발원함.

조선 말기 서울 경기지역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화계사 명부전 십대왕도

한 폭의 화면에 구름을 배경삼아 입상의 십대왕만을 그려 놓은 시왕도로, 그 예가 드문 작품임. 화기를 통해 1876년 수화승인 화산당 재근(華山堂 在根)을 비롯하여 당시를 대표하는 화승들에 의해 조성된 것이 확인됨.

명호를 지닌 십대왕을 한 폭에 그린 예는 어느 사찰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예로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화계사 명부전 시왕도 및 사자도

시왕도는 열명의 왕 중 2왕 또는 3왕을 한 폭으로 구성한 4폭 형식인데, 6왕·8왕·10왕도 1폭이 분실됨. 화기에 의하면 화원은 승의(勝宜)이며, 1878년 상궁들의 시주로 봉안됨. 12지신상이 등장하고, 각 지옥의 명칭을 적어 알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적임.

사자도는 화면을 두 폭으로 나누어 사자와 지옥장군을 그린 것으로, 시왕도와 함께 장군·사자도를 함께 그리는 것은 조선말기 서울 경기지역에서 유행하던 것이며, 사자도는 보광사 사자도(1872년)와 같은 초본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왕실발원 불화로서의 품격을 잘 보여주며, 조선말기 서울·경기지역의 시왕도와 사자도 형식을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2. 문화재 지정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

3.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별첨>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도안사 은선묘아미타삼존도**

홍색으로 물들인 비단바탕에 은선(銀線)으로 그리고 얼굴, 머리 등에 부분적으로 채색을 첨가한 이 은선묘(銀線描) 아미타삼존도는 채색화와 병행하여 꾸준히 이어져 내려 온 선묘화(線描畵) 계열로, 금선묘(金線描)인 1749년 실상사 아미타극락회상도(247x243cm), 1759년 청곡사 남암 아미타극락회상도(동국대박물관소장, 131x133cm) 등 18세기에 유행한 선묘화들과 비교할 만하다.

화면에 아미타불·관음보살·지장보살·2비구(가섭, 아난존자) 외에 설법을 듣기위해 구름을 타고 모여드는 10타방불이 좌우 5구씩 최상단에 묘사된 간단한 배치구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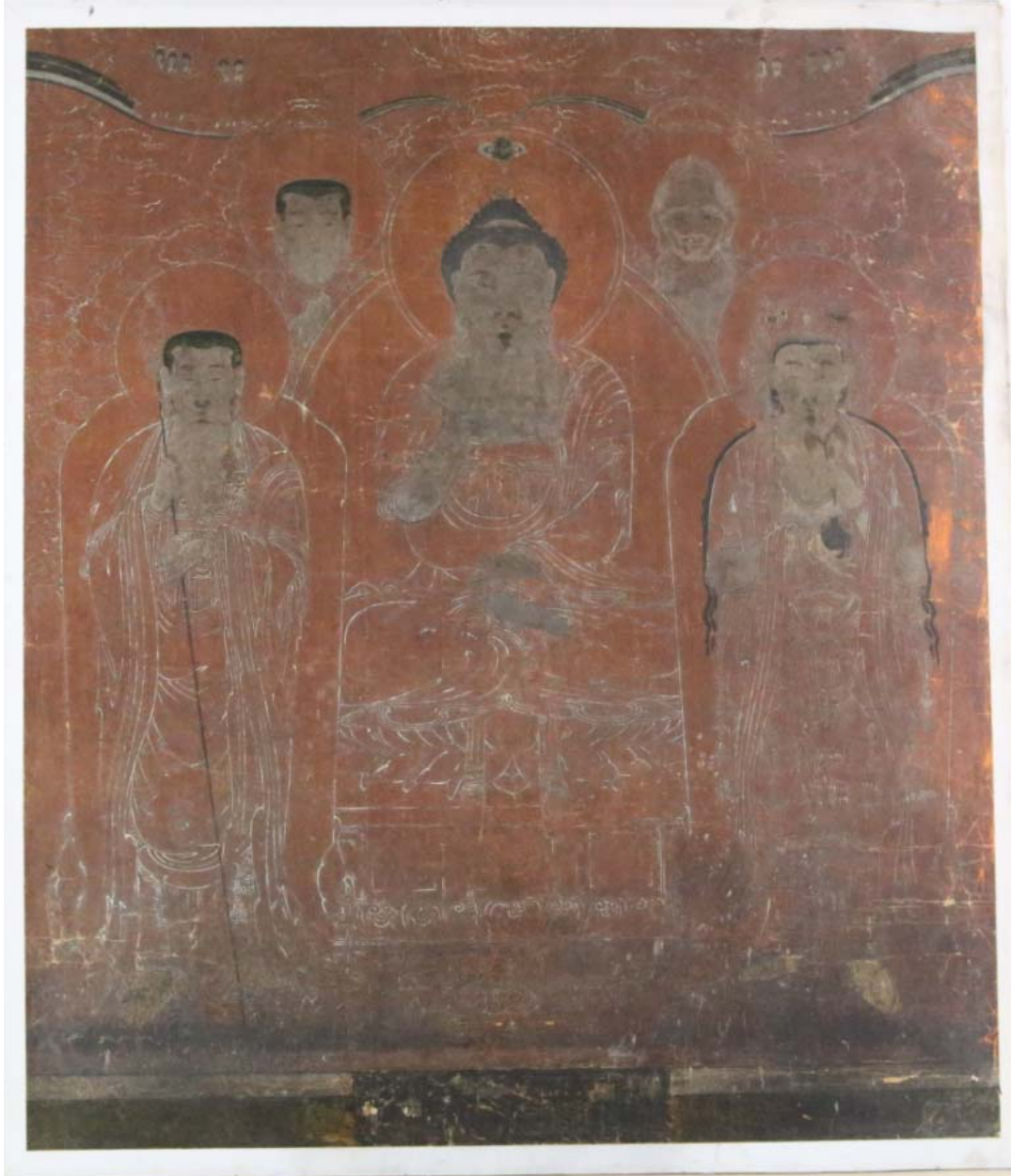
2겹의 원형 두·신광(頭·身光)을 지닌 아미타불좌상의 머리에는 중앙계주가 표현되고, 둥근 정상계주에서는 좌우로 광명이 뻗어나와 와문(渦紋)을 형성하고 있다. 아미타수인을 한 본존불은 타원형에 가까운 얼굴에 눈이 가늘고 코는 길며 입이 작은 단아한 모습으로 움추린 듯한 상체에 걸쳐진 법의는 통견(通肩)이다. 좌우협시보살입상인 늘씬한 관음보살과 지장보살 중, 화불이 묘사된 보관 쓴 관음보살은 정병과 버드나무가지, 승형 머리의 지장보살은 육환장을 잡고 있다.

홍색바탕의 은선묘는 유려하고 활달한 필선을 구사하여 강약을 자유자재로 사용한 뛰어난 필력으로 화사한 부분적인 채색과의 조화가 뛰어난 불화이다.

이 은선묘아미타삼존도의 제작연대는 화기에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당시 유행하던 선묘불화의 화풍으로 미루어, 1762년경 작품으로 추정된다.

아미타삼존(아미타불·관음보살·지장보살)의 광배로 인해 마치 3구획 안에 각 존상이 나타난 듯한 표현, 관음보살·지장보살의 다소 변형된 신광의 윤곽선은 특징적이다. 늘씬한 형태묘사, 하단부 대좌 주변의 연꽃은 상징적인 연꽃표현으로 당시 선묘불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군데군데 훼손이 보이고 변색되었지만 당시 선묘불화 가운데 수작으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도안사 은선묘아미타삼존도 사진자료



■ 백자청화운현명만자문병

높이 31.5cm의 비교적 큰 백자 주병으로 이물질이 적은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여 물레 성형했고 문양은 청화로 장식하여 구운 것으로 유조는 투명하며 담청색을 띤다. 구연은 밖으로 살짝 도톰하게 말려 있으며 목은 곧게 내려오다가 서서히 넓어져 몸체 아래 부분에서 크게 팽창하고, 무게 중심은 낮고 굽이 넓은 편이다.

문양은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구연부 바로 아래와 어깨부분에 선으로 여의두문대를 돌렸는데 여의두문대는 목조 건축물의 단청 주의(柱衣)와 유사하게 도안화되었다. 어깨부분 여의두문대 아래에는 사방연속의 만자문이 선으로 묘사되었다. 만자문은 자를 대고 그은 듯 좌우 빗금이 깔끔하며, 기하학적 형태로 교차한다. 몸통의 굴곡에 선의 간격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으며 오차 없이 정교하다. 굽 외면은 2줄의 청화 횡선대로 마감하고 굽 안바닥 중앙에는 ‘운현(雲峴)’이라는 청화명문을 해서로 필사했다.

유태의 색조는 담청백색이며, 갑발에 넣어 구운 듯 유면이 고르다. 표면에는 빙열이 없고 광택이 은은하며, 굽 접지면에는 입자가 고운 모래를 내화토물과 섞어 고르게 바른 후 구웠다.

현재 굽 안쪽에는 일부(약 2cm)가 깨져 결손되었다. 접지면의 내화토와 모래를 갈아내고 사용한 흔적이 보이며, 그 외에는 원형이 온전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이 백자 병은 고종(高宗) 즉위 다음해인 1864년 대원군의 사택이 운현궁으로 승격하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요에서 만들어 진상 받아 사용한 유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위를 알려주는 유물은 다수가 존재하며 대부분은 굽 안바닥에 ‘운현(雲峴)’이란 명문이 시문되어 있다.

운현궁 진상품의 대부분은 발과 접시이고, 병이나 항아리, 합 등은 소량 알려져 있다. 예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백자청화당초문운현명병>, <백자청화영지당초문운현명항아리>, 국립고궁박물관의 <백자청화운룡문운현명병>,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백자청화모란문운현명합> 등이다.

19세기는 청화백자의 수요층이 확대되고 대외교류의 증가로 다양한 형식의 문양이 활용되었는데, 사방연속 만자문은 병 뿐만 아니라 다른 기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예이다. 이 병은 19세기 조선왕실 관련 유물로서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청화백자 장식과는 다른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청화백자병은 ‘운현(雲峴)’이라는 명문을 통해 19세기 후반 경(1864년 이후) 사용된 산하 분원 관요에서 제작된 최고급품으로 수리·복원된 곳 없이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고, 독창적으로 적용된 사방연속 만자문의 표현을 통해 당시 새로운 유행과 수준 높은 미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역사성, 조형성, 잔존상태 등으로 판단할 때 서울시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백자청화운현명만자문병 사진자료



백자청화운현명만자문병



‘만’자문(‘卍’字文)



‘운현’명(‘雲峴’銘)

■ 화계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화계사에 봉안되어 있는 등신대 크기의 목조보살좌상으로, 원래는 삼존불의 협시보살상으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살상의 보존상태를 보면, 도금이 벗겨지고 표면에 균열이 곳곳에 발견된다. 앞으로 등이 굽은 자세로 앉은 보살상의 체구는 좁은 어깨 때문에 좌폭(坐幅)이 더 넓게 느껴지는 비례를 보여준다.

체구에 비해 큰 머리에는 화문(花紋)과 화염보주로 장식된 보관(寶冠)을 쓰고 있으며, 보관 아래의 앞머리는 가지런히 반원형태로 조각되었고, 머리다발이 귀를 지나 양 어깨 위에 늘어져 있다. 얼굴에는 반개(半開)한 눈과 오희한 콧날, 길고 뚜렷한 인중, 미소 띤 입술이 표현되어 온화하고 자비로운 상호(相好)를 보여준다.

편평한 가슴에는 내의가 접혀져 사선의 주름을 이루었고 보살 옷은 여래상의 대의처럼 이중 착의법(혹은 편형 편단우견이라고도 함)으로 입은 모습으로, 한 자락이 왼쪽 어깨로 넘겨져 등 뒤로 늘어져 있다. 별재(別材)로 제작한 양 손은 가늘고 긴 손가락이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說法印)을 결(結)하고 있다. 다리를 덮은 치마의 주름은 좌우 대칭에서 벗어나 가운데 커다란 물결주름을 이루며 흘러내린다.

근래 이 보살상에서 복장유물이 수습되었으나, 조성기나 발원문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복장에서 수습된 유물도 소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미 이전의 개금 중수 시에 일부가 일실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복장유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후령통 일괄

2) 백지몽치 3점

3) 전적류

①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5(경기 삭녕 용복사, 1634) 1책

四周雙邊, 半郭 24.7×20.0cm, 有界, 半葉 9行21字, 內向2葉花紋無魚尾

崇禎7年甲戌(1634)仲夏 京畿朔寧郡地水(淸)山龍腹寺開板

印經墨書: 順治6年己丑(1649)4月日

②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경기 삭녕 용복사 1635?) 3책

四周單邊, 半郭 18.0×13.5cm, 無界, 半葉 8行17字, 上下2葉花紋魚尾

③ 念佛作法(경기 양주 회용사, 1635) 5책

四周單邊, 半郭 18.4×14.3cm, 無界, 半葉 9行16字, 無魚尾

崇禎8年乙亥(1635)12月日 回龍寺開刊移傳龍腹寺

*月印千江曲 등 國漢混用

④ 기타 <결수문> 등 낱장 4매

이들 전적류는 대체로 경기도 용복사에 보관되고 있던 경판에서 인경하여 관음보살상을 조성하면서 시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원각경(권5) 1책에는 1634년에 용복사에서 판각한 <원각경> 경판에서 1649년(인조27)에 다시 인경한 목서(順治6年己丑(1649) 4月日) 기록이 보이고 있어 이 직후 관음보살상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목조관음보살상에서 수습한 전적류는 불상 조성기가 일실되어 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상의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본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비록 조성발원문은 전하지 않으나,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고, 조선후기 불교조각으로서 조형적으로 뛰어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복장유물과 함께 일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 유물목록 : -1. 목조관음보살좌상

-2. 복장유물 일괄 ①후령통 일괄 ②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5

③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3책) ④염불작법(5책)

⑤백지몽치(3점) ⑥결수문 등 낱장(4점)

화계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사진자료



화계사 목조관음보살좌상



화계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 일괄

■ 화계사 괘불도 및 오여래도

화면을 상·하 2단으로 구분지어, 상단에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협시로 삼은 삼존불상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중앙의 관세음보살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2구씩의 사천왕상을 배치하였다. 화면 상단 전체를 가득 메울 만큼 거대한 신체에 큼직한 키 모양 광배를 지닌 본존불은 어깨 위로 들어 올린 오른손과 복부 쪽에 댄 왼손의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 손 모습 및 하단부의 관세음보살상, 그리고 화기 중의 “...一切衆生同歸淨土 同見彌陀 同聞淨法 同化衆生之大願”이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하품중생인(下品衆生印)의 아미타불로 추정된다.

육계(肉髻)가 뽕족한 머리에는 중앙계주와 정상계주가 마련되어 있으며, 얼굴은 뺨이 부풀어 둥그스름해지고 이목구비가 정연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양어깨를 감싼 통견 형식의 법의(法衣)는 주홍색 바탕에 무늬 없이 끝단에만 화려한 연꽃무늬를 장식하였고, 군의(裙衣)와 이를 묶은 띠 매듭, 대의 안자락을 적색과 녹색, 군청색으로 처리하고 머리 또한 코발트 계통의 밝은 청색을 사용함으로써 강한 색 대비를 보인다. 이와 같은 색채 대비는 그림 배경을 밝은 청색 바탕에 적색과 녹색의 채색구름으로 처리한데서도 엿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강렬한 느낌이다. 큼직하고 기다란 귀에 목의 삼도(三道) 표현이 뚜렷하며, 가슴에는 ‘卍’ 자가 선명하다.

본존불 좌우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자리하였는데, 크기를 본존불에 비하여 유난히 작게 그려졌다. 갈색 투명 머리광배에 두 상의 옷 또한 본존과 동일하게 무늬 없는 주홍바탕에 끝단만을 연꽃무늬로 장식하여 전반적으로 화려함이 배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단부 중앙의 관세음보살좌상은 둥근 머리광배와 몸광배를 구비하고, 입상의 화불(化佛)이 안치된 보관을 썼으며, 두 손은 선정인(禪定印) 자세로 정병을 받쳐 들고 있다. 상의 크기가 큼직하고 하단 중앙부를 차지하는 등 관음보살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본존불이 아미타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 아닌가 여겨진다. 관음보살 좌우에 서 있는 사천왕상 역시 도식적이고 경직된 표현을 하여 전형적인 19세기 후반 불화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상단부에 본존불과 가섭·아난존자를 두고 하단부에 관음상을 비롯하여 사천왕을 두는 도상은 성격에 따른 각 상의 크기라던가, 자세 및 배치 방법이 이보다 앞선 1879년 조성의 개운사 괘불도와 거의 동일함을 볼 수 있어, 그 영향관계가 짐작된다.

화기 중의 “...金魚 比丘虛谷堂亘巡 比丘東昊堂震徹 比丘錦華堂機燭出草 比丘蕙山堂竺衍...光緒十二年丙戌七月日奉安于三角山華溪寺 將此佛事法界羣生同登樂...”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화계사 괘불도는 광서 12년인 1886년 궁순, 진철, 기경, 축연 등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의 네 화원들은 이 외에도 삼각산 청룡사 칠성도 및 현왕도(1868년)를 시작으로 봉은사 칠성도(1885년)와 판전 후불도(1886년), 미타사 신중도(1887년), 망월사 괘불도(1887년), 홍천사 신중도(1890), 봉은사 감로왕도(1892), 지장사 지장보살도(1893년), 봉은사 나한도(1895년)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서울지역 사찰 불화 조성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데, 19세기 후반 당시 불화계를 이끌어 가던 선도적 역할의 화원들이었음이 파악된다.

괘불도 조성에 대한 시주자의 경우 헌종(憲宗)의 모친인 대왕대비 조씨(王大妃 趙氏-신정왕후神貞王后 : 익종翼宗의 비)와 왕대비 홍씨(王大妃 洪氏-효정왕후孝定王后 : 헌종憲宗의 비)를 비롯하여, 상궁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880년(광서光緒 6년) 왕실 발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불상 및 불화조성, 개금·개채 등의 대대적인 불사 이후 왕실과 화계사

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오여래도(五如來圖)와 인로왕보살도(引路王菩薩圖)는 사찰의 큰 의식 시, 괘불도와 함께 사용하였을 의식용 불화로, 더 많은 자료가 있었을 것이나 지금은 오여래도(다보여래多寶如來, 묘색신여래妙色身如來, 광박신여래廣博身如來, 이포외여래離怖畏如來, 감노왕여래甘露王如來) 5폭과 인로왕보살도 1폭 등 6폭만 남아 있다. 각기 녹색의 둥근 머리광배에 연하늘색 장방형의 몸광배를 구비한 오여래도의 경우, 연화좌를 딛고 정면을 향하여 서 있으며, 녹색 둥근 머리광배만을 구비한 인로왕보살도는 몸을 우측으로 튼 채 깃발을 들고 서 있다. 각 그림에는 화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섬세한 세부표현 및 이목구비 묘사, 적·청색의 강렬한 색 대비 등이 괘불도와 동일한 점으로 보아 괘불도와 동일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화계사 괘불도는 1879년 개운사 괘불도와 거의 동일한 형식 및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화원 역시 삼각산 청룡사 칠성도(1868년)를 비롯 봉은사 나한도(1895년)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중반 이후 서울·경기지역 불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괘불도의 도상 및 성격, 색채 등 양식 파악에 있어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왕실과 화계사와의 관계를 알게 해주어 사료적인 가치도 있다고 하겠으며, 괘불도 명칭은 화기 중의 “一切衆生同歸淨土 同見彌陀 同聞淨法 同化衆生之大願”이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아미타불괘불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여래도와 인로왕보살도 또한 괘불도와 한 조를 이루는 의식용 불화로서 괘불도, 괘불함과 함께 일괄하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유물목록 : -1. 아미타괘불도
 -2. 괘불함
 -3. 오여래도(5점)
 -4. 인로왕보살도

화계사 아미타괘불도 및 오여래도 사진자료



아미타괘불도



패불함



오여래도 및 인로왕보살도

■ 화계사 천수천안관음변상관

천수천안관음을 형상화한 목판으로 표면에 주철을 하여 보호하고 있다. 사자좌 위에 앉은 천수관음보살을 선재동자가 합장하여 경배 드리는 장면이다. 42개 손이 나타난 정면관의 천수관음은 타원형의 얼굴, 호형눈썹, 눈이 가늘고 코는 길며, 작은 입과 수염 등은 전형적인 조선조 불화의 양식을 보여준다. 유희좌(遊戯坐)를 취한 천수관음보살이 중앙의 두 손을 제외한 40개의 손에 각기 지물을 들고 있으며, 보관에 화불이 표현되어 있다.

배경으로는 수월관음도에 등장하는 요소인 물결치는 파도와 암반이 하단부에 표현되고 선재동자, 기암괴석 위로 대나무가 솟아오르고, 하늘에는 새가 표현되어 있다. 즉, 수월관음도의 도상에 사자좌의 천수관음을 묘사한 듯하다. 완성도 높은 유려한 각선과 정밀한 묘사로 미루어 당시 뛰어난 각승이 불사에 참여한 것으로 짐작된다.

『화계사 약지(1938년)』에 의하면 화계사에서는 1874년 탄생한 순종의 수명장수를 기원하여 신정왕후 조씨와 효정왕후 홍씨 등이 발원하여 수를 놓아 제작한 수관음보살도(1875년)를 하사 받은 기록이 전하고 있다. 이 수관음보살도는 현재 화계사에 전하지 않으나 이 천수천안관음변상목판의 도상과 유사한 것으로, 1910년에 제작되었다고 하는 수천수관음보살도가 현재 강남의 허동화 자수박물관(2004년 경기도박물관 『실로 갖는 꿈』 전시와 도록에 출판)에 소장되어 있다.

이 화계사 천수천안관음변상목판의 조성시기는 알 수 없으나, 1875년 수관음보살도를 참조한다면 이 목판은 1875년 이전, 즉 1873년경에 탑다라니와 함께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자료가 귀한 조선조후기 천수천안관음변상관은 유려한 각선과 정밀한 묘사 등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화계사 천수천안관음변상판 사진자료



■ 화계사 탑다라니판

화계사 탑다라니판은 3점이 남아있다. 탑다라니는 법사리라고도 하며, 불경을 탑 형태의 도형 내부에 배치한 형태이다. 이와 같은 다라니(陀羅尼, dhāraṇi)에 적힌 진언(眞言)은 『경률이상(經律異相)』에 따르면, 호법(護法) 및 마귀를 복종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진언의 역사는 고대 인도의 주술행위를 비롯한 원주민의 종교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밀교의 진언수행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관찰제법행경(觀察諸法行經)』에서는 열여섯 가지 ‘자다라니(字陀羅尼)’를 설명하면서, “글자의 행상(行相)을 깨달아 승의법(勝義法)을 말하게 하고, 4류(流)를 건너 명색(名色)이 없는 법을 말하게 하며, 보시를 잘 행하고, 인(忍)에 안주함을 스스로 지키며, 6근에 의지하지 않고, 6바라밀을 행하며, 번뇌를 끊게 해주려고 중생을 위해 설법하게 한다. 모든 법의 차별을 잘 알아 의심이 없는 깊은 경지에 이르게 하고, 처할 곳과 처하지 않을 곳을 말하게 하며, 모든 중생의 행하는 바를 알고, 추악한 말을 듣거나 가족과 살과 골수를 버리게 되어도 참게하고, 생각과 뜻이 행하는 것을 알아 법계에 안주하게 한다. 이렇게 나를 깨달아 알면 모든 법에 들어간다.”고 하여 다라니 공덕을 일컫는다.

다라니 공덕에 대한 이해가 조선 후기에 퍼지면서 사찰에서 탑다라니를 판각하는 예가 많아졌다.

① 비로자나장엄장대누각탑다라니판(毘盧遮那莊嚴藏大樓閣塔陀羅尼板)

비로자나장엄장대누각은 『화엄경』 77권 「입법계품」에 이르기를, 선재동자가 남쪽 해안국의 비로자나불장엄장대누각에 올라가 미륵보살을 친견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미륵보살을 만나는 곳이다.

현재 8개의 목재가 연결된 <비로자나장엄장대누각탑다라니판>은 정밀한 판각 솜씨와 탑신의 다층 누각 형태를 잘 표현하고 있으며, 판각된 글씨 또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목재의 뒤틀림 및 갈라짐 현상도 없어서 잘 가공된 목재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고, 표면에 주칠을 하여 보호하고 있다.

간기에 의하면, ‘동치 계유(1873년) 단양일(단오절)’에 조성된 것으로 거사 성월이 썼다.

② 원통궁전탑다라니목판(圓通宮殿塔陀羅尼板)

원통전은 관음보살이 머무르는 곳이며, 간기에 의하면 <비로자나장엄장대누각탑다라니 판>과 함께 1873년에 조성된 것으로, 역시 성월이 쓴 것이다.

현재 6개의 목재를 연결하여 작성한 목판의 두께나 나무 재질, 판각의 깊이를 볼 때 정교한 판각솜씨가 같은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계사약지(1938년)』에 의하면, 화계사에서는 1874년 탄생한 순종의 수명장수를 기원하여 신정왕후 조씨와 효정왕후 홍씨 등이 발원하여 수를 놓아 제작한 <수관음보살도(1875년)>를 하사받은 기록이 전하고 있다. 이 수관음보살도(1875년)의 모본이 화계사에 전하는 <천수천안관음변상판>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원통궁전탑다라니판>과 <천수천안관음변상판>의 형태 및 재질, 상태 등을 볼 때, 관음보살이 머무르는 원통전을 묘사한 탑다라니를 함께 조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천수천안관음변상판> 역시 원통궁전탑다라니 목판의 조성시기와 같거나 그 전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③ 연화고향탑다라니판(蓮華故鄉塔陀羅尼板)

다섯 장의 목판을 연결해서 만든 〈연화고향탑다라니판〉은 왼편 윗 부분에 각각의 이름이 적혀있으며 보탑이 세밀하고 정교하게 판각되었다. 탑 중앙에 여래상이 한 구 있으며 탑신 옥 개석에 풍탁이 달려있다.

간기는 없으나 〈원통궁전탑다라니판〉과 목판 형태가 같고, 목재도 동일하며, 판각의 깊이 및 솜씨도 동일한 계통으로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로자나장엄장대누각탑다라니판(1873), 원통궁전탑다라니판(1873), 연화고향탑다라니판(조선후기)은 같은 나무 재질과 동일한 판각 솜씨를 지니고 있어서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표면에 주철을 입혀 보호하고 있으며, 목재의 뒤틀림 현상이나 갈라짐이 없어서 보존 상태도 좋은 편이다. 아울러 함께 화계사에 전하는 〈천수천안관음변상판〉과 비교할 때, 화엄경의 선재동자의 구도행에 연관된 내용들로 구성된 것으로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함께 일괄 조성된 탑다라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매우 정밀한 판각 솜씨뿐만이 아니라 일괄 세트로 구성된 예가 드문 상황에서 유형문화재로 일괄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유물목록 - 1. 비로자나장엄장대누각탑다라니판
 - 2. 원통궁전탑다라니판
 - 3. 연화고향탑다라니판

화계사 탐다라니판 사진자료



비로자나장엄장대누각
탐다라니판



원통궁전탐다라니판



연화고향탐다라니판

■ 화계사 아미타후불도

화기에 의하면 화계사 대웅보전 상단후불탱으로 조성된 이 아미타후불도는 화면 중앙의 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육보살, 십대제자, 사천왕이 시립한 군도식 배치구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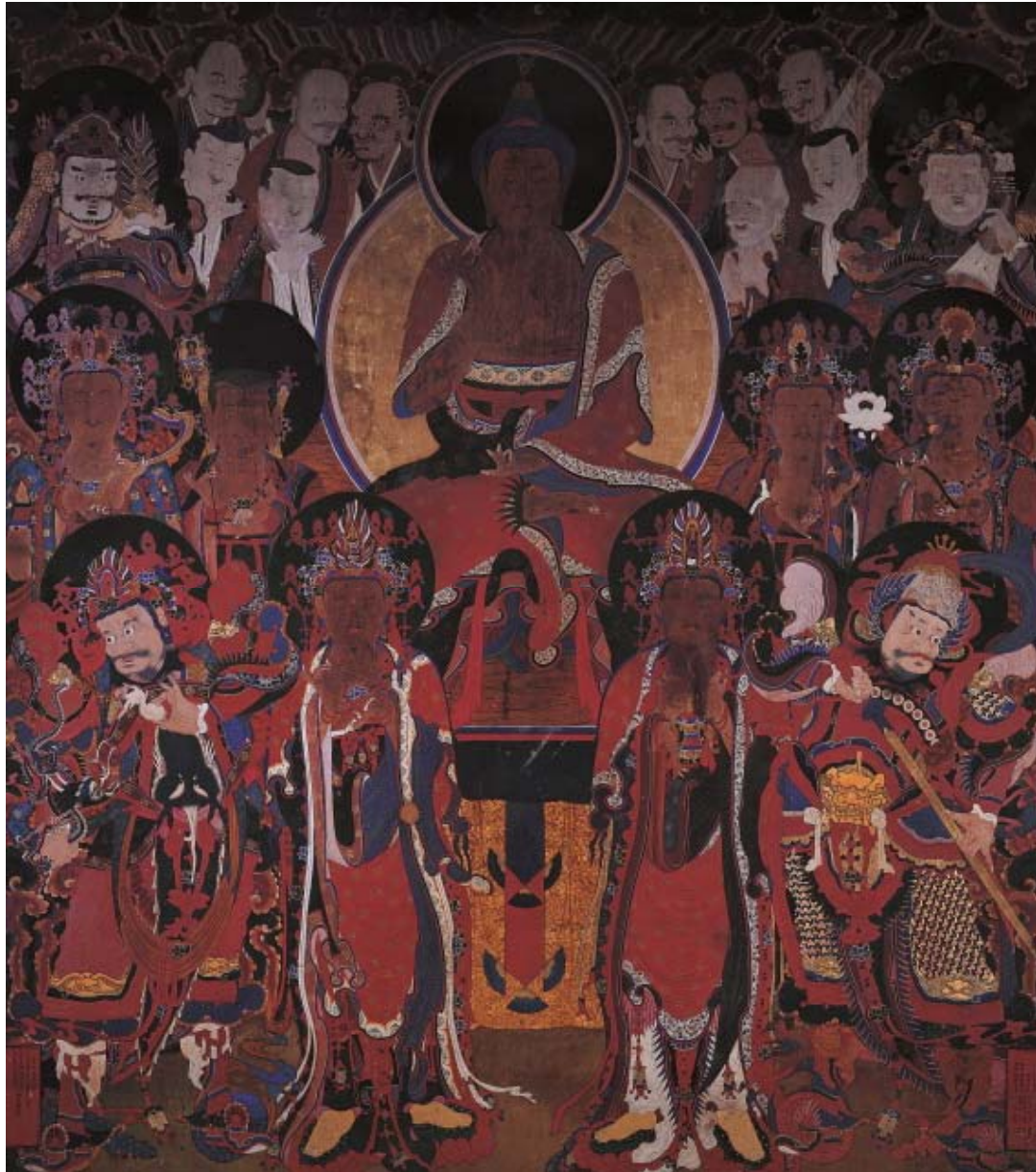
육보살 중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아미타불좌상의 무릎아래 정면으로 서 있고, 관음보살이 든 목이 길고 주둥이 달린 정병과 대세지보살의 보관에 새겨진 정병이 특징적이다. 경책을 든 대세지보살 위로 지장보살이 보인다. 투명한 두건 안에 민머리가 비쳐 보이며, 손에 각기 보주와 석장을 들고 있다. 지장보살의 천의에 대한제국의 상징문장인 이화문(李花紋)과 유사한 문양이 새롭게 나타나 있다.

십대제자는 본존불의 머리 좌우에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대칭으로 5구씩 배치하였다. 사천왕은 사방 모서리에 각기 배치되어 불법 수호를 상징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화승인 화산당 재근(華山堂 在根)을 수화승으로, 응파당 덕순(應波堂 德順)이 참여하였다. 화산당 재근의 화풍이 잘 드러난 이 아미타후불도는 녹색과 적색 위주로 청, 황, 흰색 등이 사용되었으나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배색 효과가 돋보인다. 금색은 본존불의 신광, 문양 등에 다수 사용되었다. 신체 등에 가해진 채색은 짙은 갈색으로 변색되었고, 두광 등에 붓자국이 보인다.

여러군데 안료의 박락과 바탕천의 균열, 찢는 등으로 인해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 못하나 구도, 형태, 채색, 장식 등 세부묘사에서 완성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아미타불·육보살·십대제자·사천왕이 배치된 이 아미타후불도는 육보살이 등장한 예로서 특징적이며, 지금까지 발견된 화산당 재근의 불화 중 수화승으로 참여한 첫 작업으로, 19세기 후반 서울, 경기도 일대의 불화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화계사 아미타후불도 사진자료



■ 화계사 명부전 지장보살도

현재 화계사 명부전의 본존인 지장보살삼존상의 후불화로 봉안되어 있다. 화면 부분에 걸쳐 얼룩과 오염이 있으며, 본존과 권속들의 광배, 중앙 하단의 화기 등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으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가로로 긴 직사각의 화면에는 중앙의 지장보살삼존을 중심으로 4왕과 6보살, 사천왕상이 좌우에 대칭되게 늘어서 있으며, 화면 상단 좌우에는 각각 9구씩의 화불이 그려져 있다. 화면에 표현된 존상의 수는 많지 않지만, 화면에는 상하좌우 거의 여백이 없이 존상들로 꽉 차있다.

본존 지장보살은 원형의 두광(頭光)과 금빛의 신광(身光)을 갖추고 청연대좌(靑蓮臺座) 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하였다. 머리는 체발형(剃髮形)이며, 사각형에 가까운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작게 묘사되었다. 몸에는 붉은 법의를 통견(通肩) 형식으로 걸쳤으며, 법의 가장자리는 화려한 화문으로 단을 대어 장식하였다. 오른손은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 모양으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에는 투명한 여의주를 들고 있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며, 보살상답게 목에는 화려한 목걸이를 걸치고 있다.

지장보살 무릎 아래 좌우 쪽에는 협시인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이 투명한 두광을 지니고 합장한 채 서 있다. 젊은 비구 모습의 도명존자는 승복차림에 지장보살의 지물인 육환장(六環杖)을 대신 들고 있는데, 석장두(錫杖頭)에 그려진 화불(化佛)이 대웅전 후불화 중 지장보살상 석장과 유사하여, 같은 화원이 두 불화를 함께 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명존자와 마주한 무독귀왕은 관과 복장이 왕의 모습으로 합장한 채 서 있다.

시왕은 10구 중 4구만 묘사되었다. 이처럼 시왕이 축소되어 표현되는 것은 19세기 지장시왕도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화면의 크기가 축소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시왕은 문관복에 원유관을 쓰고 홀을 들었으며, 시왕 옆으로는 6구의 보살이 큼직하게 표현되었다. 6보살은 <예수십왕생칠경>에 나오는 육광보살, 즉 지장보살을 포함해 용수보살, 구고관세음보살, 타라니보살, 금강장보살, 상비보살로, 지장보살의 육도능화(六道能化)의 보살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지장보살도에 육광보살을 함께 묘사하는 것은 조선전기 지장보살도에서부터 보이는데, 시왕이 함께 표현된 지장시왕도 형식에서는 주로 지장보살도의 상단에 표현되지만, 시왕이 생략되는 명부전 후불화로 조성되는 지장보살도에서는 이 불화에서처럼 지장보살의 좌우에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섯 보살은 모두 화려한 보관을 쓰고 합장하거나 연꽃, 금강저 등 지물을 들고 본존을 향해 시립하였다.

화면의 가장자리에는 사천왕이 투구 및 관을 쓰고 각각의 지물을 들고 서 있다. 화면 왼쪽 상단의 천왕상은 비파, 그 아래쪽 상은 검을 들고 있으며, 우측의 천왕상은 당(幢)과 보탑(寶塔), 용(龍)과 화염보주(火焰寶珠)를 들고 있다. 이 그림에서의 사천왕상 투구와 갑옷의 견갑과 복갑 등이 대웅전 후불그림과 동일한 것은 같은 화원에 의해 그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화면 상단 좌우 끝 쪽에는 각 9구의 화불들이 구름을 타고 하강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장보살도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성으로, 이 그림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채색은 붉은색과 녹색이 주색을 이루면서 백색과 금색, 청색 등이 함께 사용되었다. 본존의 두광을 이처럼 금박으로 꽉 채워 칠하는 기법과 명도 높은 청색의 사용, 사천왕의 얼굴과 손 등

에 보이는 음영 표현 등은 19세기 후반 서울·경기지역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필선은 가늘면서도 섬세한 편으로, 지장보살과 권속들을 능숙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하단에는 세 군데로 나뉘어 화기(畵記)가 적혀있다. 화기에 의하면 이 불화는 1878년 상궁무진생황씨(尙宮戊辰生黃氏), 상궁을해생홍씨(尙宮乙亥生洪氏), 상궁갑술생황씨 무심화(尙宮甲戌生黃氏 無心花), 상궁신사생남씨 보적화(尙宮辛巳生南氏 寶積花), 상궁갑오생정씨 광도화(尙宮甲午生鄭氏 廣度花), 상궁을해생이씨(尙宮乙亥生李氏) 등의 시주로 화계사 중단탱으로 조성되었으며, 화산당 재근(華山堂 在根)을 위시한 7명의 화원이 그렸다고 한다.

수화승인 화산당 재근은 19세기 후반에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화승으로, 그림 뿐 아니라 화승 뿐 아니라 조각승으로도 활동했다.

화기에 의해 볼 때 재근은 화계사 승려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활동 초창기에 사미승(沙彌僧)의 신분으로 1868년 남양주 홍국사 신중도 조성에 동참하면서 금곡당 영환(金谷堂 永煥)·경선당 응석(慶船堂 應釋)과 같은 수화승들과 화연(畵緣)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약 10여년 이상을 경기지역 뿐 아니라 강원도·충청도·경상도 등지에서 수화승이나 동참화승으로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였다.

이 불화는 수화승 재근이 3년 전인 1875년 개운사 지장보살도의 동참화승으로 참여하였을 때 경험을 살려 모본을 응용하여 제작한 지장보살도이다. 19세기 왕실의 상궁들이 조성 발원한 불화로, 상궁들이 대시주로 참여하여 조성한 왕실불화의 성격을 잘 보여주듯 화려한 금박의 사용과 섬세한 필치가 돋보인다.

조선 말기 서울 경기지역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화계사 명부전 지장보살도 사진자료



■ 화계사 명부전 십대왕도

한 폭의 화면에 구름을 배경삼아 입상의 십대왕만을 그려 놓은 시왕도로, 그 예가 드물다. 어떠한 원칙 아래 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명부세계(冥府世界)의 총사령관 격으로 면류관을 쓴 염라대왕을 위시하여 중앙 쪽에는 홀수 왕을 배치하고 좌우 바깥쪽으로는 짝수 왕을 배열하였다.

십대왕은 명호가 적힌 홀(忽)을 들거나 명패가 있어 각기의 존명을 알 수 있는데, 1·2·3·5·6·7대왕은 홀을 들고 4·8·9·10대왕은 합장한 모습으로 명패를 지니고 있다. 상들은 또한 3·4·5·7·8대왕과 1·2·6·9·10대왕이 서로 마주 보도록 서 있으며, 복장은 1·3왕만이 녹색과 청색일 뿐 나머지는 적색의 문관 복장을 하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하늘과 구름 부분에 일부 퇴색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존상의 적당한 신체 비례에 얼굴 표현이 섬세하고 복장과 관의 장식이 치밀함을 볼 수 있다.

화면 하단의 화기 중 “水月道場空花佛事齋者…金魚比丘華山在根 慧杲奉佩 德淳(順) 尙悟…光緒二年丙子閏二十七日十王幀一幅奉安于華溪寺” 라는 내용을 통해 보아, 이 십대왕도는 1876년 금어 화산당 재근과 혜고당 봉간, 덕순, 상오 등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십대왕도는 대웅전 후불화 조성 시 수화사였던 화산당 재근과 응파당 덕순을 비롯하여 성암당 승의, 혜고당 봉간, 기경, 석운 등 당시를 대표하는 화승들에 의해 조성된 불화로서, 이렇듯 명호를 지닌 십대왕을 한 폭에 그린 예는 어느 사찰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예이다.

이에 본 불화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화계사 명부전 십대왕도 사진자료



■ 화계사 명부전 시왕도 및 사자도

화계사 명부전의 시왕상 뒤에는 시왕도와 사자도가 함께 봉안되어 있다. 시왕도는 열 명의 왕 중 2왕 또는 3왕을 한 폭으로 구성한 4폭 형식으로 구성되었는데, 6왕·8왕·10왕도 1폭이 분실되어 1왕·3왕도 1폭, 5왕·7왕·9왕도 1폭, 2왕·4왕도 1폭 등 3폭만 남아있다. 사자도는 화면을 두 폭으로 나누어 사자와 지옥장군을 그린 것으로, 화면 왼편에 사자 2구와 말, 오른쪽에 장군도가 그려져 있다. 시왕도와 사자도 모두 1878년에 지장보살도와 함께 조성되었다.

① 시왕도

각 폭 모두 성벽과 구름, 성문으로 화면을 분할하였으며, 시왕을 중심으로 그를 보좌하는 권속을 뻗뻗하게 표현하였다. 하단의 지옥 형벌장면 역시 많은 수의 인물을 표현하여 화면 전체를 빈 공간 없이 가득 메우고 있다. 또한 성벽을 주위에 둘러 마치 시왕이 있는 곳이 성 안쪽이고, 지옥형벌을 받는 곳이 성 바깥이라는 느낌을 준다.

상단에는 병풍을 배경으로 시왕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큼직하게 묘사되었으며, 시왕 주위의 난간과 계단 아래쪽에 권속들이 시립하고 있다. 옥졸은 대부분 창과 같은 무기류를 들고 있고, 판관은 복두를 쓰고 산(傘)이나 선(扇) 등, 동자는 버루, 두루마리, 책, 천녀는 선(扇)을 들고 있다.

이처럼 성벽과 구름 또는 산수, 성문 등으로 화면을 분할하는 기법은 조선 후기 시왕도에서 성행하던 기법이다. 하단은 거의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뻗뻗하게 지옥형벌장면이 표현되었는데, 각 대왕도 아래의 지옥장면은 다음과 같다.

- 1왕·3왕도 : 제1왕도는 망자가 죽은 후 7일되는 날 첫 번째로 벌을 받는 진광대왕(秦廣大王)의 심판장면과 화탕지옥(鑊湯地獄)을 그린 것이다. 상단에는 권속들로 둘러싸여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앉아 수염을 쓰다듬고 있는 진광대왕이 그려져 있으며, 하단에는 망자가 목에 칼을 차고 판관에게 문초를 당하는 장면과 뿔뿔 끊는 가마솥에서 고통 받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제3왕도는 망자가 3,7일에 가는 송제대왕(宋帝大王)과 좌참지옥(剉斬地獄)을 그렸다. 몸을 왼쪽으로 튼 채 합장하고 위를 쳐다보고 있는 송제대왕과 함께 형벌을 받는 장면, 즉 지옥에 끌려오는 장면을 위시하여 칼을 차고 벌을 기다리는 듯한 장면, 형틀에 매달린 채 검으로 죽임을 당하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다.

- 5·7·9왕도 : 제5왕도는 염라대왕(閻羅大王)의 심판장면과 좌대지옥(剉碓地獄)을 그렸다. 평소 살생을 일삼는 자의 과보를 업경대(業鏡臺)에 비추어 보고 무시무시한 돌절구로 찢어 죽이는 장면과 이를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보는 지장보살상이 표현되어 있는데, 지장보살상이 향로를 받쳐 든 동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제7왕도는 망자가 49일째 심판을 받는 태산대왕(泰山大王)의 심판장면과 한빙지옥(寒氷地獄)을 그린 것이다. 긴 칼을 들고 있는 옥졸들이 칼을 쓴 망자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과 입에서 찬 기운을 내뿜고 있는 옥졸과 창을 들고 있는 사자가 그려져 있다. 그 옆에는 옥졸이 망자의 머리채와 다리를 잡고 얼음 쪽으로 던지려하고 있는데, 사방이 얼어붙은 곳에서는 하의만 입고 있는 망자들이 추위에 떠는 장면이 보인다. 책상 없이 녹사(錄士)가 대왕 앞에 엎드려 죄목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제9왕도는 사후 1년째에 망자를 심판하는 도시대왕(都市大王)의 왕청과 거해지옥(鉅解地獄), 업칭지옥(業秤地獄)의 장면을 묘사하였다. 도시대왕은 보관 대신 투구를 쓰고 있다. 상단에

는 대왕과 호위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지옥이 펼쳐져 있다. 판관들은 업칭의 양 끝을 잡고 망자의 죄의 무게를 달거나 두루마리를 들고 추를 쳐다보고 있으며, 그 앞에서 옥졸이 칼을 들고 서있다. 이와 함께 거해지옥에서는 옥졸이 나무판 사이에 망자를 넣고 톱질을 하거나 망자가 있는 나무판 주위에서 칼과 창을 든 옥졸들과 칼을 쓴 망자들이 지옥형별장면을 쳐다보고 있다.

- 2·4왕도 : 제2왕도는 14일째 되는 날 심판을 받는 초강대왕청(初江大王廳)의 심판장면과 발설지옥(拔舌地獄)을 묘사하였다. 지장보살이 석장을 든 채 입을 가리고 동자는 그 뒤에서 번을 든 채 아래쪽을 쳐다보고 있으며, 아래 쪽에서는 옥졸 2명이 망자들을 데리고 합장하며 지장보살을 쳐다보고 있다. 옥졸이 몽둥이를 든 채 망자들을 다그치거나 사자가 두루마리를 펴서 판관을 보여주는 장면 등도 보인다.

이와 함께 나무에 망자의 머리카락과 손, 발을 묶고 입에서 혀를 길게 뽑아 옥졸이 그 위에서 소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고 있다. 이것은 바로 입으로 나쁜 업보를 지은 중생들이 혀를 뽑히고 혀 위에서 소가 쟁기질하는 고통을 받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

제4왕도는 28일째 되는 날 심판을 하는 오관대왕(五官大王)과 철상지옥(鐵床地獄)을 묘사하였다. 상단에는 오관대왕과 그 권속들을 나타내었으며, 하단에는 죄인들이 목에 칼을 차고 귀졸들에게 끌려오는 장면과 온 몸에 쇠말뚝을 박아 죽이는 끔찍한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계사 명부전 시왕도는 각 왕도별로 화면을 2등분하여 하단에 지옥의 성격에 따른 극적인 변상(變相)을 묘사하였다. 2대왕도의 화면 하단 화기에는 “光緒四年戊寅二月初五日奉安于華溪道場…金魚 聖[性]庵勝宜……”라고 적혀있어, 1878년 2월에 그려 봉안하였으며 화원은 승의(勝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폭마다 많은 상공들이 시주자로 참여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지장보살도에도 시주자로 등장하고 있다.

승의는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경기지역 화승으로, 당호는 역암당(櫟庵堂)·성암당(性庵堂)·취암당(翠庵堂)이다. 약 25년 동안 활동하였지만 전하는 작품은 많지 않은데, 화계사 지장보살도(1878년)의 화기에 화산당 재근(華山堂 在根)과 함께 화계사 화승으로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보아 화계사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활동기 초기인 1868년에 금곡당 영환(金谷堂 永煥)·한봉당 창엽(漢峰堂 昌曄)과 안성 청룡사 현왕도 조성 시 화연관계를 맺었으며, 같은 해 그린 홍국사 대웅보전 지장시왕도 조성 시에는 수화승 금곡당 영환을 비롯하여 응륜(應崙)·동조(頓照)·자간(自間) 등과도 함께 참여하였다.

이 시왕도에서의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각 왕도마다 기타 시왕도들에서는 볼 수 없는 12지 신상이 등장하고 있으며, 각 지옥의 명칭을 적어 각 지옥의 명칭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② 사자도

사자도는 명부전의 좌측에 봉안되어 있다. 한 화면을 둘로 나누어 향우측에는 긴 막대를 들고 있는 장군, 향좌측에는 말과 함께 서있는 사자 2구를 그렸다. 장군은 머리에 양각이 높게 솟은 모자를 쓰고 오른손으로 막대를 잡고 왼손으로는 칼 같은 것을 잡은 채 측면을 향해 서있으며, 두 사자는 긴 번(幡)을 들거나 말의 고삐를 움켜쥔 채 말의 앞·뒤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시왕도와 함께 장군·사자도를 함께 그리는 것은 조선말기 서울 경기지역에서 유행하던 것으로, 이 역시 그러한 전통을 잘 따르고 있다. 사자도는 보광사 사자도(1872년)와 같은 초본을

사용했으며, 1898년에 조성된 봉국사 사자도(1898년) 또한 초본을 사용해 그렸다.

19세기 말 서울 경기지역에서 성행했던 대표적인 시왕도와 사자도로서, 서울지역에서 조성된 19세기 말의 시왕도 및 사자도-보광사 시왕도 및 사자도(1872년), 홍천사 시왕도(1885년), 봉국사 시왕도 및 사자도(1898년), 봉원사 시왕도(19세기말) 등-과 동일한 도상을 보여준다.

많은 상공들이 참여하여 시주발원한 것으로, 조선 말기 상공들이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적색을 많이 사용했으며, 안면표현에 바림질 채색과 갈색 선으로 주름을 표현하여 요철감을 풍부히 나타내는 등 전체적으로 전각의 세부 표현과 각종 기물, 호위신장들의 갑옷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많은 변화를 준 점은 왕실발원 불화로서의 품격을 잘 보여준다.

조성시기가 19세기 후반으로 다소 뒤진 느낌은 있지만, 왕실발원 불화로서 인물의 표현과 각 지옥별 장면 묘사가 뛰어나고 색조가 안정되어 있는 점과 조선말기 서울 경기지역의 시왕도와 사자도 형식을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 유물목록 - 1. 시왕도 ①1·3왕도 ②2·4왕도 ③5·7·9왕도
- 2. 사자도

화계사 명부전 시왕도 및 사자도 사진자료



화계사 시왕도(1 · 3왕도)



화계사 시왕도(5 · 7 · 9왕도)



화계사 시왕도(2 · 4왕도)



사자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8호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89호(2015.12.10.)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활성화지역)』 지정 공고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답십리동 일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개요

- 가. 지역의 명칭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지역의 개요

지역명	유 형	위 치	면적(㎡)	비고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답십리동 일대	508,390㎡	

다. 사업기간(마중물사업) : 2017년 ~ 2020년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

- 가. 계획명칭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1) 비 전 : 3(매매, 부품, 튜닝) + 1(재제조)의 자동차산업 복합단지 조성
 - 2) 목 표
 - 지역산업 지원시설 조성
 -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조성
 - 재제조혁신센터 조성
 - 지역산업 현대화
 - 지역산업 핵심거점 현대화
 - 인적자원 및 시스템 현대화
 - 수출활성화 지원
 - 지역산업 인증브랜드 운영
 - 지역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이미지 개선
 - 가로환경 개선
 - 지역문화기능 강화

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1)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및 재원조달 계획

사 업			주관부서	사업비(억원)			
				계	시비	국비	민간
지역산업 지원시설 조성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조성		도시재생본부	157.9	44.0	-	113.9
	자동차부품 재제조 혁신센터 조성		도시재생본부				
지역산업 현대화	지역산업 거점시설 현대화	매매센터 정비사업	도시재생본부	15.0	15.0	-	-
		부품상가 정비사업	도시재생본부				
		민간개발부지 정비사업	도시재생본부				
	인적자원 및 시스템 현대화	중고차 유통구조 개선	택시물류과				
		시스템 개선	택시물류과				
수출활성화 지원	지역산업 인증브랜드 운영	지역브랜드 제작 및 운영	도시재생본부	22.0	22.0	-	-
		산업공동브랜드 제작 및 운영	도시재생본부				
	지역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인프라 구축	도시재생본부				
		홈페이지 등 제작	도시재생본부				
지역이미지 개선	가로환경 정비	중고부품거리 환경정비	동대문구 도로과	93.6	93.6	-	-
		부품상가 이면가로 환경정비	동대문구 도로과				
		학교가는 길 조성	동대문구 도로과				
		음식문화거리 조성	동대문구 도로과				
		자동차상징거리 조성	동대문구 도로과 성동구 토목과				
	지역문화기능 강화	정크아트거리 조성	성동구 토목과				
		지역문화 축제 개최	문화예술과				
기타 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본부	16.8	16.8	-	-
	도시관리계획 수립						
	자동차산업 재생방안 수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본부	5.0	5.0	-	-
사업비 예산 총계				310.3	196.4		113.9

※ 사업비(민간재원 포함)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파급효과

연번	도시재생사업		파급효과
1	지역산업 지원시설 조성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조성	-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및 지역중심의 자생적 재생 촉진 - 지역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조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도시제조업 활성화 지역산업체 필요기능 제공을 통한 산업활성화 유도
2	지역산업 현대화	지역산업 핵심거점 현대화	- 노후 산업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산업활성화, 일자리 증대 문화시설 도입 등을 통한 방문객 증가 및 지역 활성화
		인적자원 및 시스템현대화	지역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 및 신뢰 향상 튜닝 등 신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3	수출활성화 지원	지역산업 인증브랜드 운영	- 지역산업에 대한 홍보 및 소비자 신뢰 향상, 수출활성화 -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접근성 강화 허위매물 정보 근절 등 지역산업에 대한 신뢰 향상
4	지역이미지 개선	가로환경 개선	- 거리경관 향상 및 이미지 개선, 지역민원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및 보행자 안정성 확보
		지역문화기능 강화	산업중심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방문객 증가 및 지역 활성화

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마. 예산집행계획

(단위: 억원)

계	단계별 자원투입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10.3	38.8	136.2 (민간 113.9)	70.7	33.3	21.3

※ 예산집행계획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 없음

3. 관련서류 열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02-2133-464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과(☎02-2286-556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과(☎02-2127-4294) 및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02-8442-213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9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 11. 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3호(2009. 8. 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7호(2009. 9.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56호(2010. 1.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25호(2010. 4.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9호(2010. 7. 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3호(2011. 4. 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 9.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7호(2011. 9. 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2호(2011. 10.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3호(2011. 12.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호(2012. 1. 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4호(2012. 5.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호(2013. 1. 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호(2013. 2.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5호(2013. 4.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3호(2013. 5. 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6호(2013. 5. 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7호(2013. 6.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7호(2013. 9. 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7호(2013. 10.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4호(2013. 11.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1호(2013. 11. 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47호(2013. 12.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2호(2014. 8.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3호(2014. 9. 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1호(2014. 10. 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5호(2015. 2.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4호(2015. 8. 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69,460.7	—	1,469,460.7	100.0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503,415.2	—	503,415.2	34.26
	공공청사	4,743.2	—	4,743.2	0.32
	문화/복지	9,869.5	—	9,869.5	0.67
	학교시설	105,619.2	—	105,619.2	7.19
	공원녹지	142,746.5	증 3.6	142,750.1	9.71
	공공공지	701.2	—	701.2	0.05
	주차장	676.3	—	676.3	0.05
	도 로	239,026.3	감 3.6	239,022.7	16.27
	철 도	33.0	—	33.0	—

구 분		면 적(㎡)			비율 (%)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용지	소 계	773,327.4	—	773,327.4	52.62
	공동주택	768,990.4	—	768,990.4	52.32
	주상복합	4,337.0	—	4,337.0	0.30
상업/업무		135,739.3	—	135,739.3	9.24
기타 종교시설 등		56,978.8	—	56,978.8	3.88

※ 신길3구역 토지이용면적 오기정정

나. 인구·주택수용계획

구 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존치지역	개별주택	2,008	—	2,008	5,421	—	5,421	존치지역 등
	공동주택	2,621	—	2,621	7,076	—	7,076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 계	16,099	증 6	16,105	43,469	증 15	43,484	
	40㎡이하	1,156	감 8	1,148	3,121	감 22	3,099	
	40㎡~60㎡	5,900	증 62	5,962	15,931	증 167	16,098	
	60㎡~85㎡	6,670	감 13	6,657	18,009	감 35	17,974	
	85㎡초과	2,373	감 35	2,338	6,408	감 95	6,313	
계		20,728	증 6	20,734	55,966	증 15	55,981	

※ 신길3구역 건축심의 결과 반영, 계획세대수인구수 오기정정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녹지 시설	소 계	62	140,940.8	증 3.6	140,944.4	
	근린공원	5	65,685.2	—	65,685.2	기 설치 2개소, 3개소 신설
	어린이공원	3	7,078.0	—	7,078.0	기 설치 1개소, 2개소 신설
	소공원	18	31,359.4	—	31,359.4	18개소 신설
	녹 지	36	36,818.2	증 3.6	36,821.8	36개소 신설

※ 신길3구역 토지이용면적 오기정정

마. 교통계획 : 도서참조

바. 경관계획 : 도서참조

사.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합 계(16개구역)		892,542.7	—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7-26 일대	62,696.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05-69 일대	61,971.0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명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45-40 일대	38,502.9	주택재개발사업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4914-9 일대	52,112.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83-1 일대	76,602.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510 일대	36,266.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039 일대	93,728.6	주택재개발사업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63 일대	32,287.3	주택재개발사업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40-16 일대	73,698.6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590 일대	32,234.0	주택재건축사업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29-94 일대	50,759.3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 일대	52,716.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40-1 일대	15,120.0	주택재건축사업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47-50 일대	27,844.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76-1 일대	105,733.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4-4 일대	80,272.0	주택재개발사업	

아.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1) 신길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2) 신길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3) 신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38,502.9	-	38,502.9	100.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4,029.6	-	4,029.6	10.5
	2종일반주거지역	34,473.3	-	34,473.3	89.5

※ 신길3구역 경계 오류 정정(면적변경 없음)

- 4) 신길4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5) 신길5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7호(2013.10.10)로 변경
- 6) 신길6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7호(2011.9.22)로 변경
- 7) 신길7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3호(2014.9.4)로 변경
- 8) 신길8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5호(2015.2.26.)로 변경
- 9) 신길9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5호(2015.2.26.)로 변경
 10) 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4호(2015.8.27.)로 변경
 11) 신길1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2호(2013.2.7)로 변경
 12) 신길1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13호(2014.9.4)로 변경
 13)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변경없음)
 14) 신길14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2호(2011.10.20)로 변경
 15) 신길15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16) 신길16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자.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구역명	주용도	상한용적률 (%)	건폐율(%)	높이계획		비고
				공동주택	최고높이 (m)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22 / 35	121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18 / 25	91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1 / 32	11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18 / 31	109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 / 29	94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0 / 26	94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 / 27	97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 / 27	91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 / 29	103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50%이하	- / 29	103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2%이하	60%이하	19 / 25	91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0 / 29	103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	250%이하	50%이하	- / 22	82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 / 28	94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22 / 34	118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20 / 30	106	

※ 신길3, 5, 6, 7, 8, 9, 12, 14구역의 상한용적률은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경우임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가이드라인' 에 따름)

차.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구 분	구역 면적 (㎡)	기반시설면적(㎡)					비고
		계획 기반시설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2,696.0	14,996.0	996.0	6,394.0	-	7,606.0 (12.1%)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1,971.0	15,101.0	4,056.0	3,698.0	-	7,347.0 (11.9%)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8,502.9	7,723.0	1,070.40	1,313.04	-	5,339.56 (13.9%)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112.0	14,599.0	1,797.0	6,741.0	-	6,061.0 (11.6%)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6,602.0	17,136.4	207.9	1,576.0	-	15,352.5 (20.0%)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6,266.0	10,576.0	1,441.0	3,945.0	-	5,190.0 (14.3%)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3,728.6	21,524.0	0.0	3,830.0	4,199.7	13,494.3 (14.4%)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2,287.3	6,655.3	44.0	909.6	-	5,701.7 (17.7%)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3,698.6	20,308.2	4,348.9	7,110.1	-	8,849.2 (12.0%)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32,234.0	6,129.4	14.0	3,172.0	-	2,943.4 (9.1%)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0,759.3	10,996.7	1,493.0	2,564.0	-	6,939.7 (13.7%)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716.0	14,727.3	655.19	4,372.41	-	9,699.7 (18.4%)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15,120.0	2,569.0	247.0	547.0	-	1,775.0 (11.7%)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7,844.0	5,002.2	52.0	1,071.0	-	3,879.2 (13.9%)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05,733.0	23,417.0	3,867.0	6,792.0	-	12,758.0 (12.1%)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80,272.0	19,006.0	4,731.0	4,585.0	-	9,690.0 (12.1%)	
계	892,542.7	210,466.5	25,020.4	58,620.1	4,199.7	122,626.3 (13.7%)	

카.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임대주택수	2,722	증 1	2,723	

※ 신길3구역 건축심의 결과 반영

타.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변경없음)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사업기간			대 상 지 역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사업구역	2007 ~ 2015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2단계 사업구역	2009 ~ 2016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3단계 사업구역	2011	2013.6 이후	2017.12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 단계별 추진계획은 각 단계의 총량의 범위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

※ 단계별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적 운용방안은 영등포구에서 수립한 운용기준을 따름(4,000세대가 넘지 않는 범위 내)

하.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거.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변경없음)

너.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구역별 정비계획 개요(변경없음)

구 분	구역면적 (㎡)	대지면적 (㎡)	기준(계획)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폐율 (%)	계획 용적률(%)	평균층수/ 최고층수	비고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2,696.0	47,700.0	190	230	16.28	229.39	22 / 35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1,971.0	45,565.0	190	230	20.35	229.83	18 / 25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8,502.9	30,779.9	210	300	25이하	251.52이하	21 / 3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112.0	37,513.0	190	230	21.24	229.91	18 / 31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6,602.0	59,073.6	210	300	25이하	265이하	22 / 29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6,266.0	25,690.0	210	300	30.0이하	265.1이하	20 / 26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3,728.6	70,569.1	210	300	25이하	253.40이하	22 / 27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2,287.3	24,914.2	210	300	25이하	255.44이하	22 / 27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3,698.6	51,715.0	210	300	25이하	253.36이하	22 / 29	

구 분	구역면적 (㎡)	대지면적 (㎡)	기준(계획)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폐율 (%)	계획 용적률(%)	평균층수/ 최고층수	비고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32,234.0	26,104.6	210	300	29.46	298.56	- / 29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0,759.3	39,762.6	190	232	25이하	232이하	19 / 25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716.0	35,921.6	210	300	25이하	263.12이하	20 / 29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15,120.0	12,551.0	210	250	20.84	248.61	- / 22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7,844.0	22,841.8	210	300	25이하	256.3이하	22 / 28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05,733.0	79,514.0	190	230	15.85	229.63	22 / 34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80,272.0	60,107.0	190	230	15.97	229.82	20 / 30	

※ 신길3,5,6,7,8,9,12,14재정비촉진구역의 기준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경우임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가이드 라인'에 따름)

※ 신길10구역의 상한용적률은 도축법 제3조, 제19조에 따름

2)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합계	일반분양(전용면적)				임대주택(전용면적)				비고
		소계	85㎡ 초과	60~85 ㎡	60㎡ 이하	소계	40㎡ 이하	40~50 ㎡	50~60 ㎡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85	806	292	394	120	179	74	74	31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41	771	280	377	114	170	71	71	28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85	639	63	344	232	146	72	59	15	기정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91	644	28	351	265	147	72	59	16	변경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76	637	231	312	94	139	58	58	23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546	1,260	107	789	364	286	132	119	35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35	520	163	221	136	115	47	47	21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722	1,533	207	833	493	189	85	76	28	

구 분	합계	일반분양(전용면적)				임대주택(전용면적)				비고
		소계	85㎡ 초과	60~85 ㎡	60㎡ 이하	소계	40㎡ 이하	40~50 ㎡	50~60 ㎡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41	522	14	363	145	119	57	50	12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464	1,199	24	425	750	265	124	113	28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874	796	—	176	620	78	—	78	—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49	777	17	535	225	172	82	72	18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008	824	5	395	424	184	84	76	24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266	217	104	87	26	49	—	—	49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12	501	—	240	261	111	45	48	18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649	1,352	493	660	199	297	124	124	49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246	1,023	373	499	151	223	93	93	37	
합 계	16,099	13,377	2,373	6,670	4,334	2,722	1,148	1,158	416	기정
합 계	16,105	13,382	2,338	6,657	4,387	2,723	1,148	1,158	417	변경
비 율	100.0	83.1	14.5	41.3	27.2	16.9	7.1	7.2	2.6	

※ 신길3구역 건축심의 결과 및 건축계획 변경내용 반영, 합계 오기정정(일반분양 : 60~85㎡ 감20, 60㎡이하 증20)

3) 정비계획

가)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다)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8,502.9	－	38,502.9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7,723.0	－	7,723.0	20.1	－
	도 로	251.3	감 3.6	247.7	0.6	무상귀속
	공 원	4,029.6	－	4,029.6	10.5	
	녹 지	3,442.1	증 3.6	3,445.7	9.0	
택 지 (획 지)	소 계	30,779.9	－	30,779.9	79.9	－
	3-1	30,779.9	－	30,779.9	79.9	공동주택

※ 신길3구역 토지이용면적 오기정정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①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08	15	집산 도로	572 (140)	신길동 136 (신길동 146-53)	신길동 223-33 (신길동 202-121)	일반 도로	-	건고768 (64.1.24)	재정비 촉진구역 내 편입

※ 연장 및 위치내()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세부적인 구역편입현황은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②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메nak골	근린공원	신길동 895 (신길동 147-43일대)	57,703.6 (4,029.6)	-	57,703.6 (4,029.6)	건고 138 (77.7.9)	촉진구역외 : 53,674

※ 위치 및 면적내()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③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2-109일대	726.3	-	726.3	서고 445 (07.11.29)	-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6-18일대	709.8	-	709.8	서고 445 (07.11.29)	-
기정	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0-6일대	1,274.3	-	1,274.3	서고 445 (07.11.29)	-
변경	1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2-9일대	731.7	증 3.6	735.3	서고 445 (07.11.29)	-

※신길3구역 토지이용면적 오기정정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공동 이용시설	관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45-40번지 일대	228.62	감 128.62	100.00이상	법적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함
	주민공동시설		3,064.39	감 584.39	2,480.00이상	
	문 고		76.05	증 83.95	160.00이상	
	보육시설		185.94	증 144.06	330.00이상	
	경로당		164.44	증 60.56	225.00이상	

※ 신길3구역 건축심의 결과 및 건축계획 변경내용 반영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계획(변경없음)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길3 재정비촉진구역	38,502.9	-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45-40번지 일대	297	-	-	297	-	

②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1)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신길3 재정비 촉진구역	38,502.9	3-1	30,779.9	영등포구 신길동 145-40번지 일대	77,418.85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51.52% 이하	21이하/ 32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합계</th><th colspan="4">분양(전용면적, ㎡)</th><th colspan="4">임대(전용면적, ㎡)</th></tr><tr><th>소계</th><th>85㎡ 초과</th><th>60~ 85㎡</th><th>60㎡ 이하</th><th>소계</th><th>40㎡ 이하</th><th>40~ 50㎡</th><th>50~ 60㎡</th></tr><tr><td>세대수</td><td>785</td><td>639</td><td>63</td><td>344</td><td>232</td><td>146</td><td>72</td><td>59</td><td>15</td></tr><tr><td>비율</td><td>100.00</td><td>81.40</td><td>8.03</td><td>43.82</td><td>29.55</td><td>18.60</td><td>9.17</td><td>7.52</td><td>1.91</td></tr></table>								구분	합계	분양(전용면적, ㎡)				임대(전용면적, ㎡)				소계	85㎡ 초과	60~ 85㎡	60㎡ 이하	소계	40㎡ 이하	40~ 50㎡	50~ 60㎡	세대수	785	639	63	344	232	146	72	59	15	비율	100.00	81.40	8.03	43.82	29.55	18.60	9.17	7.52	1.91
			구분	합계	분양(전용면적, ㎡)				임대(전용면적, ㎡)																																							
					소계	85㎡ 초과	60~ 85㎡	60㎡ 이하	소계	40㎡ 이하	40~ 50㎡	50~ 60㎡																																				
			세대수	785	639	63	344	232	146	72	59	15																																				
비율	100.00	81.40	8.03	43.82	29.55	18.60	9.17	7.52	1.91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6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 이상 ● 임대주택 건립비율																																																
<table><tr><th>평형</th><th>전용면적 40㎡이하</th><th>전용면적 40 ~ 50㎡이하</th><th>전용면적 50 ~ 60㎡이하</th></tr><tr><td>배분비</td><td>40 ~ 50%</td><td>40 ~ 50%</td><td>10 ~ 20%</td></tr></table>								평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 ~ 50㎡이하	전용면적 50 ~ 60㎡이하	배분비	40 ~ 50%	40 ~ 50%	10 ~ 20%																																	
평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 ~ 50㎡이하	전용면적 50 ~ 60㎡이하																																													
배분비	40 ~ 50%	40 ~ 50%	10 ~ 20%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1)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신길3 재정비 촉진구역	38,502.9	3-1	30,779.9	영등포구 신길동 145-40번지 일대	77,418.85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51.52% 이하	21이하/32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구분	합계	분양(전용면적, ㎡)			임대(전용면적, ㎡)				
					소계	85㎡ 초과	60~85㎡	60㎡ 이하	소계	40㎡ 이하	40~50㎡	50~60㎡
			세대수	791 (증)6	644 (증)5	28 (갑)35	351 (증)7	265 (증)33	147 (증)1	72	59	16 (증)1
			비율	100.00	81.42	3.54	44.37	33.50	18.58	9.10	7.46	2.02
			● 건설비용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6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 이상 ● 임대주택 건립비용									
			평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 ~ 50%		40 ~ 50%		10 ~ 20%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길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주1)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신길3구역 건축심의 결과 및 건축계획 변경내용 반영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조합	-	-	-

바)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구	면적(㎡)	획지			비고
		구분	위치	면적(㎡)	
3	30,779.9	3-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45-40번지 일대	30,779.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사)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	-	-	10,036.17이상	147 증) 1	40㎡이하, 40~50㎡, 50㎡~60㎡	변경

※ 임대주택 건립비율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임대주택 평형배분 계획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 ~ 50%	40 ~ 50%	10 ~ 20%

라)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마)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37호(2013.10.10)로 변경

바)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77호(2011.9.22)로 변경

사)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87호(2013.6.20)로 변경

아)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5호(2015.2.26.)로 변경

자)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5호(2015.2.26.)로 변경

차)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4호(2015.8.27.)로 변경

카)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2호(2013.2.7)로 변경

타)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51호(2014.10.16)로 변경

파)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변경없음)

하)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82호(2014.8.7)로 변경

거)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너)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69,460.7	—	1,469,460.7	100.0
주거 지역	소 계	1,421,340.7	—	1,421,340.7	96.7
	제1종일반주거지역	45,759.9	—	45,759.9	3.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26,805.0	—	226,805.0	15.4
	제2종일반주거지역	942,788.8	—	942,788.8	64.2
	제3종일반주거지역	170,169.0	—	170,169.0	11.6
	준주거지역	35,818.0	—	35,818.0	2.4
근린상업지역		48,120.0	—	48,120.0	3.3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54-7번지 일대	207,845	—	207,845	서고 제2011-258호 (2011.9.8)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도 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53	35	간선 도로	1,550 (795)	문래동 광장 (신길동 363-6)	신길동 광장 (신길동 426)	일반 도로		건고393 (78.12.7)	도림로
기정	대로	2	54	30	간선 도로	3,050 (710)	신길동 대로3-28	구로공단 (신길동 347-65)	일반 도로		건고393 (78.12.7)	가마산길
기정	대로	3	23	25	보조 간선	4,250	신길동 (대1-6)	구로동 (중1-220)	일반 도로		건고542 (71.9.13)	도신로
기정	대로	3	28	25~ 30	주간 선로	2,780 (1,203)	영등포동 (신길동 220-35)	신도림동 (신길동 3599-3)	일반 도로		건고177 (62.12.8)	신길로
기정	대로	3	134	25~ 30	간선 도로	1,000 (591)	신길동382 (신길동 740)	신길동 235-2	일반 도로		서고378 (78.7.31)	신길9재촉구역 내 완화차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확보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14	신길동 337-390	신길동 335-17	일반 도로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357	신길동 638	신길동 209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3	15	집산 도로	398	신길동 222-4	신길동 318-7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4	15~ 18	집산 도로	110	신길동 335-23	신길동 325-49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32	15	집산 도로	293	신길동 325-78	신길동 296-12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중로	2	34	13.5 ~ 15	보조 간선	1,650	신길동 115-1	신길동 2363	일반 도로		건고2493 (66.6.21)	
기정	중로	2	36	15	보조 간선	1,200 (310)	영등포동 634-1 (신길동 289-6)	신길동 321-13	일반 도로		건고177 (62.12.8)	
기정	중로	2	37	15	집산 도로	152	신길동 318-2	신길동 314-38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중로	2	108	15	집산 도로	572	신길동 136	신길동 223-33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중로	2	151	15~ 17	집산 도로	571	신길동 2099	신길동 3517	일반 도로		서고156 (91.5.31)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46	신길동 205-84	신길동 159-35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544	신길동 1795-31	신길동 209-98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3	12~ 16	집산 도로	280	신길동 2857	신길동 3187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263	신길동 518	신길동 167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78	신길동 281-20	신길동 287-1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291	신길동 621-5	신길동 236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112	신길동 625-3	신길동 626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63	12~ 20	집산 도로	268	신길동 335-17	신길동 342-88	일반 도로		서고683 (87.9.24)	
기정	중로	3	71	12	집산 도로	471	신길동 426-3	신길동 336-2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기정	중로	3	152	12	집산 도로	299	신길동 3183-28	신길동 242-14	일반 도로		서고156 (91.5.3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58	신길동 235-7	신길동 4902-5	일반 도로		-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131	신길동 255-1	신길동 232-81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1	3	10	집산 도로	221	신길동 287-42	신길동 298-28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1	4	10	집산 도로	269	신길동 329-57	신길동 263-5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20	신길동 329-59	신길동 259-6	일반 도로		서고56 (06.2.16)	
기정	소로	1	6	10	특수 도로	22	신길동 232-65	신길동 254-5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258 (11.9.8)	
기정	소로	1	44	10	집산 도로	95	신길동 260-3	신길동 257-29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1	45	10	집산 도로	134	신길동 233-1	신길동 257-41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1	47	10	집산 도로	107	신길동 254-7	신길동 258-22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1	48	10	집산 도로	62	신길동 254-1	신길동 233-4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1	65	10	집산 도로	28	신길동 252-9	신길동 252-11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356	신길동 209-112	신길동 196-24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321	신길동 253-318	신길동 337-255	일반 도로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205	신길동 260-5	신길동 319-6	일반 도로		서고56 (06.2.16)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2	4	8	집산 도로	159	신길동 4934-3	신길동 205-17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6	8~10	집산 도로	128	신길동 2372	신길동 2340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7	8	집산 도로	243	신길동 337-209	신길동 253-330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8	8	집산 도로	155	신길동 424-3	신길동 340-1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9	8	집산 도로	54	신길동 162-19	신길동 155-6	일반 도로		서고7 (72.1.7)	신길1 생활권
기정	소로	2	12	8	집산 도로	180	신길동 237	신길동 242	일반 도로		서고51 (82.2.4)	신길지구 중심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30	8	집산 도로	20	신길동 288-2	신길동 287-4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33	8	집산 도로	151	신길동 298-32	신길동 296-42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2	57	8	집산 도로	272	신길동 115-7	신길동 159-38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2	69	8~ 9.5	집산 도로	114	신길동 253-69	신길동 329-57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기정	소로	2	106	8	집산 도로	86	신길동 117-1	신길동 117-19	일반 도로			신길1 생활권, 재정비촉진지 구내 기폐지 [서고445(07. 11.29)]
기정	소로	2	109	8	집산 도로	341	신길동 4934-4	신길동 205-220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2	153	8	집산 도로	162	신길동 341-1	신길동 400-16	일반 도로		서고331 (90.9.28)	
기정	소로	3	1	4.5~ 6	집산 도로	208	신길동 355-535	신길동 294-8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3	2	4	집산 도로	146	신길동 4934-8	신길동 201-65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기정	소로	3	3	6	집산 도로	97	신길동 4903-21	신길동 232-17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3	-	6	집산 도로	26	신길동 2862	신길동 3574-15	일반 도로		서고228 (02.6.18)	
기정	소로	3	5	4	특수 도로	165	신길동 541	신길동 1637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445 (07.11.29)	보행자전용도 로 반영
기정	소로	3	6	6	집산 도로	36	신길동 347-295	신길동 324-18	일반 도로		서고258 (11.9.8)	
기정	소로	3	7	4	집산 도로	170	신길동 342-161	신길동 342-142	일반 도로		서고258 (11.9.8)	
기정	소로	3	11	6	집산 도로	35	신길동 4902-16	신길동 4902-14	일반 도로		서고51 (8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3	38	6	집산 도로	151	신길동 323-2	신길동 325-65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3	46	6	집산 도로	30	신길동 262-54	신길동 236-37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신길지구 중심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64	6	집산 도로	25	신길동 254-4	신길동 252-5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3	70	6	집산 도로	32	신길동 252-9	신길동 253-126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3	102	6	집산 도로	47	신길동 197-6	신길동 196-6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3	104	6	집산 도로	40	신길동 160-28	신길동 159-62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 연장 및 위치내()는 촉진지구내 수치임. 세부적인 구역편입현황은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나) 철 도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7호선)	성동구 화양6일대	온수동 산2-1일대	-	43,760	-	서고77 (93.3.18)	7호선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신풍역)	신길동 3599 일대	6,623.5	-	6,623.5	서고77 (93.3.18)	신풍역
기정	2	철도	고속철도 (보라매역)	신길동 508 일대	8,317.6	-	8,317.6	서고77 (93.3.18)	보라매역

다) 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신길동 232-51 일원	2,977	-	2,977	영고51 (03.10.2)	지하 주차장
기정	2	주차장	신길동 236-10	676.3	-	676.3	서고258 (11.9.8)	

라) 공 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메나골	근린공원	신길동 895 일대	57,703.6	-	57,703.6	건고138 (77.7.9)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신길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426-3	19,503.9	-	19,503.9	건고258 (82.7.12)	
기정	3	-	근린공원	신길동 223-17 일대	10,259.0	-	10,259.0	서고445 (07.11.29)	
기정	4	-	근린공원	신길동 243-58 일대	13,776.7	-	13,776.7	서고445 (07.11.29)	
기정	5	-	근린공원	신길동 314-33 일대	9,089.0	-	9,089.0	서고445 (07.11.29)	
기정	1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신길동 337-88	1,633.0	-	1,633.0	-	
기정	2	-	어린이 공원	신길동 541 일대	1,981.0		1,981.0	서고445 (07.11.29)	
기정	3	-	어린이 공원	신길동 281-6 일대	3,464.0	-	3,464.0	서고445 (07.11.29)	
기정	1	-	소공원	신길동 202-73 일대	5,901.0	-	5,901.0	서고445 (07.11.29)	
기정	2	-	소공원	신길동 205-63 일대	1,015.0	-	1,015.0	서고445 (07.11.29)	
기정	3	-	소공원	신길동 201-84 일대	513.0	-	513.0	서고445 (07.11.29)	
기정	4	-	소공원	신길동 4903-16 일대	1,188.0	-	1,188.0	서고445 (07.11.29)	
기정	5	-	소공원	신길동 2296 일대	1,479.9	-	1,479.9	서고445 (07.11.29)	
기정	6	-	소공원	신길동 2306 일대	1,636.2	-	1,636.2	서고445 (07.11.29)	
기정	7	-	소공원	신길동 2135 일대	1,024.1	-	1,024.1	서고445 (07.11.29)	
기정	8	-	소공원	신길동 3584 일대	4,046.3	-	4,046.3	서고445 (07.11.29)	
기정	9	-	소공원	신길동 3126 일대	2,348.5	-	2,348.5	서고445 (07.11.29)	
기정	10	-	소공원	신길동 3403 일대	2,133.8	-	2,133.8	서고445 (07.11.29)	
기정	12	-	소공원	신길동 336-317 일대	2,650.9	-	2,650.9	서고445 (07.11.29)	
기정	13	-	소공원	신길동 335-10 일대	1,661.4	-	1,661.4	서고445 (07.11.29)	
기정	14	-	소공원	신길동 335-34 일대	2,001.3	-	2,001.3	서고445 (07.11.29)	
기정	15	-	소공원	신길동 285-9 일대	912.0	-	912.0	서고445 (07.11.29)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6	-	소공원	신길동 279-1 일대	1,279.0	-	1,279.0	서고445 (07.11.29)	
기정	17	-	소공원	신길동 296-65 일대	331.0	-	331.0	서고258 (11.9.8)	
기정	18	-	소공원	신길동 159-35 일대	433.0	-	433.0	서고258 (11.9.8)	
기정	19	-	소공원	신길동 3599 일대	805.0	-	805.0	서고258 (11.9.8)	

마) 녹 지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9-1 일대	1,004.0	-	1,004.0	서고445 (07.11.29)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5-163 일대	1,000.0	-	1,000.0	서고445 (07.11.29)	
기정	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5-143 일대	803.0	-	803.0	서고445 (07.11.29)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99-31 일대	1,701.0	-	1,701.0	서고445 (07.11.29)	
기정	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2-125 일대	614.0	-	614.0	서고445 (07.11.29)	
기정	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6-20 일대	568.0	-	568.0	서고445 (07.11.29)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2-109 일대	726.3	-	726.3	서고445 (07.11.29)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6-18 일대	709.8	-	709.8	서고445 (07.11.29)	
기정	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0-6 일대	1,274.3	-	1,274.3	서고445 (07.11.29)	
변경	1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2-9 일대	731.7	증) 3.6	735.3	서고445 (07.11.29)	오기 정정
기정	1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4921-1 일대	2,722.0	-	2,722.0	서고445 (07.11.29)	
기정	1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964 일대	2,597.3	-	2,597.3	서고445 (07.11.29)	
기정	1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66 일대	830.0	-	830.0	서고445 (07.11.29)	
기정	1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77 일대	1,404.0	-	1,404.0	서고445 (07.11.29)	
기정	1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560 일대	847.2	-	847.2	서고445 (07.11.29)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335 일대	749.0	—	749.0	서고445 (07.11.29)	
기정	1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121 일대	1,226.6	—	1,226.6	서고445 (07.11.29)	
기정	1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241 일대	1,621.0	—	1,621.0	서고445 (07.11.29)	
기정	1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888 일대	1,210.7	—	1,210.7	서고445 (07.11.29)	
기정	2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835 일대	314.5	—	314.5	서고445 (07.11.29)	
기정	2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83-156 일대	811.2	—	811.2	서고445 (07.11.29)	
기정	2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516 일대	1,912.4	—	1,912.4	서고445 (07.11.29)	
기정	2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40-1 일대	1,602.0	—	1,602.0	서고445 (07.11.29)	
기정	2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6 일대	282.7	—	282.7	서고445 (07.11.29)	
기정	2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04 일대	1,460.2	—	1,460.2	서고445 (07.11.29)	
기정	2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57 일대	787.6	—	787.6	서고445 (07.11.29)	
기정	2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400 일대	582.6	—	582.6	서고445 (07.11.29)	
기정	3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6 일대	170.7	—	170.7	서고445 (07.11.29)	
기정	3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5-43 일대	250.0	—	250.0	서고445 (07.11.29)	
기정	3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9 일대	1,250.4	—	1,250.4	서고445 (07.11.29)	
기정	3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5-94 일대	409.0	—	409.0	서고445 (07.11.29)	
기정	3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1-3 일대	1,250.0	—	1,250.0	서고445 (07.11.29)	
기정	3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8-3 일대	664.0	—	664.0	서고445 (07.11.29)	
기정	3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68-3 일대	1,277.0	—	1,277.0	서고445 (07.11.29)	
기정	3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76-44 일대	920.0	—	920.0	서고445 (07.11.29)	
기정	3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24-20 일대	534.0	—	534.0	서고445 (07.11.29)	

※ 신길3구역 토지이용면적 오기정정

바)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공공공지	신길동 253-312 일대	153.0	-	153.0	-	신길5 주택건설사업
기정	14	공공공지	신길동 201-65	37.0	-	37.0	서고445 (07.11.29)	
기정	15	공공공지	신길동 202-28	382.0	-	382.0	서고445 (07.11.29)	
기정	16	공공공지	신길동 567 일대	269.0	-	269.0	서고445 (07.11.29)	
기정	17	공공공지	신길동 425-28	62.9	-	62.9	서고445 (07.11.29)	

사) 시 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시장	정기시장	신길동 255-9	2,580.0	-	2,580.0	서고370 (83.7.20)	신영 사려가
기정	2	시장	정기시장	신길동 259-4외 6	781.0	-	781.0	서고5 (83.1.7)	신동

아) 전기공급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신길동 253-251	2,980.0	-	2,980.0	서고127 (97.11.10)	대림 (변전시설)

자)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	신길동 223-7 일대	1,444.0	-	1,444.0	서고445 (07.11.29)	신길4 동주민센터
기정	2	공공청사	-	신길동 302-5 일대	1,561.0	-	1,561.0	서고445 (07.11.29)	신길3 동주민센터
기정	3	공공청사	-	신길동 232-79 일대	163.0	-	163.0	서고445 (07.11.29)	파출소
기정	4	공공청사	-	신길동 340-4 일대	118.0	-	118.0	서고445 (07.11.29)	파출소
기정	5	공공청사	-	신길동 349-3 일대	157.2	-	157.2	서고445 (07.11.29)	파출소

차) 학 교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신길4동 210	21,940.0	-	21,940.0	서고373 (78.7.27)	우신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신길7동 550 일대	22,273.0	-	22,273.0	서고위76 (88.12.21)	대방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신길5동 341-1	32,344.0	-	32,344.0	서고683 (87.9.24)	대영
	4	학교	중학교	신길5동 342-49	대영초에 포함	-	대영초에 포함	서고4546 (85.7.10)	대영
	5	학교	고등학교	신길5동 342	대영초에 포함	-	대영초에 포함	서고456 (85.7.10)	대영
기정	6	학교	초등학교	신길3동 285-1	19,063.0	-	19,063.0	서고위76 (88.12.21)	도림
기정	7	학교	중학교	신길동 2064 일대	9,999.2	-	9,999.2	서고445 (07.11.29)	

카) 문화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문화시설	-	신길동 158-20 일대	1,208.0	-	1,208.0	서고445 (07.11.29)	
기정	2	문화시설	-	신길동 549 일대	1,027.6	-	1,027.6	서고445 (07.11.29)	

타) 도 서 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도서관	신길동 252-11 일대	2,300.3	-	2,300.3	서고445 (07.11.29)	구립 도서관

파)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232-51 일원	873.0	-	873.0	영고51 (03.10.2)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339-34 일대	2,890.0	-	2,890.0	서고445 (07.11.29)	
기정	3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224-24 일대	1,181.0	-	1,181.0	서고445 (07.11.29)	
기정	4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243-26일대	389.6	-	389.6	서고313 (14.9.4)	

- 러. 광고물관리계획 (변경없음)
- 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버. 방재계획 (변경없음)
- 서. 정보화계획 (변경없음)
- 어. 에너지순환계획 (변경없음)
- 저. 특성화계획 (변경없음)
- 처. 기타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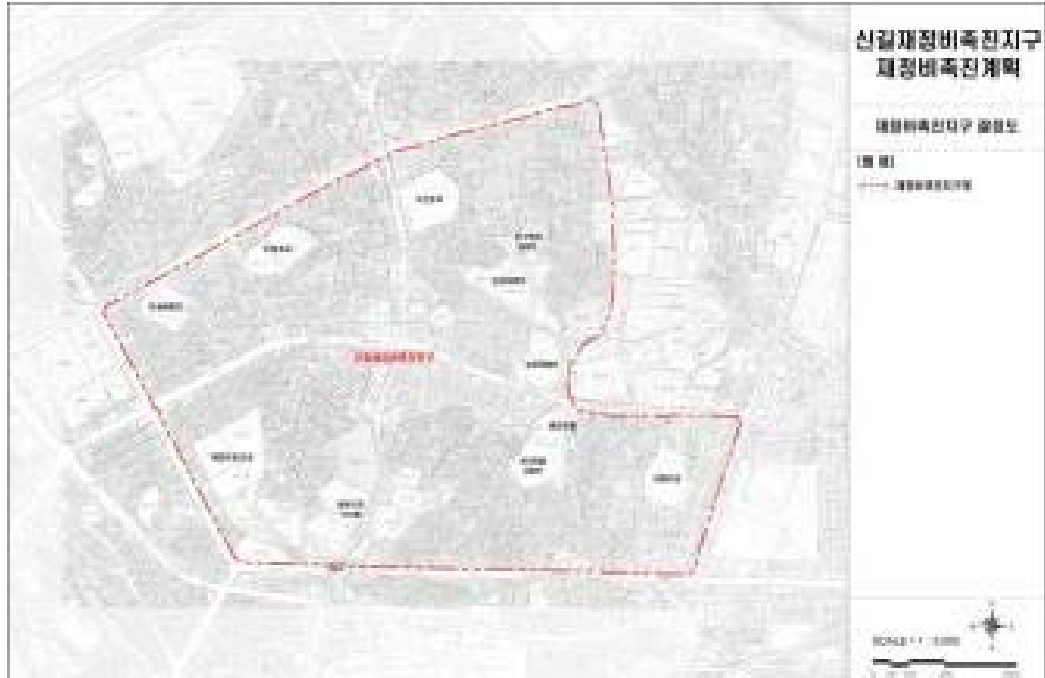
3. 신길2,4,15,16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관련사항과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척되는 단독주택지의 존치계획은 향후 신길재정비촉진지구의 전체적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시 일괄 반영하여 고시 예정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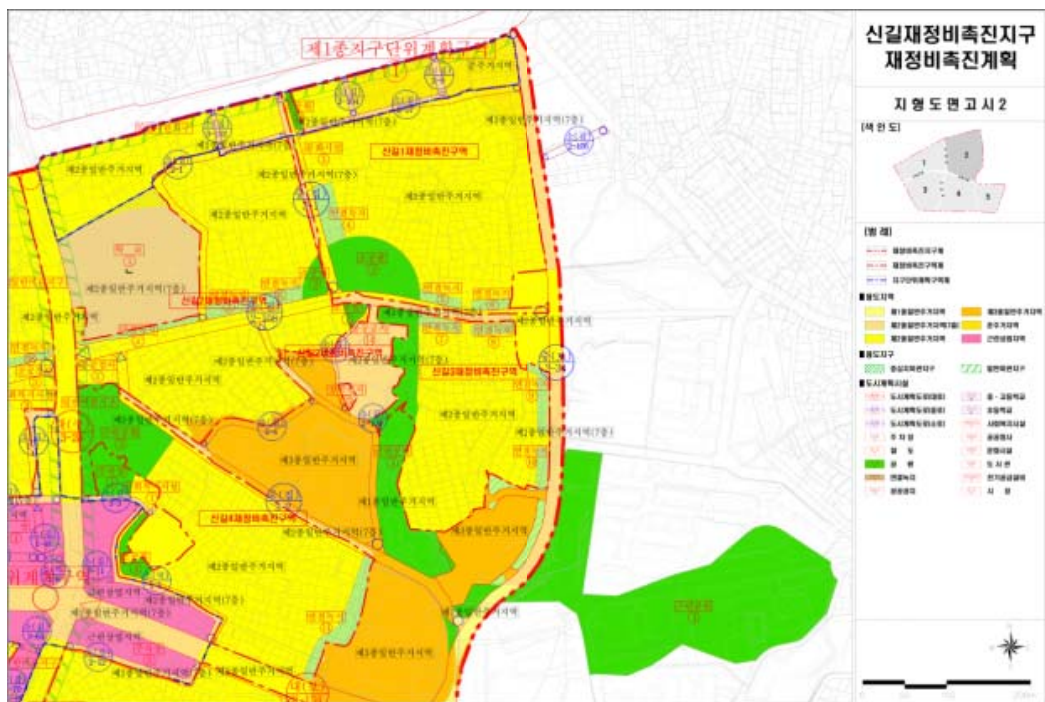
5.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3)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02)2670-3526~3529)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촉진지구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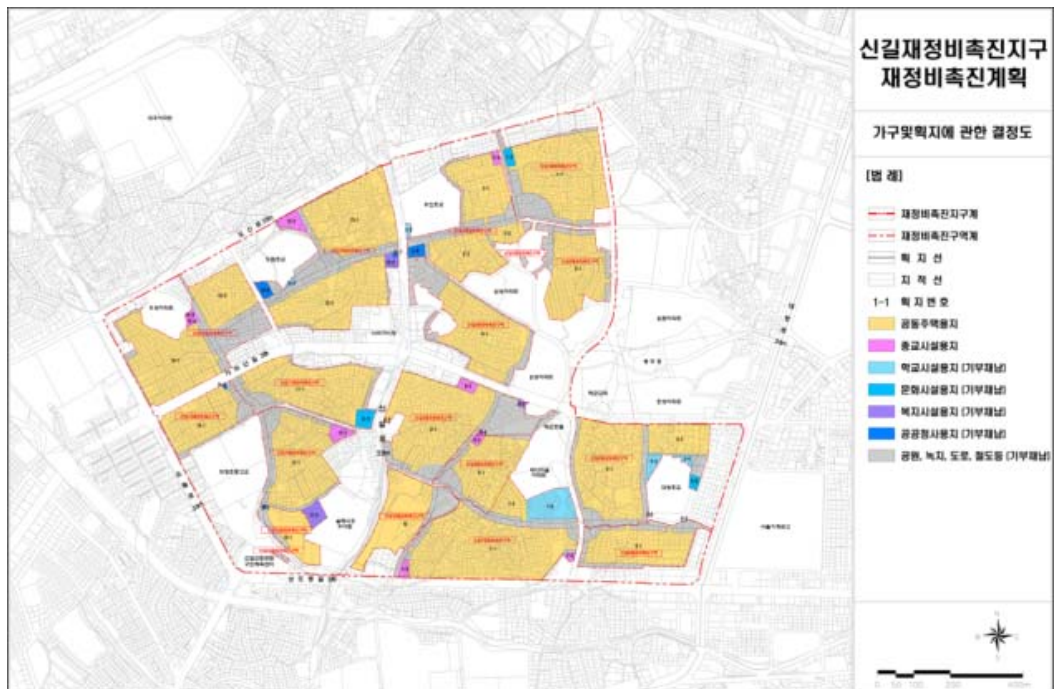
[지형도면고시도]



[토지이용계획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30호

**「서울특별시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LED 모듈·커넥터·전원공급용 컨버터
표준」 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LED 모듈·커넥터·전원공급용 컨버터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고시명 : 「서울특별시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LED 모듈·커넥터·전원공급용 컨버터 표준」 개정 고시
2. 고시사유 : 「서울특별시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LED 모듈·커넥터·전원공급용 컨버터 표준」 일부 조항을 개정, LED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적용시기 : 2016. 8. 16.부터
 - 광효율 부분은 2018년 01월 01일 부터 적용
4.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구매·설치공사에 적용
 - 자치구·공사·공단·출연·출자기관은 적용 권고
5. 문의처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02-2133-3579 / 담당자 : 이재복)
 - 표준과 관련된 의견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에서 접수(☎ 02-2632-7932 박선규 이사)
6. 주요내용
 - 광효율 상향 개정 : 110 lm/W → 120, 130 lm/W
 - 상관색온도 범위 추가 : 4000K ~ 2700K
 - “급”이라는 표현 대신 “이하”로 용어 변경
 - LED 컨버터 고정장치의 연결부위 치수 개정
 - 컨버터의 종류 : 15,25,50,75,100,150,200W급 → 50,100,150,200W

붙임 : 서울특별시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LED 모듈·커넥터·전원공급용 컨버터 표준 전문 1부.

**서울특별시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LED모듈·커넥터·전원공급용 컨버터 표준**

2016. 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표준 자문위원

성명	소속	직위
장우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조미령	한국광기술원	팀장
김덕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인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이용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천석희	한국조명연구원	팀장
박선규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이사
방병국	한국LED보급협회	부회장
김민수	한국전등기구LED협동조합	전무
노재화	한국고효율사업자총연합회	단장
김진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제정자 : 서울특별시

제정 : 2015년 07월 01일

개정 : 2016년 08월 일(2차개정)

원안작성협력자 : 서울특별시 LED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표준 자문위원단

이 표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사항은 서울특별시청 환경정책과

(02-2133-357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목 차

LED 모듈	1
1 적용범위	1
2 용어와 정의	1
3 종류 및 구분	2
4 시험에 관한 일반사항	2
5 시험 요구사항	3
LED 전원 공급용 컨버터	7
1 적용범위	7
2 종류 및 구분	7
3 시험에 관한 일반사항	7
4 시험 요구사항	8
부속서 A	13
부속서 B	14
부속서 C	16
해설서	18

LED 모듈

1. 적용범위

700 mA 단일 정격전류로 동작하는, 일체형 제어장치가 없는 LED 모듈에 대해 규정한다.

비고) 이 모듈은 가로등, 보안등 및 터널등에 사용된다.

2. 용어와 정의

이 표준에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KS C IEC 60050-845, KS C IEC 60598-1, KS C IEC 62031, KS C 7658을 적용한다.

2.1 LED 모듈(LED module)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한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컨버터는 제외)

2.2 LED 전원공급용 컨버터(converter for LED modules)

전원과 그 이상의 LED모듈 사이에 삽입된 장치로, LED모듈에 정격전압이나 정격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

2.3 정격전압(rated voltage)

LED 모듈 및 LED컨버터에 표시된 정격입력전압

2.4 정격전류(rated current)

LED 모듈 및 LED 컨버터에 표시된 정격입력전류

2.5 정격전력(rated wattage)

LED 모듈 및 LED 컨버터에 표시된 정격입력전력

2.6 정격주파수(rated frequency)

LED 컨버터에 표시된 주파수

2.7 초기특성(initial values)

100시간 에이징 후의 광학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

2.8 광속유지율(lumen maintenance)

서울특별시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표준

- 1 -



LED 모듈의 수명 이내의 주어진 시간에서 측정된 광속을 초기광속으로 나눈 값으로 백분율로 나타냄

2.9 정격광속(rated lumen)

LED 모듈에 표시된 광속

2.10 정격 최대 온도(rated maximum temperature) : t_c

정상동작 조건에서 LED 모듈의 외부 표면에서 생길 수 있는 최고 허용 온도

3. 종류 및 구분

LED 모듈의 종류는 정격전력 및 정격전류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 LED 모듈의 종류

구분	종류
정격전력 (W)	15 이하
	25 이하
정격전류 (mA)	700

4. 시험에 관한 일반사항

4.1 일반 요구사항 및 검사

LED 모듈은 통상 사용 시 안전하게 동작하고 사람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육안 또는 이 표준에 규정된 모든 시험을 통해서 판단한다.

4.2 시험의 일반사항

이 표준의 시험은 형식시험이다. 이 표준에서 허용하는 요구사항과 허용차는 제조자가 해당 목적을 위해 제출한 형식시험 시료의 실험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이 형식시험 시료는 제조자의 생산품을 대표로 하는 특성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생산 중심점 값에 근접한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시험은 주위온도 (10 ~ 30) °C 에서 시험하되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단, 광학적특성 시험은 정격입력전압 및 주파수를 공급한 후 $(25 \pm 1)^\circ\text{C}$ 의 주위온도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5. 시험 요구사항

5.1 제품표시사항

다음의 정보를 LED 모듈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모델명
- b) 정격전력(W)
- c) 제조 연월
- d) 정격광속(lm) - 단, 최소광속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e) 상관색온도(K)
- f) 사용온도(t_a)
- g) t_c 값 및 측정점 (t_c 측정점은 LED모듈 외곽의 최고 온도 지점에 그 위치를 표시해야 함)

5.1.1 표시의 내구성과 식별의 용이성

a) 표시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 여부는 물에 적신 천 조각으로 15초 동안 가볍게 문질러 보고 말린 다음 석유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으로 15초 동안 더 문질러 보고 판정한다. 시험 후 표시된 글자는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표시 라벨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

b) 사용된 석유 알코올은 부피상으로 최대 0.1 %의 향료를 포함하고, 큐리-부탄을 26 %, 65°C 정도의 초기 끓는 점, 69°C 정도의 건조 온도 및 약 0.68 g/cm^3 의 밀도를 가진 헥산 용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5.2 구조

LED 모듈은 KS C IEC 6052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IP66 이상이어야 한다.

LED 모듈의 외형크기는 부속서 A에 따른다.

5.3 기계적 강도

5.3.1 LED 모듈의 충격시험은 아래 표 2 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표 2 - LED모듈 충격시험

시험 적용부위	충격에너지(Nm)		압축(mm)	
	깨지기쉬운부분	다른부분	깨지기쉬운부분	다른부분
LED모듈 외곽	0.5	0.7	20	24

시험 후 외곽은 손상이 없어야 한다.

5.3.2 LED 모듈을 $(-5 \pm 2)^\circ\text{C}$ 챔버에서 3시간 방치 후 챔버에서 꺼낸 즉시 가장 약한 부분에 지름 50 mm, 무게 0.51 kg인 강구를, 높이 1.3 m에서 낙하한다.

시험 후 외곽은 손상이 없어야 한다.

5.4 내습 후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1347-1의 11.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5.5 온도시험

케이스온도는 LED모듈에 정격전류를 공급하고 열적으로 안정화 된 후 LED모듈 제조자가 지정한 t_c 측정점(열전대 부착 지점)의 온도가 표시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때 열전대의 허용오차는 $\pm 1.1^\circ\text{C}$ 또는 $\pm 0.4\%$ 중 큰 것을 적용한다.

열적으로 안정화 된 상태란, 측정 부위의 온도가 시간당 $\pm 1^\circ\text{C}$ 이하의 비율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5.6 전원접속 커넥터

전원접속 커넥터의 외형 및 접속은 부속서 B에 따른다.

5.7 진동

LED 모듈의 경우 아래의 진동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간(Duration)	: 30 분
진폭(Amplitude)	: 0.35 mm
주파수 범위(Frequency range)	: 10 Hz, 55 Hz, 10 Hz
일소비율(Sweep rate)	: 약 1분당 1옥타브

시험 후 LED모듈은 안전상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은 고정되어야 하고, 점등되어야 한다.

추가로 5.4절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내습 제외)

5.8 점등특성

LED 모듈은 -30 ℃와 70 ℃에서 미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 후 정격전류에서 점등 되어야 한다.

5.9 입력전력

입력전력을 측정하였을 때, 정격전력의 $\pm 10\%$ 이내이어야 한다.

5.10 광학적 특성

5.10.1 초기특성

LED모듈에 정격전류를 공급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광속, 연색지수, 상관색온도, 광효율을 측정한다.

적합성은 표 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 - LED 모듈의 광학적 특성 기준

항 목	성능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 이상			
연색지수	75 이상			
구분(K)	상관색온도(K)	광효율(lm/W)	최소광속(lm)	
			15 W 이하	25 W 이하
5 700	5 665 $\pm$ 355	130 이상	1 650 이상	2 750 이상
5 000	5 028 $\pm$ 283			
4 500	4 503 $\pm$ 243			
4 000	3 985 $\pm$ 275			
3 500	3 465 $\pm$ 245			
3 000	3 045 $\pm$ 175	120 이상	1 520 이상	2 530 이상
2 700	2 725 $\pm$ 145			

5.10.2 광속유지율

초기특성시간을 포함하여 LED 모듈에 정격전류를 공급하여 1 000시간(초기특성 100시간 포함)에 이징 후 광속을 측정한다. 광속유지율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 - LED 모듈의 시험 항목별 시료 수량

시험 항목			시료 수량				
			시료 1	시료 2	시료 3	시료 4	시료 5
1	표시		O				
2	구조		O				
3	기계적 강도		O				
4	내습 후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O				
5	온도시험		O				
6	전원 접속 커넥터		O				
7	진동			O			
8	점등특성				O		
9	입력 전력					O	
10	광학적 특성	초기특성				O	O
		광속유지율				O	O

비고 1) 초기 특성 및 광속유지율 광속은 DC Power Supply로 측정한다.

비고 2) 광속유지율시험은 제조자가 제출하는 구동장치로 측정한다.

LED 전원공급용 컨버터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AC220 V, 60 Hz,에서 LED 모듈(LED module) 및 LED 소자(LED Package)에 정격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LED 전원공급용 컨버터(이하 “LED 컨버터”)에 대해 규정한다.

2. 종류 및 구분

LED 컨버터의 종류는 형식, 출력방식, 정격출력전류 및 정격전력에 따라 표 6와 같이 구분한다.

표 6 - LED 컨버터의 종류

구 분	종 류
형식	기구 내장형
	기구 독립형
출력방식	정전류방식
정격출력전류(mA)	700
정격전력 (W)	50
	100
	150
	200

3. 시험에 관한 일반사항

3.1 일반 요구사항 및 검사

LED 컨버터는 통상 사용 시 안전하게 동작하고 사람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 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육안 또는 이 기준에 규정된 모든 시험을 통해서 판단한다.

3.2 시험의 일반사항

이 기준의 시험은 형식시험이다.

비고, 이 기준에서 허용하는 요구사항과 허용차는 제조자가 해당 목적을 위해 제출한 형식 시험 시료의 실험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이 형식시험 시료는 제조자의 생산품을 대표하는 특성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생산 중심점 값에 근접한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위온도 (10 ~ 30) °C 에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 전압은 평균값으로 측정하였을 때 $\pm 3\%$ 이내의 허용차를 갖는 전압이어야 하며, 전체 고조파성분은 3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전체 고조파성분은 기본파를 100 %로 했을 때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한다.

4. 시험 요구사항

4.1 표시사항

KS C IEC 61347-2-13의 7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구조

KS C IEC 61347-2-13의 17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하며 아래의 추가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LED 컨버터는 절연트랜스포머를 사용하여 1차측과 2차측이 분리된 구조이어야 한다.

LED 컨버터 출력 커패터는 부속서 B의 부도 1, 부도 2를 만족하여야 하며, 연장용 연결 전선을 갖는 컨버터의 경우 부속서 B의 그림 1과 같이 부도 3, 부도 4를 만족하여야 한다.

LED 컨버터 고정장치의 치수는 부속서 C를 만족하여야 한다.

LED 컨버터에 사용된 AC전원 연결용 코드는 기구 내장형의 경우 60245 IEC 89 또는 60227 IEC 5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기구 독립형의 경우 60245 IEC 57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0.75 ~ 1.5)mm²의 단면적을 가진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LED 컨버터 출력 측 전선은 연장용 연결 전선을 포함하여, UL2464에 적합한 (18 ~ 24)AWG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4.3 내습 후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1347-2-13의 I.8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4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1347-2-13의 I.5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5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KS C IEC 61347-2-13의 I.11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6 온도상승

KS C IEC 61347-2-13의 I.6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7 IP등급

KS C IEC 60529에 따라 독립형 LED 컨버터는 IP65 이상이어야 하며, 내장형 LED 컨버터는 IP20 이상이어야 한다.

4.8 진동

LED 컨버터의 경우 아래의 진동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간(Duration)	: 30 분
진폭(Amplitude)	: 0.35 mm
주파수 범위(Frequency range)	: 10 Hz, 55 Hz, 10 Hz
일소비율(Sweep rate)	: 약 1분당 1옥타브

시험 후 LED컨버터는 안전상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은 고정되어야 한다.

추가로 4.3절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내습 제외)

4.9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1347-2-13의 20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10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정격 주파수의 정격입력 전압을 공급하여 초기 특성 측정 시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를 측

정하였을 때, 표시값의 $\pm 10\%$ 이내이어야 한다.

4.11 전류 고조파 함유율

KS C IEC 61000-3-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12 역률

역률은 0.95 이상이어야 한다.(단, 50 W 미만은 0.9 이상일 것).

4.13 입력 전압 변동

정격 입력 전압의 92 % 및 106 %의 시험 전압에서 정격 출력의 LED 모듈을 연결한 상태에서 출력 전류를 측정하였을 때, 출력 전류는 (700 mA $\pm 5\%$) 이내이어야 한다.

4.14 저온 개폐

LED 컨버터에 정격 입력 전압을 공급하고 -30 ℃에 방치한 후 정격 출력의 LED 모듈을 연결한 상태에서 30초 On, 30초 Off의 주기로 총 800회 개폐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동안에 LED 모듈은 정상 점등되어야 하고, 시험 후에 LED 모듈은 15분 동안 정상 점등되어야 한다.

4.15 고온 개폐

LED 컨버터에 정격 입력 전압을 공급하고 70 ℃에 방치한 후 정격 출력의 LED 모듈을 연결한 상태에서 30초 On, 30초 Off의 주기로 총 800회 개폐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동안에 LED 모듈은 정상 점등되어야 하고, 시험 후에 LED 모듈은 15분 동안 정상 점등되어야 한다.

4.16 저온 출력 전류

LED 컨버터에 정격 입력 전압을 공급하고 정격 출력의 LED 모듈을 연결한 상태에서 -30 ℃에 1시간 방치한 후 항온조 내에서 LED 컨버터의 출력 전류를 측정한다.

측정된 출력 전류는 (700 mA $\pm 5\%$) 이내이어야 한다.

단, 기구 내장형 LED 컨버터는 연장용 연결 전선이 있을 경우 연장용 연결 전선을 연결하여 위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기구 독립형 LED 컨버터는 반드시 15 m 길이의 연장용 연결 전선을 연결하여 위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4.17 고온 출력 전류

LED 컨버터에 정격 입력 전압을 공급하고 정격 출력의 LED 모듈을 연결한 상태에서 70℃에 1시간 방치한 후 항온조 내에서 LED 컨버터의 출력 전류를 측정한다.

측정된 출력 전류는 (700 mA $\pm$ 5 %) 이내이어야 한다.

단, 기구 내장형 LED 컨버터는 연장용 연결 전선이 있을 경우 연장용 연결 전선을 연결하여 위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기구 독립형 LED 컨버터는 반드시 15 m 길이의 연장용 연결 전선을 연결하여 위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4.18 입출력 효율

LED 컨버터의 입출력 효율은 85 % 이상이어야 한다.

표 7 - LED 컨버터의 시험 항목별 시료 수량

시험 항목		시료 수량				
		시료 1	시료 2	시료 3	시료 4	시료 5
1	표시	O				
2	구조	O				
3	내습 후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O				
4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O				
5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O				
6	온도상승	O				
7	IP등급		O			
8	진동			O		
19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별도시편)	O				
10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O	
11	전류 고조파 함유율				O	
12	역률				O	
13	입력 전압 변동				O	
14	저온 개폐					O
15	고온 개폐					O
16	저온 출력 전류					O
17	고온 출력 전류					O
18	입출력 효율				O	

비고1) 추가로 LED 컨버터의 정격 출력에 맞는 LED 모듈 2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고2) 연장용 연결 전선이 있을 경우 저온 출력 전류 및 고온 출력 전류 시험을 위해 연장용 연결 전선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구 독립형 LED 컨버터는 15 m 길이의 연장용 연결 전선을 반드시 제출할 것)

부속서 A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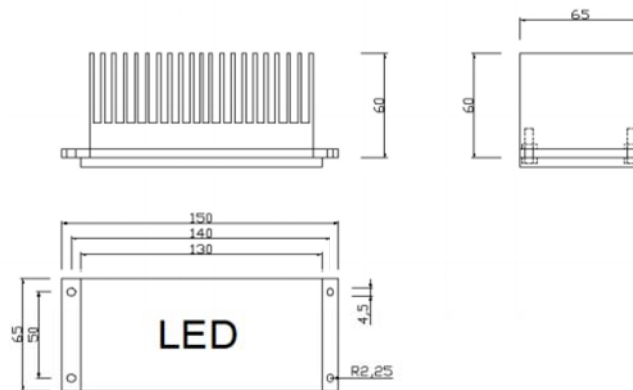
LED 모듈 외형 치수

이 부속서는 LED 모듈 외형에 대하여 규정한다.

LED 모듈 광학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 중의 등기구 규격에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방열장치의 형식 및 형상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LED 모듈 높이는 표시된 치수 이하이어야 하며, 높이를 제외한 치수의 허용오차는 $\pm 3\%$ 이내 이어야 한다.

LED 모듈 입력 측 전선은 UL2464에 적합한 (18 ~ 24) AWG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부도 1 - LED 모듈 외형치수

부속서 B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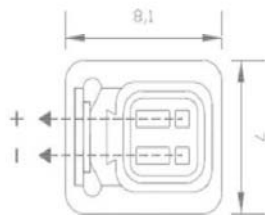
커넥터의 형상 및 접속

이 부속서는 LED 모듈과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접속을 위한 커넥터의 접속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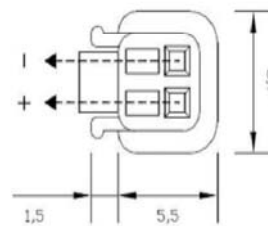
LED 모듈의 입력선 및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적색, (-)는 흑(청)색으로 하여야 하며, 커넥터의 형상은 부도1, 2에 따른다.

LED 모듈 입력 측은 탭 형태, 전원공급용 컨버터 출력 측은 리셉터클 형태이어야 하고, 커넥터를 반대로 삽입 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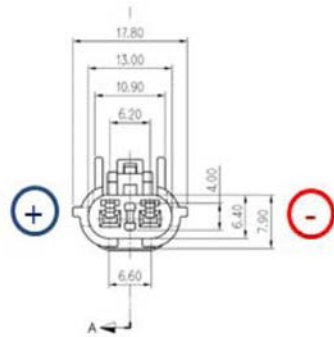
각 치수에 대한 공차는 ± 0.02 mm 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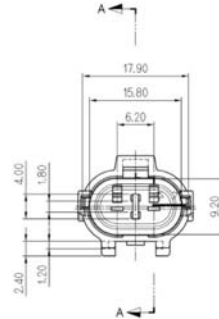
부도 1 - LED 모듈 입력 측(수)



부도 2 - 컨버터 출력 측(암)



부도 3 - 연장용 컨버터 출력 측
(암, Receptacle)



부도 4 - 연장용 연결 측 (수, Plu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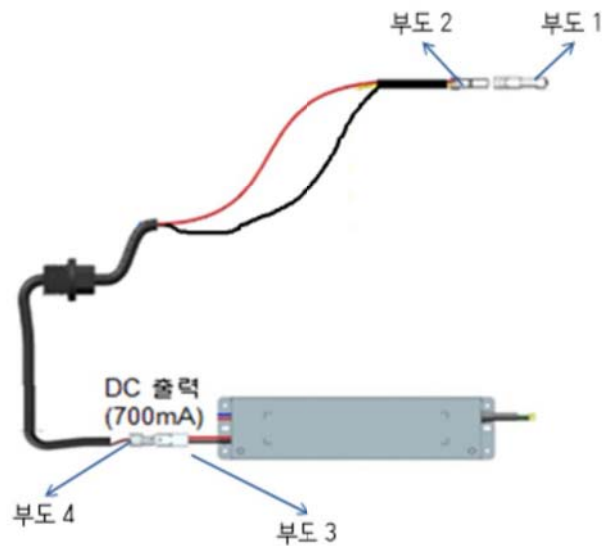


그림 1 - 연장용 연결 전선을 갖는 컨버터 커넥터 연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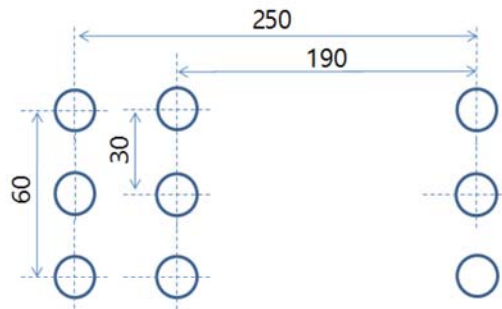
부속서 C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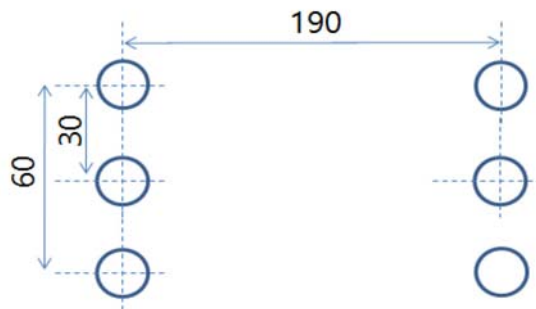
LED 컨버터의 고정장치

LED 컨버터를 등기구에 고정하기 위한 장치의 치수에 대해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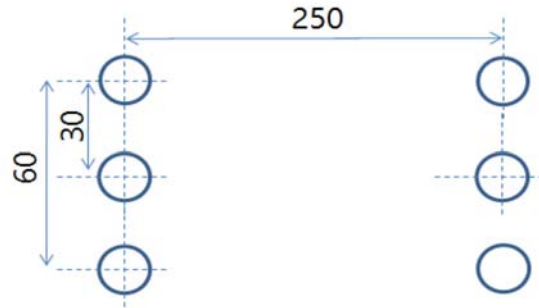
LED 컨버터 고정장치의 연결부위 치수는 아래 부도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는 $\pm 3\%$ 이내 이어야 한다.



부도 1 - 고정장치의 연결부위 치수



부도 2 - 고정장치의 연결부위 치수



부도 3 - 고정장치의 연결부위 치수

해설서

본 해설은 본문 및 부속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사항을 이해를 돕고자 주요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이 표준의 일부가 아니며, 참고자료 또는 보충자료로만 사용된다.

가. 배경 및 목적

- 1) 서울특별시는 2010년부터 “서울광원LED교체 기본계획”에 의거 『2010년 LED조명 시범 보급기준』을 마련하여 LED조명을 선도적으로 교체하였다.
- 2) 서울시 LED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터널등기구의 표준은 LED조명의 선도적 교체 계획에 따른 후속으로 LED 조명기기에 실장되는 부품(LED 모듈(module) 및 LED 컨버터(convertor))을 표준화함으로써, 고장 시 호환, 유지보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3) 또한, 한국도로공사 LED 모듈(방열판)규격 및 LED 컨버터 고정장치 등을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LED 모듈 연구개발에 대한 부담 해소와 더불어 제조자의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안전 및 성능평가 기준 제정 근거

- 1) KS C IEC 62031, KS C 7655, KS C IEC 61347-1, KS C IEC 60598-1, KS C IEC 60598-2-3 등을 일부 인용하고, 서울특별시 LED조명 표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기준을 적용하였다.
- 2) LED조명기기의 배광(광학)설계는 각 지자체의 규격서(시방서)에 따른다.
- 3) 본 규격의 LED모듈 광속유지율시험은 IEC TC34(15.05 호주회의)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LED Package의 LM80 Report가 있을 경우 1 000 시간으로 줄일 수 있음)선 적용하여 측정시간 및 제조자의 제품개발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 4) LED Package 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광효율 및 연색지수는 매년 상향될 수 있다.

다. 2차 개정의 취지

- 1) [최소광속 및 광효율 상향] 선진외국의 LED Package 및 LED등기구의 기술 수준은 매년 상향되고, 중·소기업의 LED모듈은 기준치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고 있어, 서울시 LED 보급계획에 따라 최소광속 및 광효율을 상향 개정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고려 상향 개정의 시점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함.
- 2) [“급” 삭제] LED Package는 매년 상향되어 Vf(LED 동작전압)은 매년 낮아지고 있음, “급”이라는 표현이 현재 기술수준으로 타당하지 않아, 선진외국의 LED Package 기술 동향 파악으로, “급”이라는 표현 대신 “이하”로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3) [컨버터 고정장치 치수 추가] 컨버터의 고정장치는 컨버터의 형상이 각 제조사마다 상이하여, 이에 대한 표준치수를 정하였으나, LED보안등기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전력으로 구동하고 있어, LED보안등기구 전용 고정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회원사 의견 반영하여 이를 개정함.
- 4) [상관색온도 추가]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 기준(KS C 7658 국가기술표준원), 2015년 서울특별시 LED 보급기준(기후환경본부),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도시빛정책과)등을 참고하여 서울시 야간경관 관리 및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인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4000K, 3500K, 3000K, 2700K에 대한 상관색온도 범위를 추가, KS 기준과 동일한 범위내의 광효율을 설정하고 이를 개정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31호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002-283호(2002. 12. 6)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86호(2003. 10. 6)로 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17호(2003. 12. 26)로 실시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222호(2010. 1. 7)로 택지개발사업 공사 완료된 발산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6. 6. 22)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관리계획(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취지

- 발산택지개발 사업시 존치·용도지정 되어 운영중인 주유소용지에 대해 주변지역여건변화, 외발산지하차로 이용에 따른 통과교통량 감소 등의 사유로 필요성이 감소한 주유소용지를 지역주민 편의향상을 위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서울 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일원	600,321.7 (1,148.6)	-	600,321.7 (1,148.6)	서고제2003-417호 (2003. 12. 26)

※ 면적 항목중()는 계획대상지(내발산동 755-2번지) 면적임

※ 택지개발사업 완료 : 서고제2009-222호(2010. 1. 7)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00,321.7	-	600,321.7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438,585.8	-	438,585.8	73.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9,476.5	-	119,476.5	19.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7,288.9	-	57,288.9	9.5	계획대상지 1,148.6㎡
	제2종일반주거지역	95,721.5	-	95,721.5	16.0	
	제3종일반주거지역	159,343.6	-	159,343.6	26.5	
	준주거지역	6,755.3	-	6,755.3	1.1	
상 업 지 역	소 계	11,713.2	-	11,713.2	2.0	
	근린상업지역	11,713.2	-	11,713.2	2.0	
녹 지 지 역	소 계	150,022.7	-	150,022.7	25.0	
	자연녹지지역	150,022.7	-	150,022.7	25.0	

나) 용도지구

(1)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시설보호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①	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김포공항 주변일대	57,931.000 (1,148.6)	서고제120호 (1977. 4. 22)	-

※ 면적 항목중()는 계획대상지(내발산동 755-2번지) 면적임

■ 고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①	고도 지구	최고고도 지구	김포공항 주변일대	수평표면 (57.86m미만)	29,129,000 (1,148.6)	서고제120호 (1977. 4. 22)	-

※ 면적 항목중()는 계획대상지(내발산동 755-2번지) 면적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없음)

■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6	6,177 (7,124)	116,908.9 (131,195.9)	6	1,080	17,930.4	8	3,606 (4,082)	83,889.5 (90,777.5)	22	1,491 (1,962)	15,089.0 (22,488.0)
광로	1	213	1,125.0	-	-	-	-	-	-	1	213	1,125.0
대로	1	1,508	50,769.2	-	-	-	1	1,508	50,769.2	-	-	-
중로	14	3,562 (4,509)	57,690.8 (71,977.8)	2	579	12,846.0	5	1,989 (2,465)	32,232.1 (39,120.1)	7	994 (1,465)	12,612.7 (20,011.7)
소로	20	894	7,323.9	4	501	5,084.4	2	109	888.2	14	284	1,351.3

주 : 1) 광로 3류 1개노선(남부순환도로)은 발산지구내 가감속차선 설치에 따른 도로폭원 및 면적임

2) () 는 지구와 도시계획시설 구간을 포함한 연장 및 면적임

3) 토지이용계획 도로면적(118,354.3㎡)과 시설결정면적(117,683.9㎡)과의 차이는 현황농로(520.6㎡) 및 기존현황도로(149.8㎡)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9	40	주간선 도로	35,306 (213)	삼전동	방화동	일반 도로		1994. 08.11	남부 순환로
기정	대로	2	1	31	주간선 도로	1,508	광로3-19	광로2-16 (공항로)	일반 도로		2003. 12.18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 도로	146	대로2-1	중로2-1	일반 도로		2003. 12.18	
기정	중로	1	2	20	보조간선 도로	433	대로2-1	중로2-3	일반 도로		2003. 12.18	
폐지	중로	1	120	20	보조간선 도로	10	대로2-1	마곡지구 사업구역계	일반 도로	마곡 지구	2001. 07.10	
기정	중로	2	1	16	보조간선 도로	559	대로2-1	중로1-1	일반 도로		2003. 12.18	
기정	중로	2	2	16	보조간선 도로	713	대로2-1	중로1-2	일반 도로		2003. 12.18	
기정	중로	2	3	15	보조간선 도로	697	대로2-1	중로1-2	일반 도로		2003. 12.18	
기정	중로	2	19	18	집산도로	253 (10)	중1-18 (마곡지구)	대로2-1	일반 도로		2008. 12.3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0	18	집산도로	243 (10)	대로2-1	중2-15 (마곡지구)	일반 도로		2008. 12.30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149	대로2-1	중로3-2	일반 도로		2003. 12.18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70	광로3-19	중로3-3	일반 도로		2003. 12.18	
기정	중로	3	3	14~12	집산도로	169	중로2-2	중로3-2	일반 도로		2003. 12.18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233	대로2-1	중로1-2	일반 도로		2003. 12.18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153	중로3-4	중로3-4	일반 도로		2003. 12.18	
기정	중로	3	37	12	집산도로	244 (10)	대로2-1	중1-18 (마곡지구)			2012. 10.11	
기정	중로	3	38	12	집산도로	247 (10)	대로2-1	중2-15 (마곡지구)			2012. 10.11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190	광장2	중로2-1	보행자 도로		2003. 12.18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127	광장3	중로2-2	보행자 도로		2003. 12.18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117	중로2-3	어린이 공원1	보행자 도로		2003. 12.18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67	중로3-3	근린공원1	일반 도로		2006. 5.25	
기정	소로	2	1	8	특수도로	23	대로2-1	중로3-5	보행자 도로		2003. 12.18	
기정	소로	2	2	8	집산도로	86	중로2-2	소로3-12	일반 도로		2006. 5.25	
기정	소로	3	1	2	특수도로	8.5	대로2-1	공동주택 (2BL)	보행자 도로		2003. 12.18	
기정	소로	3	2	2	특수도로	9.5	중로3-4	공동주택 (5BL)	보행자 도로		2003. 12.18	
기정	소로	3	4	2	특수도로	8.5	대로2-1	공동주택 (3BL)	보행자 도로		2003. 12.18	
기정	소로	3	5	2	특수도로	8.5	대로2-1	공동주택 (5BL)	보행자 도로		2003. 12.18	
기정	소로	3	6	2	국지도로	10	중로3-4	공동주택 (5BL)	보행자 도로		2003. 12.18	
기정	소로	3	7	2	특수도로	11.5	대로2-1	공동주택 (4BL)	보행자 도로		2003. 12.18	
기정	소로	3	8	2	특수도로	11.5	대로2-1	공동주택 (6BL)	보행자 도로		2003. 12.1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9	2	특수도로	11.5	대로2-1	공동주택 (7BL)	보행자 도로		2003. 12.18	
기정	소로	3	10	3	특수도로	10.1	중로3-1	공동주택 (7BL)	보행자 도로		2003. 12.18	
기정	소로	3	11	5	특수도로	21	중로2-1	서측구역계	보행자 도로		2006. 5.25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51	소로2-2	동측구역계	일반 도로		2006. 5.25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107	소로3-12	소로3-12	일반 도로		2006. 5.25	
기정	소로	3	14	3	특수도로	7.6	대로2-1	고등학교	보행자 도로		2006. 5.25	
기정	소로	3	15	3	특수도로	7.6	대로2-1	중학교	보행자 도로		2006. 5.25	

주 : 1) ()는 지구내 연장임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개소	4,067.5	-	4,067.5		
기정	1	주차장	내발산동 390-2일원	1,406.7	-	1,406.7	2003. 12. 18	
기정	2	주차장	내발산동 산62-14일원	2,660.8	-	2,660.8	2003. 12. 18	

나) 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개소	3,709.3	-	3,709.3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내발산동 737-198일원	699.0	-	699.0	2003. 12. 18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내발산동 737-78일원	879.9	-	879.9	2003. 12. 18	
변경	3	광장	일반광장	내발산동 737-73일원	819.9	-	819.9	2003. 12. 18	
기정	4	광장	일반광장	내발산동 737-31일원	657.2	-	657.2	2003. 12. 18	
기정	5	광장	일반광장	내발산동 737-28일원	653.3	-	653.3	2003. 12. 18	

(2)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3개소	39,339.4	—	39,339.4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28일원	76.1	—	76.1	2003.12.18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388-1일원	291.8	—	291.8	2003.12.18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389-4일원	881.3	—	881.3	2003.12.18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222-1일원	601.6	—	601.6	2003.12.18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378일원	4,271.2	—	4,271.2	2003.12.18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38일원	1,892.6	—	1,892.6	2003.12.18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70일원	414.9	—	414.9	2003.12.18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276일원	891.8	—	891.8	2003.12.18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273일원	1,000.9	—	1,000.9	2003.12.18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391-2일원	284.7	—	284.7	2003.12.18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398일원	1,471.2	—	1,471.2	2003.12.18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67일원	910.8	—	910.8	2003.12.18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산62-7일원	594.5	—	594.5	2003.12.18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82일원	640.1	—	640.1	2003.12.18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271일원	801.6	—	801.6	2003.12.18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374일원	384.5	—	384.5	2003.12.18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420-2일원	240.3	—	240.3	2003.12.18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207일원	2,711.2	—	2,711.2	2003.12.18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162일원	339.5	—	339.5	2003.12.18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200일원	1,602.9	—	1,602.9	2003.12.18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194일원	1,321.0	—	1,321.0	2003.12.18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산62-21일원	1,276.1	—	1,276.1	2003.12.18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137일원	128.3	—	128.3	2006. 5.25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산53-3일원	287.9	—	287.9	2006. 5.25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314일원	7,087.1	—	7,087.1	2006. 5.25	
기정	26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136일원	471.9	—	471.9	2006. 5.25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148일원	719.0	—	719.0	2006. 5.25	
기정	28	녹지	연결녹지	내발산동 739-6 일원	281	—	281	2006. 5.25	
기정	29	녹지	연결녹지	내발산동 739-5 일원	3,372	—	3,372	2006. 5.25	
기정	30	녹지	연결녹지	내발산동 739-8 일원	290	—	290	2006. 5.25	
기정	31	녹지	연결녹지	내발산동 739-10 일원	3,273	—	3,273	2006. 5.25	
기정	32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737-193일원	449.3	—	449.3	2006. 5.25	
기정	33	녹지	완충녹지	내발산동 222-2일원	79.3	—	79.3		

(3)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개소	115,993.9	-	115,993.9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내발산동 산62-10일원	83,807.1	-	83,807.1	2003. 12. 18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내발산동 737-19일원	17,825.5	-	17,825.5	2006. 5. 25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내발산동 375-1일원	4,000.3	-	4,000.3	2003. 12. 18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내발산동 737-363일원	1,764.4	-	1,764.4	2003. 12. 18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내발산동 산62-25일원	8,596.6	-	8,596.6	2003. 12. 18	

주 : 근린공원2내 저류시설(7,505㎡)중복지정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전기 공급 설비	변전소	내발산동 737-140일원	12,166.2	-	12,166.2	1976. 4. 24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공 청사	경찰 지구대	내발산동 산62-16일원	529.8	-	529.8	2006.5.25	

(2)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개소	35,415.9	—	35,415.9	2003.12.18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내발산동 737-365일원	10,170.1	—	10,170.1	2003.12.18	
기정	1	학교	중학교	내발산동 737-161일원	10,802.7	—	10,802.7	2003.12.18	
기정	1	학교	고등학교	내발산동 737-135일원	10,582.2	—	10,582.2	2003.12.18	
기정	기타	학교	덕원예고	내발산동 산56-1일원	3,860.9	—	3,860.9	2006.5.25	금릉학원

(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개소	3,340.3	—	3,340.3		
기정	1	사회복지시설	내발산동 400-4일원	2,478.5	—	2,478.5	1996.7.16	
기정	2	사회복지시설	내발산동 산62-20일원	662.4	—	662.4	2007.5.31	
기정	3	사회복지시설	내발산동 737-26일원	199.4	—	199.4	2007.5.31	

(4)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문화체육시설	내발산동 420-1일원	10,017.6	—	10,017.6	2008.12.11	

마) 방재시설

(1)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내발산동 737-16일원	7,505.0	—	7,505.0	2003.12.18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처리시설(변경없음)

■ 하수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하수도 시설	오수중계 펌프장	내발산동 737-12일원	750.4	-	750.4	2006.5.25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809.3	-	2,809.3	-	2,809.3	
-1	단1	458.8	내발산동 421-1일원	229.6	-	229.6	
-2			내발산동 421-4일원	229.2	-	229.2	
-1	단2	904.5	내발산동 421-3일원	226.0	-	226.0	
-2			내발산동 421-4일원	226.6	-	226.6	
-3			내발산동 421-4일원	225.7	-	225.7	
-4			내발산동 421-4일원	226.2	-	226.2	
-1	단3	1,342.2	내발산동 421-4일원	221.4	-	221.4	
-2			내발산동 421-4일원	221.1	-	221.1	
-3			내발산동 산53-6일원	227.6	-	227.6	
-4			내발산동 산53-6일원	224.7	-	224.7	
-5			내발산동 산53-6일원	223.0	-	223.0	
-6			내발산동 산53-6일원	224.4	-	224.4	
-1	단4	103.8	내발산동 737-181일원	55.2	-	55.2	
-2			내발산동 산62-31일	48.6	-	48.6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35,377.9	-	235,377.9	
1BL	내발산동 361-3일원	49,086.9	-	49,086.9	
2BL	내발산동 산51-10일원	26,733.7	-	26,733.7	
3BL	내발산동 737-64일원	25,157.6	-	25,157.6	
4BL	내발산동 737-277일원	36,273.3	-	36,273.3	
5BL	내발산동 398일원	36,518.3	-	36,518.3	
6BL	내발산동 737-133일원	17,280.1	-	17,280.1	
7BL	내발산동 737-177일원	27,798.7	-	27,798.7	
8BL	내발산동 419일원	12,654.9	-	12,654.9	
9BL	내발산동 740일원	3,874.4	-	3,874.4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3,291.0	-	3,291.0	증) 1,148.6	4,439.6	
-1	근생	2,562.9	내발산동 737-210일원	613.0	-	613.0	
-2			내발산동 737-211일원	994.2	-	994.2	
-3			내발산동 737-145일원	955.7	-	955.7	
-1	근생2	728.1	내발산동 산62-29일원	728.1	-	728.1	
-1	근생3	1,148.6	내발산동 755-2일원	-	증) 1,148.6	1,148.6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931.4	-	5,931.4	-	5,931.4	
-1	상1	2,705.7	내발산동 390-2일원	419.6	-	419.6	
-2			내발산동 390-4일원	475.0	-	475.0	
-3			내발산동 산62-1일원	731.9	-	731.9	
-4			내발산동 산51-10일원	535.2	-	535.2	
-5			내발산동 390-2일원	544.0	-	544.0	
-1	상2	1,429.4	내발산동 산51-10일원	468.4	-	468.4	
-2			내발산동 산62-3일원	454.0	-	454.0	
-3			내발산동 737-67일원	507.0	-	507.0	
-1	상3	1,796.3	내발산동 390-2일원	577.3	-	577.3	
-2			내발산동 398-2일원	539.9	-	539.9	
-3			내발산동 398-1일원	679.1	-	679.1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4,067.5	-	4,067.5	
1	내발산동 390-2일원	1,406.7	-	1,406.7	노외주차장
2	내발산동 산62-14일원	2,660.8	-	2,660.8	노외주차장

■ 학교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37,205.4	-	37,205.4	
1	내발산동 737-344일원	890.0	-	890.0	유치원
2	내발산동 372-1일원	899.5	-	899.5	유치원
1	내발산동 737-365일원	10,170.1	-	10,170.1	초등학교
1	내발산동 737-161일원	10,802.7	-	10,802.7	중학교
1	내발산동 737-135일원	10,582.2	-	10,582.2	고등학교
기타	내발산동 산59-2일원	3,860.9	-	3,860.9	금릉학원

■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1	내발산동 산62-16일원	529.8	-	529.8	경찰지구대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3,340.3	-	3,340.3	
1	내발산동 400-4일원	2,478.5	-	2,478.5	
2	내발산동 산62-20일원	662.4	-	662.4	
3	내발산동 737-26일원	199.4	-	199.4	

■ 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1	내발산동 산62-16일원	529.8	-	529.8	경찰지구대

■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1	내발산동 737-140일원	12,166.2	-	12,166.2	변전소

■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3,974.0	-	3,974.0	
1	내발산동 737-138일원	660.8	-	660.8	
2	내발산동 378-1일원	659.7	-	659.7	
3	내발산동 산55-4일원	1,137.9	-	1,137.9	
4	내발산동 산62-20일원	1,515.6	-	1,515.6	

■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472.5	-	1,472.5	
2	내발산동 737-193일원	812.5	-	812.5	
3	내발산동 산62-16일원	660.0	-	660.0	구립어린이집

■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택	내발산동 737-190일원	1,660.9	-	1,660.9	택시차고지

■ 주유소용지(변경)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주	내발산동 755-2일원	1,148.6	감) 1,148.6	-	

■ 하수도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하	내발산동 737-13일원	750.4	－	750.4	오수중계펌프장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단	단1 ~ 단3	용 도	· 지정용도 : 단독주택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다중주택 및 공관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높 이	3층 이하
		허용세대수	획지당 3세대 이하
	단4	용 도	인접한 지구와 필지와 동일한 용도 허용
		건 폐 율	인접한 지구와 필지와 동일한 건폐율 적용
		용 적 률	인접한 지구와 필지와 동일한 용적률 적용
		높 이	-
		허용세대수	-
	공통	배 치	· 단독주택지 내 건축물의 주 방향은 채광, 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배치로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형 태	· 모든 건축물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외부로 노출되는 옥외계단 설치를 금하여 주거지 경관의 악화 방지
		건 축 선	-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BL	1BL ~ 9BL	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9BL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1BL ~ 7BL : 30%이하, 8BL : 40%이하, 9BL : 60%이하																																												
		용적률 및 높이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용적률(%)</th><th colspan="2">높이 (층)</th></tr><tr><th>최저층수</th><th>최고층수</th></tr><tr><td>1BL</td><td>240</td><td>—</td><td>15</td></tr><tr><td>2BL</td><td>240</td><td>—</td><td>15</td></tr><tr><td>3BL</td><td>240</td><td>—</td><td>15</td></tr><tr><td>4BL</td><td>240</td><td>—</td><td>15</td></tr><tr><td>5BL</td><td>200</td><td>—</td><td>15</td></tr><tr><td>6BL</td><td>200</td><td>—</td><td>15</td></tr><tr><td>7BL</td><td>200</td><td>—</td><td>15</td></tr><tr><td>8BL</td><td>100</td><td>—</td><td>4</td></tr><tr><td>9BL</td><td>200</td><td></td><td>7</td></tr></table>			구분	용적률(%)	높이 (층)		최저층수	최고층수	1BL	240	—	15	2BL	240	—	15	3BL	240	—	15	4BL	240	—	15	5BL	200	—	15	6BL	200	—	15	7BL	200	—	15	8BL	100	—	4	9BL	200		7
		구분	용적률(%)	높이 (층)																																											
				최저층수	최고층수																																										
		1BL	240	—	15																																										
2BL	240	—	15																																												
3BL	240	—	15																																												
4BL	240	—	15																																												
5BL	200	—	15																																												
6BL	200	—	15																																												
7BL	200	—	15																																												
8BL	100	—	4																																												
9BL	200		7																																												
배치	· 대로2-1호선변 3~6BL은 도시가로질서에 순응하며 교통소음 등을 고려하여 타워형 배치 및 직각배치 권장 · 1BL, 5BL중 초등학교 인접지역과 주변단독주택 인접지역은 일조권의 영향을 고려 타워형 배치 권장 · 8BL은 구릉지역임을 감안하여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주택지 계획을 수립 · 대로2-1호선과 2,3,4,5,6,7BL 이 접하는 지역은 입면차폐 35m 적용하여 시야확보 · 광로3-19호선 도로와 근접한 7BL은 교통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시설 설치 권장																																														
형태	· 시각적·심리적인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조 및 조망의 측면을 고려한 주동의 형태 결정 · 옥상부에는 도시녹화 및 주민에게 쉼터제공을 위해 수목 등 조경시설 설치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대로2-1호선변 : 3m (공동주택주동에 한함)																																												

■ 근린생활시설용지(기정)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근생	근생1 ~ 근생2	용 도	·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불허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옥외설치 골프연습장,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주출입구는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근생1-3획지 제외)	
		형 태	· 3층이하의 건축물의 지붕은 일자형을 지양하고,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함(권장) · 1층에 샷터 설치시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하도록 함 · 옥상설비는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유도	
		색 채	· 주활동축으로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 ·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 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건축선	건축한계선	20m 도로변 : 1m 30m 도로변 : 2m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근생	근생1 ~ 근생2	용 도	·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불허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옥외설치 골프연습장,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주출입구는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근생1-3획지 제외)	
		형 태	· 3층이하의 건축물의 지붕은 일자형을 지양하고,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함(권장) · 1층에 샷터 설치시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하도록 함 · 옥상설비는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유도	
		색 채	· 주활동축으로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 ·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 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건축선	건축한계선	20m 도로변 : 1m 30m 도로변 : 2m
	근생3	용 도	·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불허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옥외설치 골프연습장,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주출입구는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형 태	· 3층이하의 건축물의 지붕은 일자형을 지양하고,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함(권장) · 1층에 샷터 설치시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하도록 함 · 옥상설비는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유도	
		색 채	· 주활동축으로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 ·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 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부순환로변 : 2m
		대지내 공지	·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조경(5m) 폐지 · 통행 · 완충 ·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5m) 계획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상	상1 ~ 상3	용 도	· 권장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 · 불허용도 : 단독주택, 옥외설치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격리병원,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도소매시장, 운수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근린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이외의 건축물,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시설(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결과 허용되는 시설 제외)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600%이하	
		높 이	10층 이하	
		배 치	· 차량 주출입구는 이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가로면의 방향과 일치 · 대2-1호선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 통일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 채	· 주활동축으로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 ·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 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건축선	건축한계선	대2-1호선변 : 2m

■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유	유치원1 유치원2	용 도	· 지정용도 : 유치원 및 그 부대시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의거 유치원 용지에는 건축면적의 30%이내에서 다음의 시설 허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나.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초 중 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금릉학원	용 도	· 지정용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부대시설 (초등학교의 부대시설에는 병설유치원을 허용)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금릉학원 : 20%이하	
		용적률	200%이하, 금릉학원 : 50%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학교시설의 교사동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운동장이 시설용지의 남측에 배치되도록 계획하여 운동공간을 제공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대로2-1호선변 : 3m

■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공	공1	용 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경찰지구대 등) 및 그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사	사1 ~ 사3	용 도	· 지정용도 :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시설, 노유자 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사1, 사2 : 150%이하, 사3 : 20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문	문1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5호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다목적 관람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3호에 해당하는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인 도서관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인근 주택지(지구내·외)의 조망, 일조 등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중로 1-2호선(북측)변, 소로 2-2호선(남측)변 : 3m

■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변	변1	용도	· 지정용도 : 전기공급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	주차장1 주차장2	용 도	· 지정용도 :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4항)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30%이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시설물허용 (단, 공공업무 시설, 안마시술소, 관람장은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및 높 이	<table><tr><td>구 분</td><td>용적률(%)</td><td>높이(층)</td></tr><tr><td>주차장1</td><td>500</td><td>10</td></tr><tr><td>주차장2</td><td>400</td><td>5</td></tr></table>	구 분	용적률(%)	높이(층)	주차장1	500	10	주차장2	400	5
		구 분	용적률(%)	높이(층)								
		주차장1	500	10								
		주차장2	400	5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부대시설기준 : 붙임

■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종	종1 ~ 종4	용 도	· 지정용도 : 종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종1, 3, 4 : 150%, 종2 : 20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공	공공2, 공공3	용 도	· 권장용도(공공2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5.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 지정용도(공공3에 한함) : 아동관련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1. 노유자시설 중 가목에 해당) · 불허용도 : 권장용도 및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공공2 : 200%이하, 공공3 : 150%
		높 이	공공2 : 5층 이하, 공공3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택	택시차고지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20. 자동차관련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대지내공지	인근 주택지와의 차폐를 위한 완충녹지변 공공조경(5m) 계획

* 운송부대시설기준 : 불임

■ 주유소용지(기정)

도면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유소	주유소	용 도	· 지정용도 : 주유소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항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소매점, 사무의 수리점을 허용)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대지내공지	인근 주택지와의 차폐를 위한 완충녹지변 공공조경(5m) 계획

■ 주유소용지(변경)

- 주유소용지 폐지 : 근린생활시설용지3으로 변경

■ 하수도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하	하1	용 도	· 지정용도 :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오수중계펌 프장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계획	● 차량동선계획 · 차량흐름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차로 부분에는 가감속차로 및 차량출입불허구간을 계획 ·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여 도로의 교통처리 능력을 향상	
	● 주차에 관한 계획 · 본 사업지구내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0.7%인 4,067㎡를 계획하여 현행법에서 정하는 규모(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의 0.6%) 이상으로 노외주차장 계획 · 모든 공동주택단지는 서울발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하는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토록 계획	
	● 보행동선계획 · 공동주택지내에는 보행동선은 대상지전체의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여 최소폭원(1.5m)이상 이 유지되도록 함 · 지구내를 관통하는 대로2-1호선과 보행자전용도로와 교차하는 부분에 보행자를 위한 over-bridge 설치 · 공동5, 6BL과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도로를 설치하며 중로2-2호선 에는 휴일 및 행사시 보차혼용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독특한 장식, 포장패턴이나 상징적인 환경장치를 설치를 유도하여 장소성과 활동성 제고 ·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의 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험프설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이 조정 · 학교시설중 공원·녹지등과 인접하지 않는 부분은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한 내부조경(2m)을 계획 · 내부조경설치시 차량출입구 부분은 제외 · 담장은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위해 담장의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등으로 설치 · 지구내 전력간선은 지중화로 계획 · 광장시설에 대한 포장은 투수성포장재 사용 · 공공조경의 경우 쌈지공원형태로 조성하고 가로조명과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서울시건축조례 제21조의 식재 등 조경기준에 맞게 설치	

3.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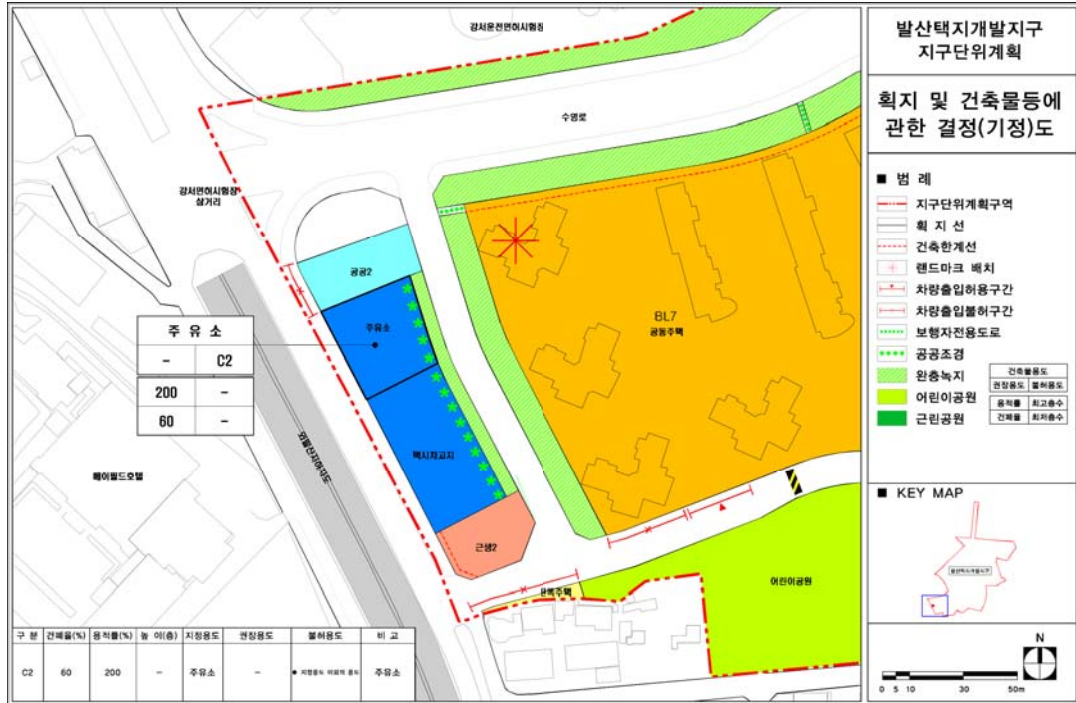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5.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2133-8380) 및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2600-684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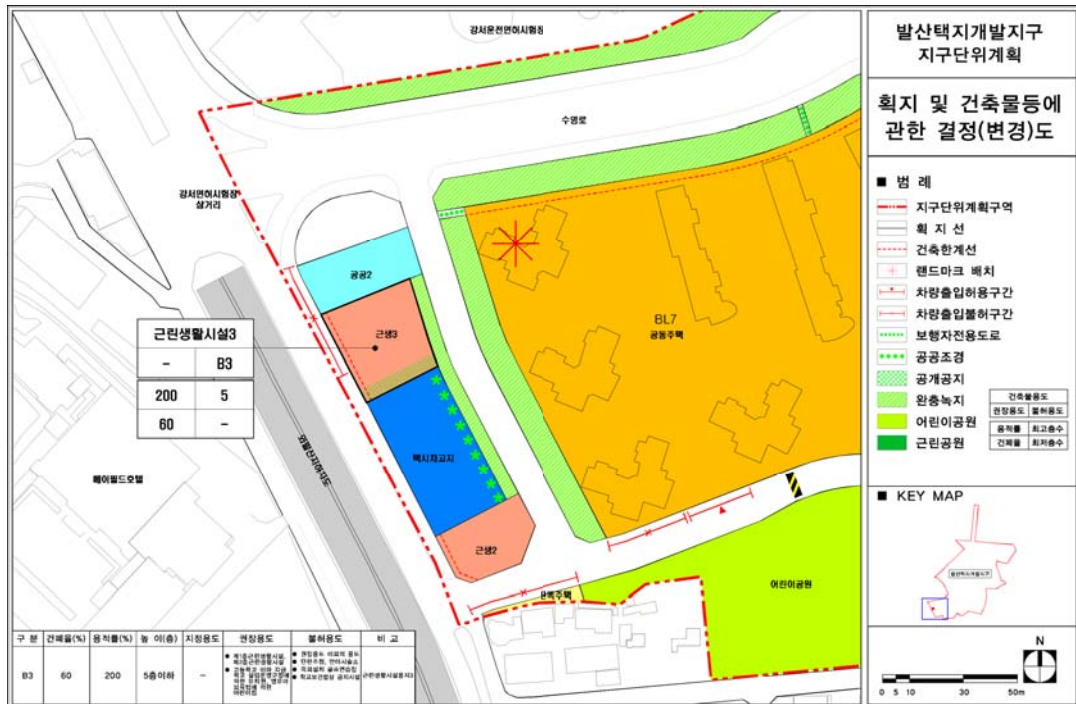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32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7호(2013.11.21)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I. 변경결정 취지 : 변경 없음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 없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 변경 없음

2. 건축물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 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 : 변경 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 : 변경

(1) 건폐율 : 변경 없음

(2) 용적률 : 변경 없음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변경

○ 공 통 사 항 : 변경 없음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유형 : 변경

• 인센티브 유형 C1 : 일반상업지역 : 변경 없음

• 인센티브 유형 C2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 변경 없음

• 인센티브 유형 SR : 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변경 없음

• 인센티브 유형 R3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 정 정 전 】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E-1 ①~⑧ / E-3-a ①~⑨ / E-3-b ①~⑥ / E-3-c ①~② E-4-a ⑨, ⑩ / E-4-b ①~⑩ / E-5-a ⑤~⑥ / E-5-b ①, ③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특성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변	
기준/허용용적률		220/250, 200/230	
중점계획목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벽면)선, 쌈지형공지 조성유도	
항목	세 분	완화기준	비 고
규 제 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0.03
	대지내 공 지	건축(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5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 × 0.02
유 도 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 α 2필지이하 $\alpha=0.02$ 3필지이상 $\alpha=0.03$
	대지내 공 지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피로티구조 $\alpha=0.5$ 침상형구조 $\alpha=1.2$ 개방형구조 $\alpha=1.4$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25 20%이상 준수시

【 정 정 후 】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E-1 ①~⑧ / E-3-a ①~⑨ / E-3-b ①~⑥ / E-3-c ①~② E-4-a ⑥~⑨, ⑩ / E-4-b ①~⑩ / E-5-a ⑤~⑦ / E-5-b ①, ③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특성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변	
기준/허용용적률		220/250, 200/230	
중점계획목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벽면)선, 쌈지형공지 조성유도	
항목	세 분	완화기준	비 고
규 제 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0.03
	대지내 공 지	건축(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5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 × 0.02
유 도 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 α 2필지이하 $\alpha=0.02$ 3필지이상 $\alpha=0.03$
	대지내 공 지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피로티구조 $\alpha=0.5$ 침상형구조 $\alpha=1.2$ 개방형구조 $\alpha=1.4$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25 20%이상 준수시

- 인센티브 유형 R2-1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변경 없음
- 인센티브 유형 R2-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변경 없음

- 다. 건축물의 높이 : 변경 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 변경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III. 관계도면 : 변경 없음

IV.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2133-8380) 및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33호

이문·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휘경3)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2016.5.26.)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결정되고 지형도면작성 고시된 이문·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에관한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문·환경재정비촉진계획(휘경3재정비촉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이문·환경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	1,010,862.5	-	1,010,862.5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0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010,862.5	-	1,010,862.5	100.0	-
주거 용지	소 계	592,746.5	-	592,746.5	58.6	-
	공동주택 1)	531,450.8	-	531,450.8	52.5	중앙·삼익·금호(사업완료) 포함
	주상복합	54,335.5	-	54,335.5	5.4	KCC 웰츠타워 등
	종교시설	6,960.0	-	6,960.0	0.7	7개
근생 용지	소 계	95,125.0	-	95,125.0	9.4	-
	상업업무	95,125.0	-	95,125.0	9.4	신이문·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22,991.2	-	322,991.2	32.0	-
	도 로 2)	153,789.2	증) 91	153,880.2	15.2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철 도	51,845.0	-	51,845.0	5.1	-
	공 원	41,257.0	-	41,257.0	4.1	-
	녹 지 3)	34,308.0	감) 91	34,217.0	3.4	연결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학 교	23,534.0	-	23,534.0	2.3	기존(이문초등학교), 신설(초등학교 1개교)
	복합커뮤니티센터	9,781.0	-	9,781.0	1.0	5개소
	공공청사등	7,753.0	-	7,753.0	0.8	공공청사, 광장, 공공공지, 방수설비
	주 차 장	724.0		724.0	0.1	지하주차장1개소(1,175㎡)

※ 변경사유 : 이문생활권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회경3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되었으나 면적은 변경사항 없음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면적 증가

3)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2)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9,986	-	19,986	46,032	-	46,032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계	14,216	-	14,216	32,697	-	32,697	
	60㎡ 이하	7,165	감) 3	7,162	16,479	감) 6	16,473	미취사가구 수용 -20㎡(200호), 30㎡(100호)
	60㎡~85㎡	5,345	감) 14	5,331	12,294	감) 33	12,261	
	85㎡ 초과	1,706	증) 17	1,723	3,924	증) 39	3,963	
존치지역	소계	5,770	-	5,770	13,335	-	13,335	
	단독주택	4,254	-	4,254	9,830	-	9,830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1,516	-	1,516	3,505	-	3,505	존치건축물

주) 세대당 인구 2.30인 적용 (미취사가구 수용주택 별도 적용)

※ 변경사유 : 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휘경3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택규모 변경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4	74,217	감) 91	73,959	-
공 원	소 계	13	39,909	-	39,742	-
	근린공원	1	11,924	-	11,924	-
	어린이공원	8	14,927	-	18,390	-
	소공원	4	13,058	-	13,058	-
녹 지	소 계	11	34,308	감) 91	34,217	-
	연결녹지	6	13,303	-	13,303	-
	완충녹지	5	21,005	감) 91	20,914	-

※ 변경사유: 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감소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취경3구역 외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010,862.5	—	1,010,862.5	100.0	—
주거지역	소 계	989,759.5	—	989,759.5	97.9	—
	1종일반주거지역	21,241.0	—	21,241.0	2.1	—
	2종(7층)일반주거지역	150,834.0	감) 91	150,743.0	14.9	—
	2종일반주거지역	534,079.0	—	534,079.0	52.8	—
	3종일반주거지역	156,574.0	증) 91	156,665.0	15.5	—
	준주거지역	127,031.5		127,031.5	12.6	—
상업지역	소 계	21,103.0	—	21,103.0	2.1	—
	일반상업지역	21,103.0	—	21,103.0	2.1	—

※ 변경사유 : 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취경3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가) 취경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4,124	—	64,124	100.0	
주거 지역	소계	64,124	—	64,124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6,655	감) 91	6,564	10.2	
	제2종 일반주거지역	3,500	—	3,500	5.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3,969	증) 91	54,060	84.3	

※ 변경사유: 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취경3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

구역명	전체 세대수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합계	20㎡	30㎡	30~40㎡이하	40~50㎡이하	50~60㎡이하	60~85㎡이하	85㎡초과
이문1	2,904	511	-	-	251	205	55	-	-
이문2	1,856	320	-	-	160	128	32	-	-
이문3	4,031	1,308(682)	122	100	225(125)	522(268)	79(29)	238(238)	22(22)
이문3-1	3,879	1,308(682)	122	100	225(125)	522(268)	79(29)	238(238)	22(22)
이문3-2	152	-	-	-	-	-	-	-	-
이문4	2,442	458	100	50	103	164	41	-	-
회경1	299	51	-	-	21	23	7	-	-
회경2	900	174(25)	-	-	70	61	34(16)	7(7)	2(2)
회경3	기정	1,784	408(150)	-	-	261(132)	123(18)	24	-
변경	1,784	413(150)	-	-	219(113)	111(4)	83(33)	-	-
합계	기정	14,216	3,230(857)	222	150	1,091(257)	1,226(286)	272(45)	24(24)
변경	14,216	3,235(857)	222	150	1,049(257)	1,214(272)	331(78)	245(245)	24(24)

주) 회경3구역 : 임대주택(263세대), 장기전세주택(150세대), ()는 장기전세주택

※ 변경사유 : 회경3구역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기타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회경3구역 외 변경없음)

가) 회경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회경3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동대문구 회경동 172번지 일대	64,124	-	64,124	-

(2) 정비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64,124	－	64,124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5,458	－	15,458	24.1	－
	도 로	3,874	증) 91	3,965	6.2	－
	녹 지	7,296	감) 91	7,205	11.2	－
	공공공지	788	－	788	1.2	－
	사회복지시설b	2,300	－	2,300	3.6	건축물기부채납
	사회복지시설c	1,200	－	1,200	1.9	건축물기부채납
택 지 (획지)	소 계	48,666	－	48,666	75.9	－
	7-1	48,666	－	48,666	75.9	－

주) 변경사유 : 이문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녹지 변경

②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

■ 도 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42	15~20	집산 도로	427 (80)	회경동 42-4번지	회경동 139-27번지	일반 도로		건고 46 (1976.4.7)	
기정	중로	2	143	15	집산도 로	200	회경동 101-10번지	회경동 175-4번지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3	10~12 (12)	국지 도로	200 (145)	회경동 154-8번지	회경동 146-127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 08.1.7)	
변경	소로	1	3	10~12 (12)	국지 도로	200 (149)	회경동 154-8번지	회경동 146-127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 08.1.7)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축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 변경사유 : 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1-3 변경

■ 녹 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⑤	녹지	완충녹지	회경동 194-1일원	7,296	감) 91	7,205	서고2007-496 (' 08.1.7)	

주) 변경사유 : 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회경3구역 녹지⑤ 변경

■ 공공공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⑥	공공공지	회경동 104-9일원	788	-	788	서고2007-496 (' 08.1.7)	

■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㉔	사회복지시설	회경동 100-35 일원	2,300	-	2,300	서고 2016-122 (' 16.4.2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기정	㉕	사회복지시설	회경동 100-41 일원	1,200	-	1,200	서고 2016-122 (' 16.4.2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③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결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회경3 재정비 촉진구역	64,124	서울시 동대문구 회경동 172번지 일대	526	-	-	526	-	-

■ 건축시설계획 :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1)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평균	최고
휘경3재정비 촉진구역	64,124	7-1	48,666	동대문구 휘경동 165-58번지 일대	기정	145,923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30이하	300 이하	-	35층이하 (118m이하)	
					변경	145,613						
		7-2	2,300	동대문구 휘경동 100-35번지 일대	3,200		사회복지시설b	60이하	200 이하	-	-	
		7-3	1,200	동대문구 휘경동 100-41번지 일대	1,287		사회복지시설c	60이하	200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총세대수 : 1,784세대 (임대 258세대, 장기전세 150세대) ●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전용면적)		합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합계		1,784(100.0%)	1,376	258	150				
			60㎡이하		1,527(85.6%)	1,119	258	150				
			60~85㎡이하		257(14.4%)	257	-	-				
		85㎡초과		-	-	-	-					
변경		● 총세대수 : 1,784세대 (임대 263세대, 장기전세 150세대) ●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전용면적)		합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합계		1,784(100.0%)	1,371	263	150					
		60㎡이하		1,524(85.4%)	1,111	263	150					
		60~85㎡이하		260(14.6%)	260	-	-					
	85㎡초과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2-142(지구순환가로)변 : 10m ● 중로2-143(진출입로)변 : 10m ● 소로1-3변 : 4m ● 기타 도로변 : 6m										
건축물 형태 및 배치에 관한 계획		● 외대역동로변 전면부 1층에 연도형상가 계획 ● 경원선으로부터 소음대책을 위한 사선배치 계획 권장 ● 현황레벨을 활용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쾌적성 도모										

주1) 인공지반(데크)설치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주) ()는 장기전세주택

※ 변경사유 : 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휘경3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택규모 변경

1)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④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기정	주택재개발사업	1단계 (2008~2020년)	주택재개발조합	증) 268	-	-

⑤ 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임대	장기전세		
기정	휘경3재정비 촉진구역내	48,666	-	25,872	129세대 (7.2%)	132세대 (7.4%)	40㎡이하	
					105세대 (5.9%)	18세대 (1.0%)	40~50㎡이하	
					24세대 (1.4%)	-	50~60㎡이하	
					-	-	60~85㎡이하	
					-	-	85㎡ 초과	
					전체 : 258세대 (14.5%)	전체 : 150세대 (8.4%)		
변경	휘경3재정비 촉진구역내	48,666	-	25,863	106세대 (5.9%)	113세대 (6.3%)	40㎡이하	
					107세대 (6.0%)	4세대 (0.2%)	40~50㎡이하	
					50세대 (2.8%)	33세대 (1.9%)	50~60㎡이하	
					-	-	60~85㎡이하	
					-	-	85㎡ 초과	
					전체 : 263세대 (14.7%)	전체 : 150세대 (8.4%)		

주) 세대수 항목의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변경사유 : 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휘경3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택규모 변경

-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 : 휘경3구역외 변경없음
 19) 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0) 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1)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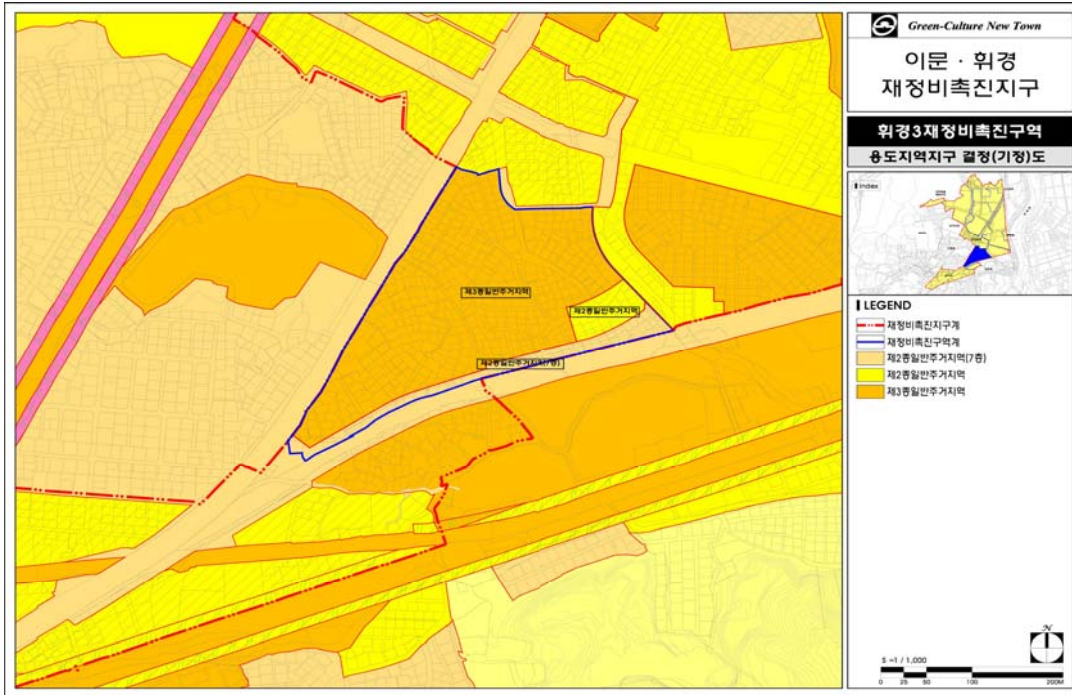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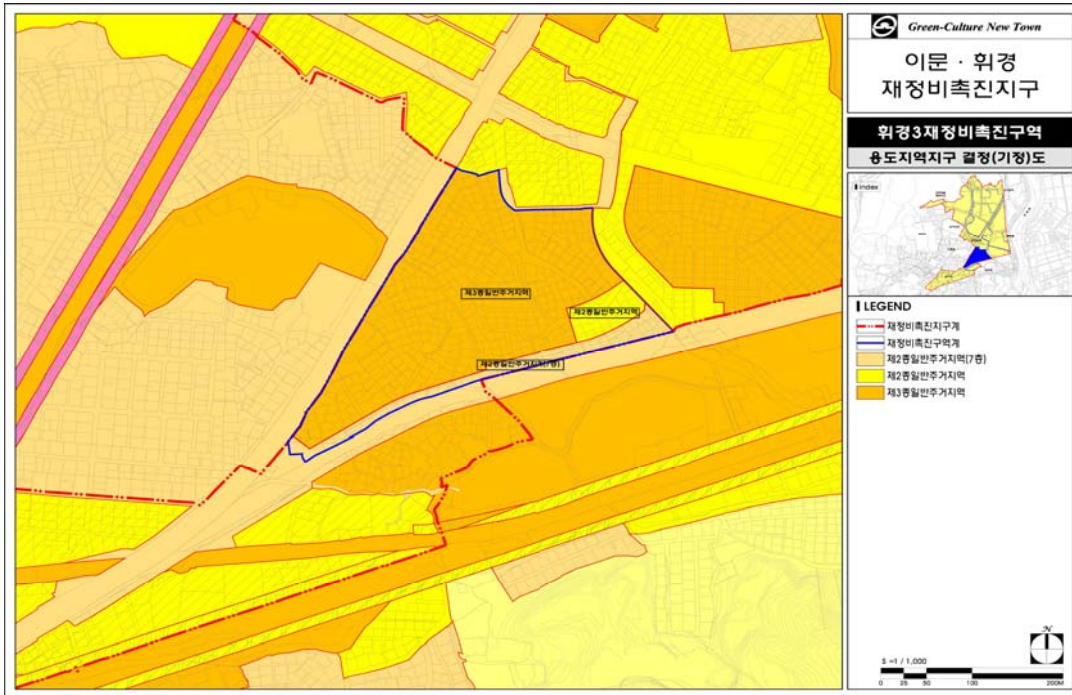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8) 및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02-2127-4389)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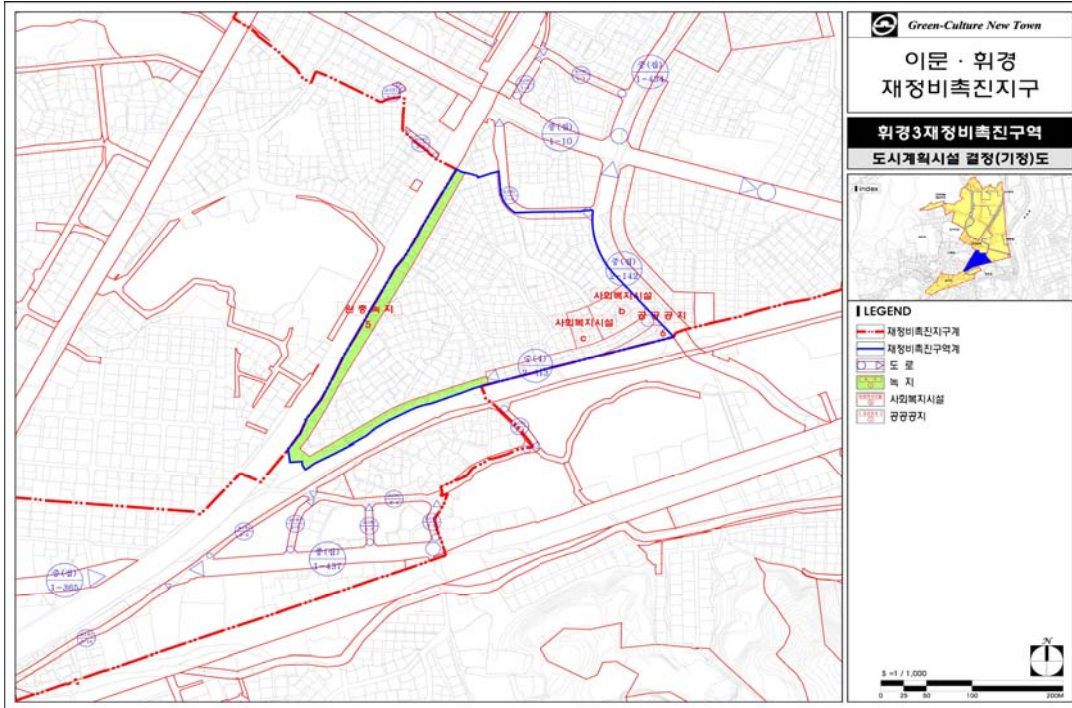
■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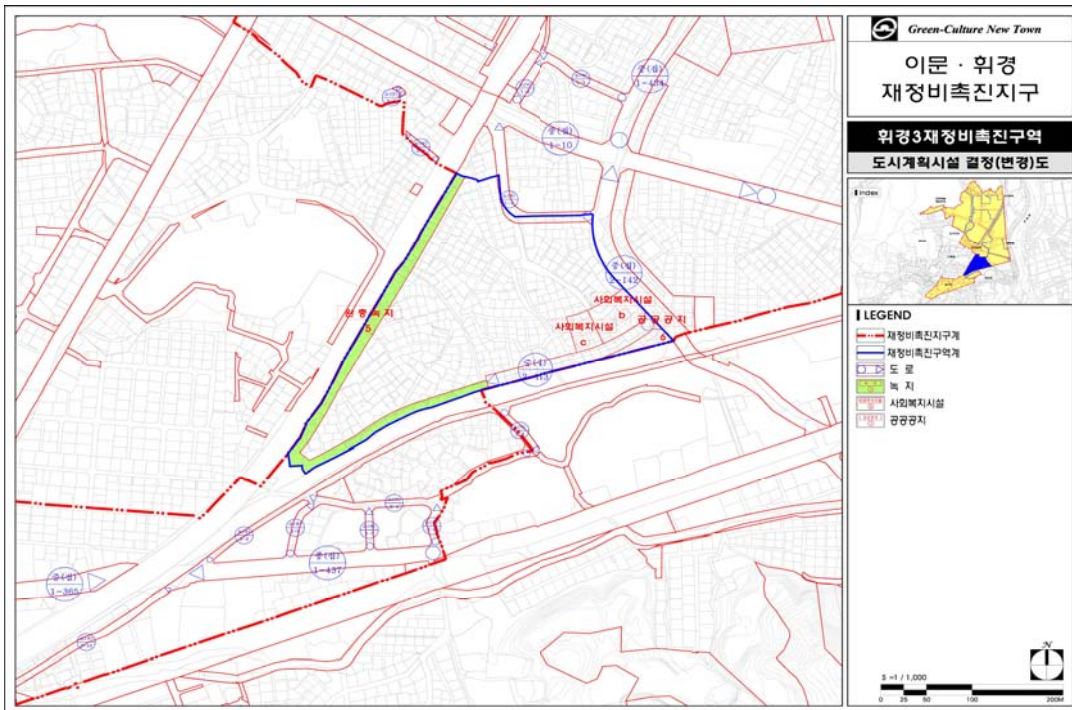
■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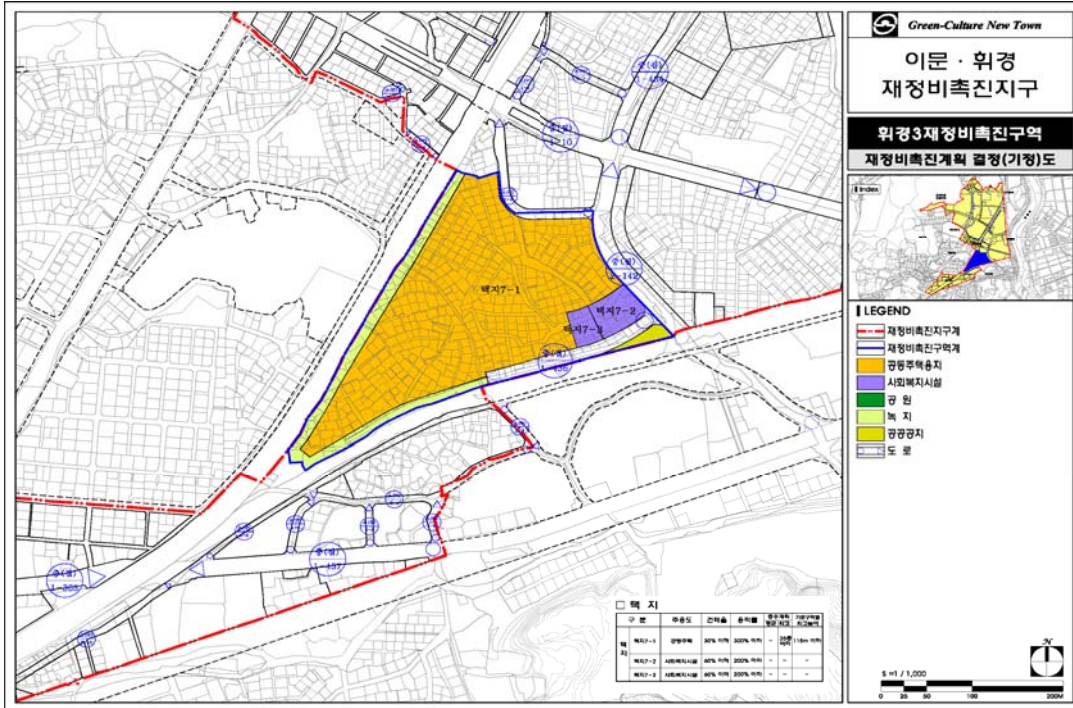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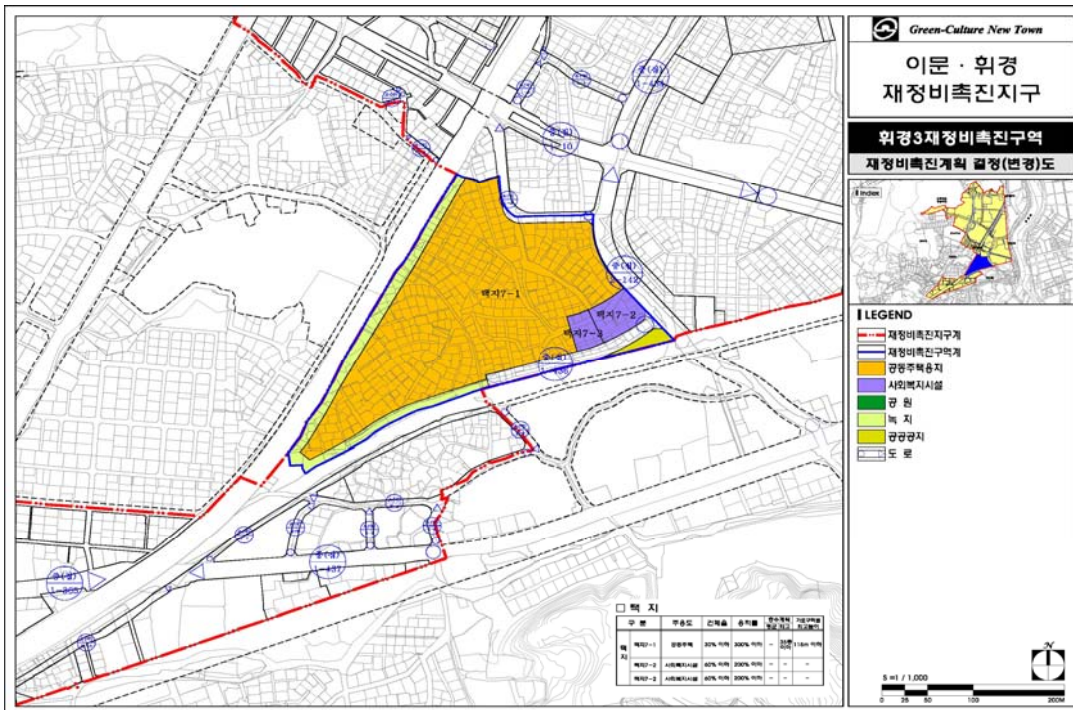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34호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34호(1968.01.15.)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0호(2014.10.23)로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관악산도시자연공원(독산지구, 문성지구)에 실내배드민턴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공원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산 118번지 일대

3. 면 적 : 12,396,760㎡(독산지구 227,188㎡, 문성지구 26,358㎡)

4. 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4, 2076), 관악구 공원녹지과(☎879-6521) 및 금천구 공원녹지과(☎2627-1653)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관악산도시아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지구별 총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2,396,760	659,621.39	77	29,914.22	88,956.51	867	12,396,760	668,852.19	81	31,524.98	90,621.72	1,189	시설면적 증)9,230.8㎡ 건축면적 증)1,610.76㎡
소계		2,090,241	494,621.39	66	29,277.22	88,179.51	799	2,107,950	503,852.19	70	30,887.98	89,844.72	1,121	
관음사지구		205,952	35,316	4	175.18	175.18	63	205,952	35,316	4	175.18	175.18	63	
낙성대지구		435,578	163,683.63	27	17,654	50,017.2	208	435,578	163,683.63	27	17,654	50,017.20	208	
청룡산지구		208,071	32,804	5	809	1,799	99	208,071	32,804	5	809	1,799	99	
신림동계곡지구		409,039	95,368	13	4,088.30	16,326.05	64	409,039	95,368	13	4,088.30	16,326.05	64	
약수암지구		370,206	51,156	5	1,281	4,723	139	370,206	51,156	5	1,281	4,723	139	
독산지구		227,188	60,408.76	9	5,088.84	14,876.28	73	227,188	62,733.8	12	5,153.84	14,941.28	309	시설면적 증)2,325.04㎡ 건축면적 증)65㎡
선유지구		75,393	17,026	1	40	40	27	75,393	17,026	1	40	40	27	
호암사지구		126,784	29,281	1	81.9	163.8	23	126,784	29,281	1	81.90	163.80	23	
삼성산지구		10,118	3,192				41	10,118	3,192				41	
신도미지구		9,394	3,684	1	59	59	30	9,394	3,684	1	59	59	30	
우림지구		3,869	731				14	3,869	731				14	
문성지구		8,649	1,971				18	26,358	8,876.76	1	1,545.76	1,600.21	104	부지면적 증)17,709㎡ 시설면적 증)6,905.76㎡ 건축면적 증)1,545.76㎡
시설지구외		10,306,519	165,000	11	637	777	68	10,288,810	165,000	11	637	777	68	부지면적 감)17,709㎡
시설율(법정 20%이하)		(659,621.39 / 12,396,760) × 100 = 5.32%						(668,852.19 / 12,396,760) * 100 = 5.39%						
건폐율(법정 4%이하)		(29,914.22 / 12,396,760) × 100 = 0.24%						(31,524.98 / 12,396,760) * 100 = 0.25%						

관악산도시자연공원(독산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위치 : 금천구 독산동 산 118번지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등)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등)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계	227,188	60,409	9	5,088.84	14,876.28	73	227,188	62,733.8	12	5,153.84	14,941.28	309	증) 시설면적: 2,325㎡
기반 시설	소계	28,445	19,849				28,010	19,480					감) 부지면적 : 369㎡
	도로	(24,575)	(16,045)				(24,206)	(15,676)					감) 부지면적 : 369㎡
	광장	(3,804)	(3,804)				(3,804)	(3,804)					
조경시설	6,068	5,991				18	4,292	4,215				28	감) 부지면적 : 1,776㎡ 증) 공작물 : 10개소
휴양시설	3,082	3,082				6	2,350	2,350	1			137	증) 부지면적 : 732㎡ 증) 공작물 : 131개소
유흥시설	222	222				4	3,028	3,028				26	증) 부지면적 : 2,806㎡ 증) 공작물 : 22개소
운동시설	20,273	20,273	5	3,642.08	10,942.52	32	25,724	25,724	5	3,642.08	10,942.52	70	증) 부지면적 : 5,556㎡ 증) 공작물 : 38개소
교양시설	4,052	4,052	2	1,276.00	3,763.00		4,008	4,008	3	1,314.00	3,801.00		감) 부지면적 : 44㎡
편익시설	6,769	6,769					3,731	3,823.5	2	92.48	92.48		감) 부지면적 : 3,011㎡
관리시설	500	171	2	170.76	170.76	13	500	105.3	1	105.28	105.28	48	증) 공작물 : 36개소
녹지및기타	157,743						155,418						감) 부지면적 : 2,259㎡
시 설 율 (법정 40% 이하)	(60,409 / 227,188) × 100 = 26.59%						(62,811 / 227,118) × 100 = 27.66%						증) 1.04%
건 폐 율 (법정 10% 이하)	(5,088.84 / 227,188) × 100 = 2.24%						(5,153.84 / 227,118) × 100 = 2.27%						증) 0.03%

2. 시설조서(독산지구)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합 계				227,188	60,409		10동	5,235.76	14,678.76	73			227,188	62,733.8		12동	5,153.84	14,941.28	309	증/시설면적:2,325㎡	
	소 계				28,379	19,849								28,010	19,480						감/부지면적:369㎡	
		도로				24,575	16,045							24,206	15,676						감/부지면적:369㎡	
	광 장		가	8개소	3,804	3,804							가	8개소	3,804	3,804						
			가-1	독산 산113외 3필지	(830)	(830)							가-1	독산 산113 외 3필지	(830)	(830)						
			가-2	시흥 산138-5	(854)	(854)							가-2	시흥 산138-5	(854)	(854)						
			가-3	시흥 산138-5	(826)	(826)							가-3	시흥 산138-6 외 1필지	(826)	(826)						
			가-4	독산 산118-12일대	(235)	(235)							가-4	독산 373-2 일대	(235)	(235)						
			가-5	독산 산116-3	(35)	(35)							가-5	독산 산114-4 외 1필지	(35)	(35)						
			가-6	독산 산197-1 외 일대	(148)	(148)							가-6	독산 산197-1 외 1필지	(148)	(148)						
			가-7	독산 산196일대	(309)	(309)							가-7	독산 산118-5 외 2필지	(309)	(309)						
			가-8	독산 산193-3일대	(221)	(221)							가-8	독산 산193 일대	(221)	(221)						
		가-9	독산 산89-7일대	(346)	(346)							가-9	독산 산89-7 외 1필지	(346)	(34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소 계	전디광장			6,068	5,991					18			4,292	4,215				31	감부지면적:1,776㎡ 증공작물 : 13개소	
		하	3개소	4,694	4,694						하	2개소	2,174	2,174						감부지면적:2,520㎡
		하-1	독산 373	(1,052)	(1,052)						하-1	독산 373 외 2필지	(1,052)	(1,052)						
		하-2	독산 산118-15일대	(1,122)	(1,122)						하-2	독산 116-3 외 4필지	(1,122)	(1,122)						
연미 못	하-3	독산 산118-4일대	(2,520)	(2,520)															폐지	
	까	3개소	1,178	1,178						까	3개소	1,459	1,459						증부지면적:281㎡	
	까-1	독산 826-5일대	(132)	(132)						까-1	독산 산114-4 일대	(132)	(132)							
	까-2	독산 373일대	(646)	(646)						까-2	독산 산114-4 외 2필지	(646)	(646)							
계 류	까-3	독산동 373일대	(400)	(400)						까-3	독산 산116-4 외 2필지	(400)	(400)							
										까-4	독산 산9 일대	(281)	(281)						신설	
	짜	독산동 373일대	56	56						짜		519.0	519.0						증부지면적:463㎡	
										짜-1	독산 산 114-4일대	(56)	(56)							
파고라										짜-2	독산 산89-3 외 4필지	(463)	(463)						신설	
	①	아유회장 외			목재				11	①	아유회장 외			목재				21	증 10개소	

조 경 시 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조 경 시 설	육각정자	②	시흥 산138-5	18	19	목재				1	②	독산 산9 일대	18	19	목재				2	증 1개소	
	팔각정자	③	시흥 산138-5외 1개소	122	44	목재				2	③	시흥 산138-3외 1개소	122	44	목재				3	증 1개소	
	관찰데크	④	독산 373일대			목재				2	④	독산 산 114-4 외 1개소			목재				3	증 1개소	
	생 태 탐방로	⑤	독산 373일대			목재				1	⑤	독산 373 외 1개소			목재				1		
	횡단 대	⑥	독산 373			목재				1	⑥	독산 373			목재				1		
	소 계			3,082	3,082		1 동			6				2,350	2,350		1 동			137	감부지면적: 732㎡ 증공작물 : 131개소
휴 양 시 설	피크닉장	카	시흥 산 138-3외 1필지	530	530.00						카	시흥 산 138-5일대	530	530							
	휴게소	다	2개소	2,096	2,096		1 동				다	47개소	1,364	1,364		1 등					감부지면적: 732㎡
											다-1	독산 산9 일대	(441)	(441)							신설
		다-2	독산 산89외 1필지	(1,940)	(1,940)		1 동				다-2	독산 산89-7 외 1필지	(254)	(254)		1 등					감부지면적: 1,686㎡
		다-3	시흥 산138-3	(156)	(156)						다-3	시흥 산138-3	(156)	(156)							
											다-4	독산 산8 일대	(32)	(32)							신설
										다-5	독산 산89-3 일대	(8)	(8)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후양 시설	휴게소										다-6	독산 산10-1 일대	(46)	(46)					신설	
											다-7	독산 산89-5 일대	(19)	(19)					신설	
											다-8	독산 산 118-8 외 1필지	(264)	(264)					신설	
											다-9	독산 산116-3 일대	(144)	(144)					신설	
		타	시흥 산 138-5	456	456.00					타	시흥 산 138-5	456	456					변경없음		
	평 상	⑦	전지역			목재				1	⑦	전지역			목재			6	증 5개소	
	아외탁자	⑧	전지역			목재				1	⑧	전지역			목재			3	증 2개소	
	장 의 자	⑨	전지역			목재				1	⑨	전지역			목재			4	증 3개소	
	평 의 자	⑩	금천배수지							1	⑩	금천배수지			목재			55	증 54개소	
	등 의 자	⑪	감로천공원							1	⑪	감로천공원			목재			56	증 55개소	
통돌의자	⑫	금천배수지							1	⑫	금천배수지			목재			1			
피크닉 테이블										⑬	독산 산199-1일대			목재			12	신설		
소 계				222	222				4			3,028	3,028					26	증부지면적: 2,806㎡ 증공작물 : 22개소	
모래사장		싸	독산 산195 일대	222	222					싸	독산 산195 일대	222	222							
유 회 시 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안 하 시 설	조 합 놀이대	㉓	독산 산195 일대							1	㉓	독산 산195 일대							1	
	흔 들 놀이대	㉔	독산 산196외							1	㉔	독산 산196외							1	
	거북선 놀이대	㉕	독산 산193-3							1	㉕	독산 산193-3							1	
	미끄럼대	㉖	독산 산193-3							1	㉖	독산 산193-3							1	
	유아 숲체험장										아	독산 산199-1외 2필지	2,806	2,806						신설 증/부지면적:2,806㎡
	정글오름대										㉔	독산 산199-1일대			목재				1	신설
	정글오름 전망대										㉕	독산 산199-1일대			목재				1	신설
	기문가미줄										㉖	독산 산199-1일대			목재				1	신설
	이슬아슬 악어떼										㉗	독산 산199-1일대			목재				1	신설
	나무물놀이										㉘	독산 산199-1일대			목재				1	신설
	등돌모형 놀이대										㉙	독산 산199-1일대			목재				3	신설
	유아센터										㉚	독산 산199-1일대			목재				4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유 회 시 설	나무위인전												1	신설
	통나무놀이												8	신설
	애벌레문주												1	신설
안 동 시 설	소 계			20,273	20,273	R.C	5 동	3,789.00	10,745.0	32	25,724	25,724	70	증부지면적:5,556㎡ 증공작물 : 38개소
	구 민 체육관	1	독산 372-1외 4필지	5,090	5,090		1 동	2,159	9,115		5,090	9,115		변경8음
		라	5개소	4,680	4,680		22면	1,279.08	1,623.52		4,173	1,279.08	1,623.52	감부지면적:307㎡
		라-1	독산 산8외 2필지	(710)	(710)		3 면				(511)			감부지면적:199㎡
		라-2	독산산9외 1필지	(810)	(810)		3 면				(471)			감부지면적:339㎡
		라-3	독산 산10-1 일대	(390)	(390)		2 면				(299)			감부지면적:91㎡
		라-4	독산 산 118-1외 2필지	(490)	(490)		6 면				(612)			증부지면적:122㎡
		라-5	독산 산199-3외 2필지	(2,280)	(2,280)		8 면	(1,279.08)	(1,623.52)		(2,280)	(1,279.08)	(1,623.5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테니스장		마	3개소	8,115	8,115		(4)동,13 면	204	204		마	3개소	8,115	8,115		(4)동, 13면	204	204			
		마-1	독산 산10-1일대	(1,460)	(1,460)		3 면				마-1	독산 산10-1일대	(1,460)	(1,460)		3면					
		마-2	독산 산204-7외 10필지	(2,780)	(2,780)		(1)동,4면	(150)	(150)		마-2	독산 산204-7외 10필지	(2,780)	(2,780)		(1)동,4 면	(150)	(150)			
		마-3	독산 산10-2일대	(3,875)	(3,875)	콘테 이너	(3)동,6면	(54)	(54)		마-3	독산 산10-2일대	(3,875)	(3,875)	콘테 이너	(3)동,6 면	(54)	(54)			
		따	독산 산118-5일대	520	520						따	독산 산118-5 외 1필지	520	520							
	농구장	사	5개소	1,785	1,785						사	8개소	1,160	1,160							감바지면적:520㎡ 증:공작물 : 59개소
		사-1	독산 산89-3외 1필지	(460)	(460)						사-1	독산 산8-1일대	(85)	(85)							감바지면적:375㎡
		사-2	독산 산89-7일대	(460)	(460)						사-2	독산 산9 일대	(157)	(157)							감바지면적:303㎡
		사-3	독산 산89-8일대	(380)	(380)						사-3	독산 산89-7일대	(154)	(154)							감바지면적:226㎡
		사-4	시흥 산138-3외 1필지	(323)	(323)						사-4	시흥 산138-3외 1필지	(323)	(323)							
체 력 단련장	사-5	독산 산196일대	(162)	(162)						사-5	독산 산196 외 2필지	(162)	(162)						(22)		
										사-6	독산 산89-2일대	(33)	(33)						(2)	신설	
										사-7	독산 산89-2일대	(113)	(113)						(4)	신설	
										사-8	독산 산118-8일대	(133)	(133)						(4)	신설	
안 동 군 시 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안동시	체력단련 기구	⑩	전지역							32								(15)	감공작물 : 17개소
	축구장																		신설) 부지면적: 6,142 ㎡
	게이트볼장																		신설) 부지면적: 441㎡
	새름장	파	시흥 산138-3	83	83														
	소 계			4,052	4,052	2	동	1,276.00	3,763							1,314.00	3,801		감) 부지면적: 44㎡
고양시	청소년 회 관	2	시흥 산138-2일대	1,430	1,430		1동	518.00	1,782							518.00	1,782		변동없음
	도서관	3	독산 375-1외 2필지	2,540	2,540		1동	758.00	1,981							758.00	1,981		변동없음
	아외무대	빠	독산 산144-2일대	82	82														폐지
	학습준비실	6														38.00	38.00		신설) 바닥면적: 38㎡
	소 계			6,869	6,834.5														감) 부지면적: 3,011㎡
평안시	약수터	자	2개소	3,690	3,690														감) 부지면적: 3,011㎡
		자-1	독산 산89-3외 2필지	(3,210)	(3,210)														감) 부지면적: 3,011㎡
		자-2	독산 산118-2외 1필지	(480)	(480)														감) 부지면적: 3,01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편 의 시 설	화정실	5	독산 산138-3	100	65.5	R.C	1 동	65.48	65.48		5	독산 산138-3	127	92.5		2동	92.48	92.48		증부지면적: 27㎡
											5-1	독산 산138-3	(100)	(65.5)	R.C	1동	(65.48)	(65.48)		
											5-2	독산 산10-1일대	(27)	(27.0)		1동	(27.0)	(27.0)	산설	
		차	4개소	3,079	3,079						차	4개소	3,079	3,079						
		차-1	독산 산118-2외 2필지	(1,080)	(1,080)						차-1	독산 산371-2외 14필지	(1,080)	(1,080)						
	주차장	차-2	독산 828-2외 2필지	(630)	(630)						차-2	독산 375-2외 5필지	(630)	(630)						
		차-3	시흥 산138-2일대	(1,200)	(1,200)						차-3	시흥 산138-2일대	(1,200)	(1,200)						
		차-4	독산 산196	(169)	(169)						차-4	독산 산194-2일대	(169)	(169)						
		4	독산 산198-2	500	105.3		2 동	170.76	170.76	13			500	105.3		1동	105.28	105.28	49	증공작물 : 36개소
		관리사무실	독산 산198-2	500	105.3	R.C	1 동	105.28	105.28		4	독산 산198-2	500	105.3	R.C	1동	105.28	105.28		
관 리 시 설	안내판	㉘	전지역			목재	1 동	65.48	65.48	3	㉘	전지역			목재			10	증공작물 : 7개소	
	휴지통	㉙	전지역			목재				5	㉙	전지역			목재			5		
	공원등	㉚	독산 산89-7일대							3	㉚	독산 산89-7일대						28	증공작물 : 25개소	
	음수대	㉛	독산 산89-7일대							1	㉛	독산 산89-7일대						1		
	목교	㉜	감로천공원							1	㉜	감로천공원						4	증공작물 : 3개소	
	안전헬스									㉝	다목적운동장 주변						1	증공작물 : 1개소		
	녹지 및 기타			157,743								155,418							감부지면적: 2,331㎡	

3. 도로조서(독산지구)

- 공원내 도시계획결정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1	1	10	853	8,530	도시계획 도로	시흥138-5	독산 산89-115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5,943	16,045				
변경					6,029	15,676				
당초	소 계				1,797	7,425				
변경					1,607	6,919				
당초	소 로	2	1	8	125.0	1,000	진입도로	독산 산113	독산 산114-4	
당초		3	1	3	160.0	480	진입도로	독산 373	독산 산118-8	
당초		3	2	3	270.0	810	연결도로	소로 3-3	휴게소	
신설		3	3	3	29.0	87	진입도로	북서측진입구	광장 가-9	
당초		3	4	6	303.0	1,818	진입도로	독산 828-1	독산 산197	
당초		3	5	4	111.0	444	연결도로	시흥동 산138-5	시흥동 산138-5	
당초		3	6	3	27.0	81	연결도로	시흥동 산138-3	시흥동 산138-3	
당초		3	7	2	25.0	50	진입도로	독산 산118-10	독산 산118-2	
당초		3	8	3	23.0	69	진입도로	독산 산197-1	독산 산197-1	
당초		3	9	2	2.5	5	진입도로	독산 산196	독산 산196	
당초		3	10	6	7.0	42	연결도로	독산 산196	독산 산196	
당초		3	11	3	5.0	15	진입도로	독산 산197-1	독산 산197-1	
당초		3	12	2	16.0	32	연결도로	독산 산197-1	독산 산197-1	
당초		3	13	2	16.0	32	연결도로	독산 산118-5	독산 산195	
당초		3	14	3	17.0	51	연결도로	독산 산195	독산 산195	
당초		3	15	4	84.5	338	연결도로	독산 산196	독산 산194-2	
당초		3	16	4	14.0	56	연결도로	독산 산118-4	독산 산118-4	
폐지		3	17	4	6.0	21	연결도로	독산 산118-4	독산 산 118-4	
폐지		3	18	2	9.0	18	연결도로	독산 산193-3	독산 산193-3	
폐지		3	19	2	58.0	116	연결도로	독산 산194-2	독산 산194-4	
폐지		3	20	3	146.0	438	연결도로	독산 산118-4	독산 산193-3	
당초		3	21	4	108.0	432	연결도로	독산 374	독산 산193-3	
당초		3	22	4	169.0	676	연결도로	독산 산197-1	독산 산118-5	
당초		3	23	3	43.0	129	연결도로	독산 산197-1	독산 산196	
당초		3	24	6	19.0	114	연결도로	독산 산197-1	독산 산196	
당초		3	25	4	11.0	44	연결도로	독산 산197-1	독산 산197-1	
당초		3	26	3~6	22.0	114	연결도로	독산 산196	독산 산19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 책 로	소 계			4,146	8,620				
변경					4,422	8,757				
당초		-	1	2	28	56	산책로	독산 산8	독산 산8	
변경					124	248	산책로	북측진입부	산책로 3	
당초		-	2	2	203	406	산책로	독산 산89-8	독산 산6	
변경					226	514	산책로	산8-2임	산책로 6	
당초		-	3	2	33	66	산책로	독산 산8	독산 산8	
변경					110	220	산책로	계류 짜-2	연못 까-4	
당초		-	4	2	199	398	산책로	독산 산8	독산 산9	
변경					212	424	산책로	배드민턴장 라-1	산책로 6	
당초		-	5	2	183	366	산책로	독산 산89-3	독산 산89-7	
변경					232	464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3	
당초		-	6	2	102	204	산책로	독산 산89-2	독산 산89-9	
변경				1.5	114	171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2 산책로 17	
당초		-	7	2	64	128	산책로	독산 산89-7	독산 산89-7	
변경					22	44	산책로	산책로 5	휴게소 다-6	
당초		-	8	2	120	240	산책로	산198-1임	산책로 24	
당초		-	9	2	60	120	산책로	독산 산117-1	배드민턴장	
변경					26	52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10	
당초		-	10	2	94	188	산책로	독산 산117-3	자연학습장	
변경					151	219	산책로	체력단련장 사-3	산책로 4	
당초		-	11	3	25	75	산책로	독산 산89-7	독산 산89-7	
변경					24	72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5	
당초		-	12	2	248	496	산책로	독산 89-9	독산 산113	
당초		-	13	2	99	198	산책로	독산 114-4	독산 89-9	
당초		-	14	2	101	202	산책로	독산 89-2	독산 89-9	
변경					41	82	산책로	연못 까-4	산책로 4	
당초		-	15	2	81	162	산책로	독산 89-5	독산 89-8	
변경					81	162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47	산 8-2임	
당초		-	16	2	65	130	산책로	독산 114-4	독산 114-4	
변경					111	222	산책로	서측 진입부	산책로 19	
당초		-	17	2	50	100	산책로	독산 118-2	독산 114-4	
변경					36	72	산책로	산책로 6	서측 진입부	
당초		-	18	2	47	94	산책로	독산 118-2	독산 118-2	
변경					91	182	산책로	산책로 16	서측 진입부	
당초		-	19	2	55	110	산책로	소로 3-1	광장 가-5	
당초		-	20	2	505	1,010	산책로	독산 산197	독산 산199-3	
변경					102	204	산책로	휴게소 다-8	소로 3-4	
당초		-	21	2	66	132	산책로	독산 산198-1	독산 산199-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49	98	산책로	소로 3-4	서측 진입부	
당초		-	22	2	81	162	산책로	독산 산198-1	독산 산 199-1	
변경					124	248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24	
당초		-	23	2	346	692	산책로	소로 3-4	배드민턴장 라-5	
당초		-	24	2	229	458	산책로	독산 산197	독산 산199-2	
당초		-	25	2	46	92	산책로	독산 산203-3	독산 산204-15	
당초		-	26	2	100	200	산책로	독산 산203-3	독산 산204-8	
당초		-	27	2	71	142	산책로	독산 산133-1	독산 산202	
변경					206	412	산책로	산책로 25	산책로 26	
당초		-	28	2	33	66	산책로	시흥 산138-5	시흥 산 138-5	
변경					73	146	산책로	남서측진입부	산책로 27	
당초		-	29	2	75	150	산책로	시흥 산138-5	시흥 산138-5	
당초		-	30	2	92	184	산책로	시흥 산138-3	시흥 산138-3	
당초		-	31	2	84	168	산책로	시흥 산138-3	시흥 산138-3	
당초		-	32	2	40	80	산책로	시흥 산138-5	시흥 산138-3	
당초		-	33	3	42	126	산책로	독산 산118-12	독산 산118-4	
변경					69	207	산책로	소로 3-1	소로 3-1	
당초			34	1.8	35	63	산책로	독산 산118-8	독산 산118-4	
변경					62	112	산책로	소로 3-1	서측 진입부	
당초		-	35	1.5	80	120	산책로	독산373-1	독산 산116-3	
당초		-	36	1.5	30	45	산책로	독산 산118-12	독산 산116-3	
당초		-	37	1.3~6	54	155	산책로	독산373	독산373	
당초		-	38	1.2	10	12	산책로	독산 산197-1	독산 산197-1	
당초		-	39	6	15	90	산책로	독산 산197-1	독산 산197-1	
당초		-	40	3.5	20	7	산책로	독산 산197-1	독산 산197-1	
변경					20	70	산책로	산책로 41	산책로 41	
당초		-	41	1.2	70	84	산책로	독산 산197-1	독산 산197-1	
당초		-	42	3	3	9	산책로	독산 산197-1	독산 산197-1	
당초		-	43	5	76	380	산책로	독산 산197-1	독산 산118-8	
변경					1.5	34	산책로	체력단련장 사-3	소로 3-17	
당초		-	44	4	47	188	산책로	독산 산118-5	독산 산195	
변경					1.5	52	산책로	광장 가-9	휴게소 다-2	
당초		-	45	2	15	30	산책로	독산 산89-7	독산 산89-7	
변경					2	14	산책로	북측진입부	산책로 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	46	1.5	24	36	산책로	독산 산89-7	독산 산89-7	
변경		-	46	2	8	12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47	
신설		-	47	1	43	43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 15	산책로 46	
신설		-	48	1.5	34	51	산책로	산책로 47	북서측연결로	
신설		-	49	2	31	62	산책로	약수터 자-1	산책로 4	
신설		-	50	1.5	12	18	산책로	화장실 5-2	산책로 3	
신설		-	51	2	22	44	산책로	영남초등학교 진입부	산책로 1	
신설		-	52	2	9	18	산책로	산책로 4	배드민턴장 라-2	
신설		-	53	1	12	12	산책로	산책로 35	배드민턴장 라-4	
신설		-	54	2	10	20	산책로	산책로 35	게이트볼장 바	
신설		-	55	3	25	75	산책로	소로 3-1	게이트볼장 바	
신설		-	56	1.5	6	9	산책로	체력단련장 사-8	산책로 34	
신설		-	57	1	8	8	산책로	산책로 33	소로 3-22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문성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1. 총괄표(위치:관악구 신림동 산197-3번지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 단 기 시 설	계	8,649	1,971	18				26,358.00	8,876.76	1	1,545.76	1,600.21	104	중) 17,709㎡							
	소 계	992	992					4,461.00	4,461.00					중) 3,469.00㎡							
	도 로	992	992					3,142.00	3,142.00					중) 2,150.00㎡							
	광 장							1,319.00	1,319.00					중) 1,319.00㎡							
휴 양 시 설		264	264	4				519.00	519.00				34	중) 255.00㎡							
유 희 시 설		495	495	2				205.00	205.00				4	중) 290.00㎡							
운 동 시 설		220	220	11				3,333.76	3,333.76	1	1,545.76	1,600.21	29	중) 3,113.76㎡							
편 익 시 설								358.00	358.00					중) 358.00㎡							
관 리 시 설													37								
녹 지 및 기타		6,678						17,481.24						중) 10,803.24㎡							
시 설 율 (법정 40% 이하)		(1,971/8,649) * 100 = 22.79%												(8,876.76/26,358.00) * 100 = 33.68%		중) 10.89%					
건 폐 율 (법정 10% 이하)														(1,545.76/26,358.00) * 100 = 5.86%		중) 5.86%					

2. 시설조서(문성지구)

구분	번			경			전			번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합계			8,649	1,971						18			26,358.00	8,876.76		1	1,545.76	1,600.21		104	증17,709㎡
	소계		992	992									4,461	4,461							증3,469㎡
	도로		992	992									3,142	3,142							증2,150㎡
												가	5개소	1,319	1,319						증1,319㎡
기반시설											가-1	신림동 산197-3 일원	(225)	(225)							신규
											가-2	신림동 산197-3 일원	(551)	(551)							신규
											가-3	신림동 산197-3 일원	(315)	(315)							신규
											가-4	신림동 산124-6 일원	(132)	(132)							신규
											가-5	신림동 산124-6 일원	(96)	(96)							신규
										4		나	5개소	519	519					34	증255㎡
휴양시설	가	3개소	264	264																	
	가-1	신림동 산197-9 일원	(98)	(98)																	폐지
	가-2	신림동 산197-59 일원	(57)	(57)																	폐지
	가-3	신림동 산197-59 일원	(109)	(109)																	폐지
											나-1	신림동 산197-3 일원	(32)	(32)							신규
											나-2	신림동 산197-3 일원	(295)	(295)							신규
휴양시설											나-3	신림동 산197-3 일원	(105)	(105)							신규
											나-4	신림동 산124-6 일원	(17)	(17)							신규
											나-5	신림동 산124-6 일원	(70)	(70)							신규
												시설부지 내									신규
정의자 임대		시설부지 내								4		시설부지 내								30	신규
												시설부지 내								4	신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형 시설	소계		495	495					2		205	205			4	증1,290㎡	
	어린이놀이터	나	신림동 산197-10 일원	495												폐지	
	어린이놀이터									다	신림동 산124-6 일원	205				신규	
	놀이시설물		시설부지 내					2			시설부지 내				4		
	소계	다	2개소 신림동 산197-15 일원 신림동 산197-91 일원	220 220 (132) (88)	220 220 (132) (88)			11		라	4개소	3,333.76 283	3,333.76 283	1	1,545.76 1,600.21	29	증3,113.76㎡
운동 시설	체력단련장															폐지	
										라-1	신림동 산197-3 일원	(41)	(41)			신규	
										라-2	신림동 산197-3 일원	(115)	(115)			신규	
										라-3	신림동 산124-6 일원	(50)	(50)			신규	
										라-4	신림동 산124-6 일원	(77)	(77)			신규	
	실내 베드민턴장									마	신림동 산197-3 일원	1,545.76	1,545.76	1	1,545.76	1,600.21	신규
	다목적운동장									바	신림동 산124-6 일원	330	330			신규	
	테니스장									사	신림동 산124-6 일원	1,175	1,175			신규	
	체력단련기구		체력단련장					11							29		
	편익 시설	소계								아	신림동 산197-3 일원	358	358			증358㎡	
관리 시설	주차장										신림동 산197-3 일원	358	358			신규	
	소계										시설부지 내				37		
	CCTV										시설부지 내				4	신규	
	공원등										시설부지 내				20	신규	
	안내판										시설부지 내				8	신규	
녹지 및 기타	볼라드										시설부지 내				5	신규	
	소계			6,678								17,481.24				증10,803.24㎡	
	녹지		전지역	6,678							전지역	17,481.24					

3. 도로조서(문성지구)

- 공원시설 계획도로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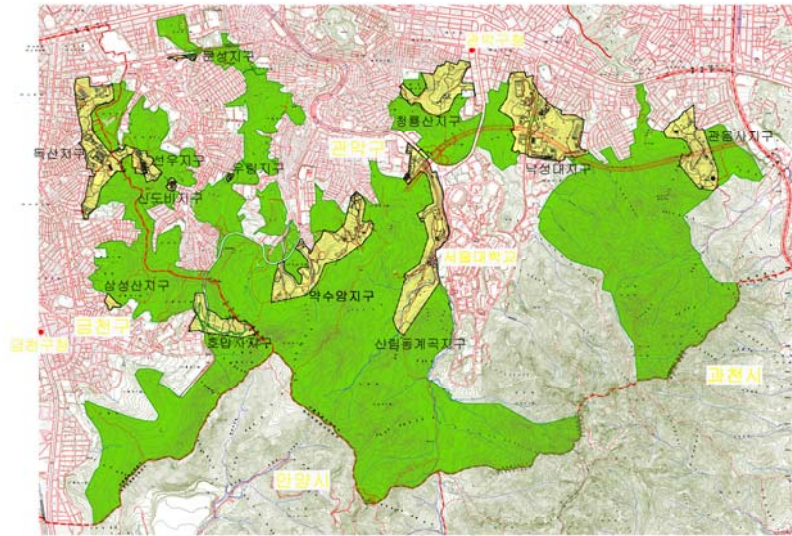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폐지	합 계				495	992				
폐지	산책로	소 계			495	992				
폐지	산책로		1	2.0	31	62	산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폐지	산책로		2	2.0	88	176	산책로	부지경계	어린이놀이터 나	
폐지	산책로		3	3.0	7	21	산책로	휴게소 가-1	부지경계	
폐지	산책로		4	2.0	98	196	산책로	산책로2	휴게소 가-2	
폐지	산책로		5	2.0	72	144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나	산책로7	
폐지	산책로		6	2.0	14	28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나	산책로7	
폐지	산책로		7	1.5	12	18	산책로	체력단련장 다-2	휴게소 가-3	
폐지	산책로		8	2.25	4	9	산책로	산책로7	어린이놀이터 나	
폐지	산책로		9	2.0	169	338	산책로	산책로1	부지경계	

- 공원시설 계획도로 (신설)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951	3,142				
신설	소로	소 계			335	1,882				
신설	소로	3류	1	6	103	618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신설	소로	3류	2	4.3	10	43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3	
신설	소로	3류	3	5.5	60	330	진입로	소로3-5	부지경계	
신설	소로	3류	4	5.5	26	143	진입로	소로3-3	소로3-5	
신설	소로	3류	5	5.5	108	594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신설	소로	3류	6	5.5	28	154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5	
신설	산책로	소 계			616	1,260				
신설	산책로	-	1	2.0	54	108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2	
신설	산책로	-	2	2.0	11	22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신설	산책로	-	3	2.5	4	8	산책로	부지경계	광장 가-2	
신설	산책로	-	4	1.5	72	108	산책로	실내배드민턴장 마	산책로5	
신설	산책로	-	5	2.5	6	15	산책로	산책로4	체력단련장 라-2	
신설	산책로	-	6	2.0	8	16	산책로	산책로4	휴게소 나-3	
신설	산책로	-	7	2.0	52	104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8	
신설	산책로	-	8	3.0	37	111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1	
신설	산책로	-	9	2.0	66	132	산책로	산책로8	부지경계	
신설	산책로	-	10	2.0	55	110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11	
신설	산책로	-	11	2.0	104	208	산책로	광장 가-4	산책로8	
신설	산책로	-	12	2.0	53	106	산책로	산책로9	광장 가-4	
신설	산책로	-	13	3.0	24	72	산책로	광장 가-5	광장 가-4	
신설	산책로	-	14	2.0	70	140	산책로	부지경계	광장 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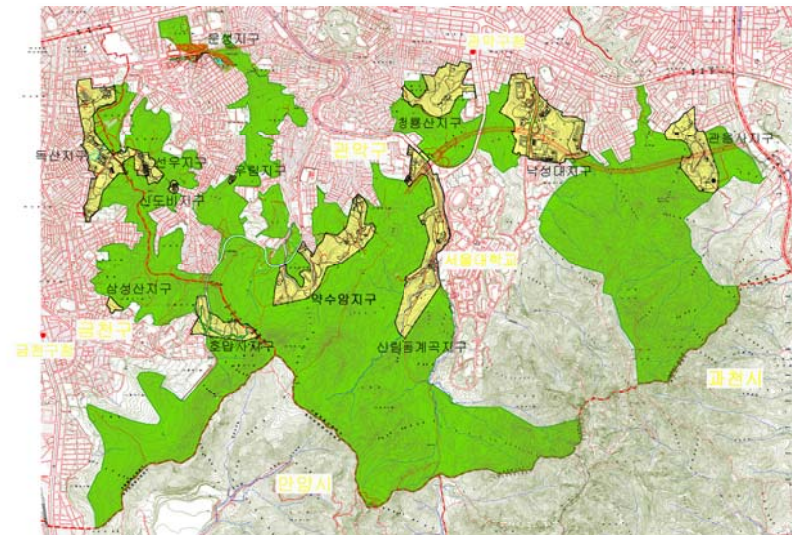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도(변경전)

관악산도시자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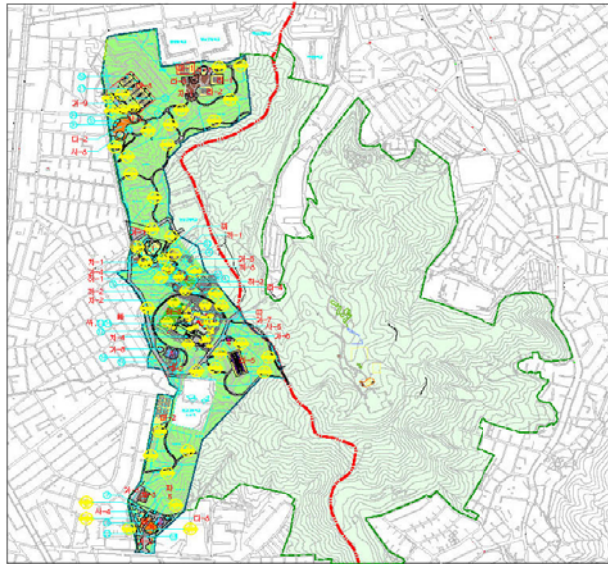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도(변경후)

관악산도시자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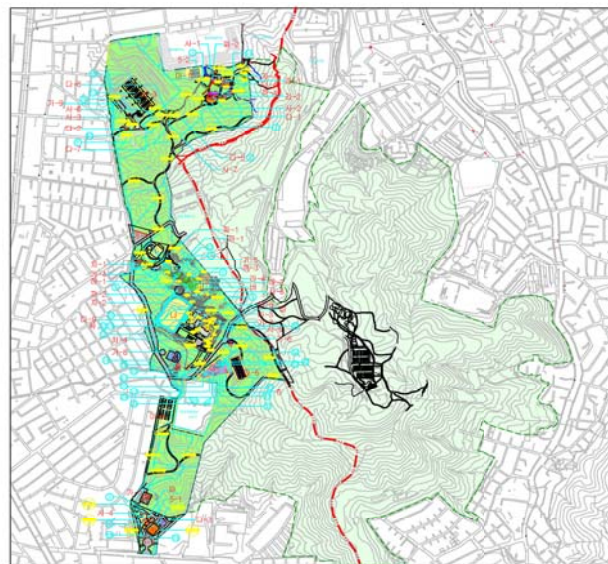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독산지구)
조성계획결정도(변경전)



관악산도시자연공원

[illegible]

도시계획시설(독산지구)
조성계획결정도(변경후)



관악산도시자연공원

[illegible]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521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점용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허가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점용허가 신청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신청자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2. 점용장소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1113
 3. 점용면적 : 2497.5m²
 4. 점용목적 : 폐소형가전 재활용 처리를 위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5. 점용기간 : 2016. 09. 15 ~ 2021. 09. 14(5년)
 6. 복구방법 : 점용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반출
 7. 복구완료시기 : 점용허가기간 종료일전까지 복구완료
-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중량물재생센터 관리과(☎02-2211-25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579호

2016년도 제13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 가. 심의일시 : 2016. 7. 20.(수) 10:00 ~ 13:00
-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다. 심의작품 : 총 12건 20작품(조각 15점, 회화 2점, 사진 2점, 부조 1점)
- 라. 심의결과 : 승인 16작품, 부결 4작품
-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6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	강북구 꿈의숲 롯데캐슬	조각	꿈의 숲-the flying		○	독창성 결여 (유사작품이 많음)
2	강남구 62-10 업무시설	조각	Your ascending thought	○		
3	서초구 서초신라stay호텔	조각	비상		○	조형성결여, 장식적요소가 많음, 좌 대와의 부조화
4	강서구 대방디엠시티	조각	물방울 소리	○		
5	서초구 서초우성3차아파트	조각	공존의 숲	○		
6-1	영등포구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부조	From wind/바람으로 부터	○		
6-2		조각	가족	○		
6-3		조각	바람이 머문 자리	○		
7	은평구 은평엘크루 주상복합	조각	내일을 비추다		○	독창성결여(유사작품, 기법이 많음)
8-1	강서구 마곡지구B4-1	조각	생성-노송	○		
8-2		조각	0121-1110=114081	○		
9	성동구 e편한세상-옥수	조각	선인장 가족		○	조형성 부족, 환경과의 부조화

2016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6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0-1	종로구 돈의문1구역	조각	Skin of Time-生	○		
10-2		조각	RENEW-새로운 시작	○		
11	서대문구 6편한세상-신촌	조각	나무의 시	○		
12-1	중구 서울상공회의소	조각	Gemstone Seeds	○		
12-2		사진	Textus 215 NY Public Library2	○		
12-3		회화	무제	○		
12-4		사진	pian 2011-021	○		
12-5		회화	Speechless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581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 조합으로 지정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16. 8. 4. ~ 2016. 8. 17.(14일간)
2. 휴면조합

조합명	이사장	설립인가일	소재지	휴면지정 사유
한국전시컨벤션 사업협동조합	공석	'07.1.23.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16가길 32, 대원빌딩 4층 (창동)	- '14.3.31. 이후 이사장 공석 - '13~'16 총회 미개최 등 조합 운영 정지
서울동북부재활용단지 사업협동조합	공석	'10.6.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17(도봉동)	- '16.2.28. 이후 이사장 공석 - '14~'16 총회 미개최 등 조합 운영 정지
한국출산유아 사업협동조합	공석	'08.2.18.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 3층 (방배동)	- '16.2.24. 이후 이사장 공석 - '14~'16 총회 미개최 등 조합운영 정지
서울남동부인터넷콘텐츠 서비스사업협동조합	공석	'14.1.28.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66, B1 (잠실동)	- '15.1.25. 이후 이사장 공석 - '14년 창립총회 이후 '15~'16 총회 미개최, 조합 설립 이후 활동 전무

3. 공고내용

-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 나. 휴면조합이 활동을 재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접수 후 휴면조합이 활동을 재개하였거나 재개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면조합 지정을 해제합니다.
 - 라. 휴면조합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02-2133-5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582호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현황

업체명	수리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업체 연락처	등록일
이에이조경 기술사사무소	조경업 (03-01-0027)	1966.01.05(남)	주용규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20길 11, 3층 1호	02-400-2146	16.07.13
새암조경 주식회사	조경업 (03-01-0028)	110111-2276164	류제진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 109, 201호(신림동)	02-862-9174	16.07.1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0) 또는 역사문화재과(☎ 02-2133-2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59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1. 업체명 : 대운환경(주)
2. 대표자 : 김 우 진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문정동, 가든파이프웍스 A동 1013호)
(☎ 02-512-3282))
4. 업종 :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수질[제38호]
6. 지정일자 : 2016. 7. 2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59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 : 신우
2. 대표자 : 김 중 관
3.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96(둔촌동, 원천빌딩 302-1호)
(☎ 02-475-2298)
4. 업종 :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수질[제39호]
6. 지정일자 : 2016. 7. 2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595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수륙무차평등제의찰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책	25.9×17.5	1483년	서울시 중랑구 묵동 (법장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현수제승법수 (賢首諸乘法數)	1책	25.7×17.5	1572년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독곡집 권상 (獨谷集 卷上)	1책	22.6×15.7	1456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포방터 4안길 (김보경)

○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 수록무차평등재의찰요

물과 땅에서 죽은 고혼(孤魂)들을 달래기 위해 평등하게 공양하며 재(수록무차평등재)를 올릴 때의 의식절차를 요약한 의례서. 성화 19년 계묘년(성종14, 1483) 3월 전라도 진안의 중대사(中臺寺)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약간의 훼손 및 결락된 장이 있는 하나, 『수록무차평등재의찰요』의 15세기의 간본은 아주 드물게 전하고,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시유형 제318호 『수록무차평등재의찰요』와 상호 보완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현수제승법수

당나라 승려 현수(賢首 643~712)가 편찬한 『현수제승법수』는 숫자가 포함된 불교 요어(要語)를 설명하는 일종의 간이 사전(辭典). 간기를 통해 중국에서 편찬되어 1572년 용천사에서 간행된 것을 알 수 있음. 이 책에는 기존에 지정된 건들인 봉서사본에는 없는 「장승법수초록」 이하가 부록되어 있으며, 여타의 다른 본들이 낙장이 있거나 개장된 것임에 반해,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건들이 모두 봉서사본(1500년)이고, 계통을 달리하는 용천사본은 자료가 증보되어 간행된 것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높으므로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독곡집 권상

독곡(獨谷) 성석린(成石璘)의 문집으로서 2권 2책 중, 1456년 목판으로 간행된 권상 권1의 1책. 서문은 완전히 누락되었고 권상의 첫 번째 장과 행장의 맨 뒷장도 훼손이 심하여 보존상태가 좋은편은 아니나, 중간에 누락된 장이 없고 글자 획의 결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인출시기가 비교적 이른 것으로 판단됨. 본 서는 평양에서 간행된 초간본으로, 현재 일본 봉좌문고에 완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국내에는 전존하는 본이 없음. 따라서 조선 초기 간행된 문집으로서 그 가치가 클 뿐 아니라, 저본(底本)의 서사자(書寫者)가 명기된 점과,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사료됨.

2.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① 전화 : (02) 2133-2632 ② 팩스 : (02) 768-8873
 - ③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중랑구청 문화체육과 (수륙무차평등재의활요, 현수제승법수)
 - ① 전화 : (02) 2094-1833
 - ② 우편 : (02043)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독곡집 권상)
 - ① 전화 : (02) 330-1121
 - ② 우편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별첨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이 책은 수륙무차평등재(수륙재), 곧 물과 땅에서 죽은 고혼(孤魂)들을 달래기 위해 평등하게 공양하며 재를 올릴 때의 의식절차를 요약한 의례서이다.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와 “수륙재의 소방문첩절요(水陸齋儀疏榜文牒節要)”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전개는 윗부분에 수인(手印)을 두어 간략히 설명하고, 해당되는 진언을 함께 수록하였다. 처음 설회인유편(設會因由篇) 제1부터 봉송육도편(奉送六道篇) 제37까지 모두 37편이 수록되어 있다. 말미에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一卷」이라는 동일한 제명 아래 “수륙재의소방문첩절요”가 있다. 여기에는 문방(門榜), 단방(檀榜), 욕실방(浴室榜), 간경방(看經榜), 소청사자소(召請使者疏), 개통오로소(開通五路疏), 소청상위소(召請上位疏), 소청중위소(召請中位疏), 소청하위소(召請下位疏), 원만회향소(圓滿廻向疏), 행첩(行牒), 제소수행봉피양(諸疏首行封皮樣) 등이 있는데 의식을 행할 때의 절차를 소개한 것이다. 마지막에는 “여러 경전을 판각하는 공덕으로 전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함께 정토로 돌아가서 아미타불을 뵈고 진실한 가르침을 들어 중생을 동화시키기를 바란다.”는 글이 있다. 조선초기에는 왕실에서 수륙재를 개최한 기록이 제법 전한다. 현전하는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 것으로는 1470년(성종1)에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가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것이며, 보물 제110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책은 이보다 13년 뒤인 성화 19년 계묘년(성종14, 1483) 3월에 전라도 진안의 성수산(聖壽山)에 있던 중대사(中臺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당시 연화집은 성경(性罔), 대화주는 승열(昇悅), 간선(幹善)은 대선사 성초(性招), 각수는 의경(義敬), 연판은 성민(性敏), 공양주는 수정(水澄)이 맡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일한 판본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이 서울시유형문화재 제318호로 지정(2011.9.8.)되어 있다.

표지는 오래전에 개장된 것으로 보이고, 후인본이나 인쇄상태나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다. 설회인유편 제1장은 후대에 보사(補寫)되어 있고, 제2장 가운데 아래 부분은 약간의 손상이 있다. 또 제20장의 후면, 제21 전후면, 제22장 전면 등이 결락되어 있다.

약간의 훼손 및 결락된 장이 있는 하나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의 간본 중에서 15세기의 간본은 아주 드물게 전하고,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과 상호 보완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자료



■ 현수제승법수

『현수제승법수』는 숫자가 포함된 불교 요어(要語)를 설명하는 일종의 간이 사전(辭典)이다. 현수(賢首 643~712)는 당나라 승려로, 이 책을 처음으로 편찬했다고 전해진다. 제승(諸乘)이란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교리, 다시 말해 모든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법수(法數)란 불교의 진리를 뜻하는 법과 숫자가 합쳐진 요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삼계(三界), 사체(四諦), 오온(五蘊), 십이인연(十二因緣), 칠십오법(七十五法)과 같은 어휘이다. 이 요어를 따라서 불법을 탐구하면 종지(宗旨)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목의 뜻은 현수가 편찬한 모든 경전의 숫자가 들어간 불교의 진리를 말하는 중요한 단어들의 해설집이라는 말이다. 즉 이런 어휘를 모두 수집하여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배열하고 그 아래에 간단한 설명이나 도식을 붙인 것이다.

이 책의 편찬 간행 경위를 알 수 있는 서발문은 다음과 같다.

이름/내역	찬자	작성 시기	비고
서문	누락됨	1427년 (선덕 정미)	편찬 및 간행 경위 언급(중국)
중편서문	天台 梵翹	1387년 (홍무 정묘)	편찬 사실(중국)
발	戒嚴		간행사실 (조선)
간기		1572년 (융경 6년 임신)	용천사 간기

- 서문(1427년)과 중편서문을 통해서 본 중국에서의 편찬 및 간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 본초화상(本初和尚)은 현수가 편찬한 『제승법수』가 실전(失傳)된 것을 개탄하던 중 1384년 (홍무 갑자 춘) 봄에 잠계(潛溪) 심(深)법사에게 부탁하여 새롭게 『제승법수』를 편찬하게 하였다.
 - 잠계 심법사는 이름은 행심(行深) 자는 백연(伯淵), 잠계는 그의 별호이다. 중편서에 의하면 고소(姑蘇) 강소성(江少成) 오현(吳顯) 송릉(松陵)의 잠계에 거주 하였으며, 보각(寶覺) 란(蘭)공에게 화엄의 종지를 배웠고, 서림(西林)의 행(行)공에게 가서 더욱 깨우침을 얻었다고 하였다.
 - 행심(行深)은 1384년부터 1387년까지 이 책을 편찬하여 『현수법수(賢首法數)』라고 명칭하였는데, 이 책을 처음 편찬한 현수의 뜻을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따라서 범고의 서문도 거듭 편찬했다는 의미로 “중편(重編)”이라고 하였다. 권1의 앞에는 “고소동정사문행심편집(姑蘇洞庭沙門行深編集)”이라고 되어 있다.
 - 서문에 의하면 이 책은 편찬이 완료된 후 40년이 지난 1427년 9월 난야(蘭若)에 머물고 있을 때 간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 이 책에는 계엄(戒嚴)이 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간기가 붙어 있는데 그를 통해본 간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계엄은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중간하였다. 그런데 다만 중간한 것이 아니라, 「장승법수초록(藏乘法數抄錄)」 이하를 부록으로 붙이는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하였다.
 - 따라서 이 용천사본은 중국에서 간행된 『현수제승법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증보한 본이다.
 - 계엄의 발문에는 증보한 이유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장승(藏乘) 즉 대장경에 수록된 법수 중에 『현수제승법수』에 빠진 것이 있으므로 『장승법수(藏乘法數)』를 초록하여 붙였고, 「불사의화상귀적결」은 오랫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세상에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후세의 귀감이 될 만하여 붙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결자(闕字) 부분을 새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권에서 시작되는 항목과 끝나는 항목을 표기한 것이다.

목차/내용	自	至	비고
賢首諸乘法數序			
重編賢首法數序			
起教佛祖			
권1	一眞	三身本經說	권2표시 누락
권3	華嚴三聖	智論三種相	
권4	佛德四	四種偈	
권5	五乘	小乘五位	
권6	薄伽梵六義	六塵賊	
권7	華嚴經題七字	七難	

목차/내용	自	至	비고
권8	八解脫	八貪	
권9	華嚴九會說	天子九寺	
권10	十法界	十化	
권11	十一智	八萬四千法門	
沙門本勝讚法數銘			
八識心王諸門料簡	三性	五法攝三身	
	見惑八十八使	修惑八十一品	여타 본과 다름
藏乘法數抄錄	三身	眞如十一名	봉서사본에 없음
不思議和尚歸寂訣			이하 동일함.
歲旦五更看候法			
取後神光法七說中具子紐			
戒嚴 跋文			
刊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용천사에서 간행된 이 책은 「장승법수초록」 이하가 부록되어 있다. 이는 봉서사본 등에는 없다. 특히 「팔식심왕제문요간(八識心王諸門料簡)」의 맨 마지막 판의 내용이 전혀 다른데, 봉서사본을 비롯하여 확인한 모든 본에서는 이 판에 육도십팔임지상섭(六度十八任持相攝), 삼전사체십이행법륜(三轉四諦十二行法輪), 오온섭백법(五蘊攝百法)의 모두 세 항목이 수록된 반면에 이 책에는 견혹팔십팔사(見惑八十八使), 수혹팔십일품(修惑八十一品)의 두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의 판차가 56인데, 동일한 용천사 간행본에서도 이 부분만 다른 점은 매우 특이하다.

목록상에 나타난 조선에서 간행된 주요한 『현수제승법수』는 다음과 같다. (수록내용은 확인되는 것만 수록함)

구분 /내역	간행지	간행시기	수록내용	소장처
鳳栖寺本	합천 가야산 봉서사	燈谷 발문 1500(연산군6)	八識心王諸門料簡까지 수록	하바드엔칭, 국중(BA古朝21-298-2)
大山中庵本	황해도 수안 대산 중암	燈谷 발문 1566(명종21)	八識心王諸門料簡까지 수록	송광사 성보박물관
龍泉寺本	전라도 담양 용천사	戒嚴 발문 1572(선조5)	56판 다름	국중(BA1703-15)

구분 /내역	간행지	간행시기	수록내용	소장처
法住寺本	충청도 보은 법주사	1586(선조19)		계명대
開興寺本	전남 보성 개흥사	戒嚴 발문 1647(인조25)	용천사본과 동일	국중(BC古朝21-258)
肝月寺本	경상도 연양 간월사	1673(현종14)		U.C.버클리

위 표를 통해 보면 『현수제승법수』는 봉서사본을 포함하여 모두 6종 이상 이본(異本)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이본의 계통을 보면 가장 먼저 간행된 것은 1500년에 등곡(燈谷)이 간행한 봉서사본이다. 이 본은 명에서 간행된 본을 가감없이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본과는 전혀 계통을 달리하여 간행된 것이 바로 계엄(戒嚴)이 증보 간행한 용천사 본이다. 나머지 본들은 모두 이 두 가지를 조본(祖本)으로 하여 간행한 것들이다.

즉 대산중암본은 봉서사본을 조본으로 한 것이며, 개홍사본은 용천사본을 조본으로 한 것이다. 추측컨대 나머지 본도 거의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은 비교적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 여타의 다른 본들은 앞 뒤나 혹은 중간에 낙장이 있거나(하바드 엔칭소사어이티 본) 개장된 것(국중 소장본)인데 반하여 이 책은 개장의 흔적이 없고, 낙장도 없으며, 서책의 상태로 비교적 좋은 편이다.

『현수제승법수』의 지정현황을 보면 경기도 시도유형문화재 제169호 및 제219호,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재 제343호,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8호로 모두 네 건이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1500년 봉서사에서 간행된 본이다. 따라서 이 봉서사본과 계통을 달리하는 용천사본은 여러 가지 자료가 증보되어 1572년에 간행된 것으로서 그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사진자료



■ 독곡집 권상

이 책은 독곡(獨谷) 성석린(成石璘)의 문집으로서, 2권 2책 중 권1 1책이다. 성석린(1338:충숙왕 복위7~1423:세종5)의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자수(自修), 호는 독곡(獨谷)이다.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서 1357년(공민왕 6) 과거에 급제한 이후, 사관(史官)을 비롯하여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정당문학(政堂文學), 지공거(知貢舉) 등 문한을 역임하였다. 조선의 역성혁명에 참여하여 단성보절찬화공신(端誠保節贊化功臣)의 녹권(錄券)이 내려지고 창성군(昌成郡) 충의군(忠義君)에 봉해졌다. 태조가 즉위하자 문하시랑찬성사가 되었고, 1393년(태조2) 개성부관사, 1398년 문하시랑찬성사·관호조사 등을 역임하였다. 정종이 즉위하자 서북면도순찰사·도절제사 문하시랑찬성사가 되었으며, 익대공신(翼戴功臣)의 녹권이 내려지고, 좌정승이 되었다. 태종이 즉위한 후 좌명공신(佐命功臣)이 되고 1402년(태종 2) 영의정부사를 거쳐, 이듬해 우의정, 그리고 1407년에 좌의정을 지냈고, 1415년 영의정이 되었다.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시풍은 이백을 주로 했고, 글씨를 잘 써서 태조의 건원릉 비문을 썼으며, 특히 초서에 능했다고 한다.

『독곡집』은 모두 2권으로 산문(散文)은 없고 오직 운문(韻文)만 수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에 비슷하게 활동한 권근의 『양촌집』처럼 운문과 산문을 모두 수록하고 그 양도 40권의 방대한 분량인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한수(韓脩)의 『유항시집(柳巷詩集)』(불분권 1책, 1400년 간행), 정몽주(鄭夢周)의 『포은시고(圃隱詩藁)』(2권 1책, 1439년), 김구용(金九容)의 『척약재학음집(惕若齋學吟集)』(2권 1책, 1400년 간행)에서 알 수 있듯이 운문만을 편집하여 1책 정도의 문집으로 간행하는 것이 조선 초기 문집 간행에 있어 더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곡집』의 간행 일지는 다음과 같다.

연도	내용	비고
1442년 (세종24)	왕명으로 경연에서 정리 편집	편찬자 진술
1456년 (세조2)	평안감사 孫堉 金連枝가 평양에서 간행 初刊本	일본 봉좌문고
1460년 (세조4)	김연지가 경상감사로 나가 진주에서 간행 重刊本	고대 만송문고
1919년	昌寧 鶴浦에서 부록을 넣어 活字로 간행 三刊本	

발문에 의하면 상권의 선사자(繕寫者)는 조근(趙瑾 1417~1475)으로, 조말생(趙末生)의 아들이다. 조근은 예조와 형조의 참의를 지냈고, 해서(楷書)에 능하여 외교 문서 등을 많이 선사하였다고 한다. 하권의 선사자는 당시 평양판관이었던 송수중(宋守中)이다.

초간본을 평양에서 간행한 후에 14년 만에 중간본을 진주에서 다시 간행한 것은 아마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두 본을 비교하면 복각본으로 보이는데, 다만 초간본은“사주쌍변”인데 비하여 중간본은“사주단변”이다.

본서는 평양에서 간행된 초간본으로 전체 2권 2책 중 권상 1책이다. 중간본을 기준으로 그 내용의 분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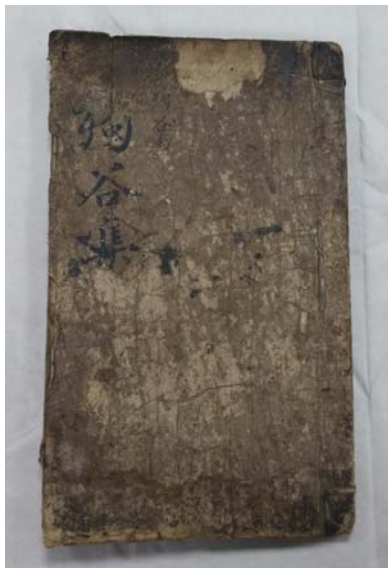
구분/내역	권수	권상	권하	권미	비고
내용	서문/ 행장	시	시	발문/ 간기	
장수	3 / 9	56	55	2 / 1	126장
本書	/ 9	56		(행장)	65장

전체 126장 중 현재 남은 것은 권수의 행장 9장과 권상 시 56장 도합 65장으로, 전체의 반 정도가 남아있다. 서문은 완전히 누락되었고, 권상의 첫 번째 장도 8할 정도가 훼손되었으며 행장의 맨 뒷장도 훼손이 심하다.

행장은 중간본에서 권수에 수록되어 있는 반면에, 본서에는 권미에 수록되어 있다. 당시 편집 관행상 행장과 같은 문집 저자의 전기 자료는 권수에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권상과 권하 사이에 행장을 편집하는 것은 사리로 보아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서는 한번 이상 개장된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아래 사진에서 보이듯 보존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중간에 누락된 장이 없고, 글자 획의 결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인출시기도 비교적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봉좌문고에 완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국내에는 전존하는 본이 없다.(봉좌문고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복사본이 있음) 따라서 본서는 조선 초기에 간행된 문집으로서 그 가치를 뿐 만 아니라, 저본(底本)의 서사자(書寫者)가 명기된 점과,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사진자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596호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제10조 제2항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계획

○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책	36.7×24.3	1593년 (선조 26)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운가사)

○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물과 땅에서 죽은 고혼(孤魂)들을 달래기 위한 수륙재(水陸齋)의 의식절차를 요약한 의례서로, 보통 『중례문(中禮文)』이라 함. 1593년(선조 26)에 전라도 담양(潭陽)의 용천사(龍泉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총 54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인출 시기는 17세기로 보임. 근자에 원래의 표지 위에 다시 새로운 표지를 덧대어 개장해 놓았고, 표지부터 제8장까지는 가운데 아랫부분이 손상되어 있음. 이 용천사 간행 판본은 전 국토가 일본과의 전란중인 1593년 3월 상순에 완성된 판본으로, 비록 보존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나 임진왜란 중에 간행된 판본이라는 점과 용천사 판본으로는 처음 공개된다는 점에서 문화재자료로 지정 함.

2.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① 전화 : (02) 2133-2632 ② 팩스 : (02) 768-8873

③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강북구청 문화체육과

① 전화 : (02) 901-6219 ② 팩스 : (02) 901-6210

③ 우편 : (01071)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별첨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는 물과 땅에서 죽은 고혼(孤魂)들을 달래기 위한 수륙재(水陸齋)의 의식절차를 요약한 의례서이다. 보통 『중례문(中禮文)』이라고 한다. 수륙재는 양(梁)나라 무제(武帝) 때인 6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송나라 희녕연간(熙寧年間)에 동천(東川)이 『수륙문(水陸文)』 3권을 지어 보급함으로써 크게 성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970년(고려 광종 21)에 갈양사(葛陽寺)에서 개설된 이후 조선시대에도 진관사(津寬寺)를 중심으로 계속되었다.

이 책은 1593년(선조 26)에 전라도 담양(潭陽)의 용천사(龍泉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모두 54편이 수록되어 있다. 제1편인 설회인유편(設會因由篇)부터 엄정팔방편(嚴淨八方篇), 주향통서편(呪香通序篇), 주향공양편(呪香供養篇), 소청사[자편](召請使[者篇]), 안위공양편 제6(安位供養篇 第六), 봉[송사자편](奉[送使者篇]), 개벽오방편(開闢五方篇), 안위공양편 제9, 소청상위편(召請上位篇), 봉영부욕편 제11(奉迎赴浴篇 第十一), 찬탄관욕편(讚歎灌浴篇), 인성귀위편(引聖歸位篇), 헌좌안위편 제14(獻座安危篇 第十四), 찬례삼보편(讚禮三寶篇), 소청중위편(召請中位篇), 봉영부욕 제17, 가지조욕편 제18(加持澡浴篇 第十八), 출욕참성편 제19(出浴參聖篇 第十九), 천선에성편(天仙禮聖篇), 헌좌안위편 제21, 소청하위편(召請下位篇), 인예향욕편(引詣香浴篇), 가지조욕편 제24, 가지화의편(加持化衣篇), 수의복식편(授衣服飾篇), 출욕참성편 제27, 고혼예성편(孤魂禮聖篇), 수위안좌편(受位安座篇), 기성가지편(祈聖加持篇), 보신배헌편(普伸拜獻篇), 공성회향편(供聖廻向篇), 선밀가지편(宣蜜加持篇), 가지멸죄편(加持滅罪篇), 주식현절편(呪食現切篇), 고혼수향편(孤魂受饗篇), 설시인연편(說示因緣篇), 원성수은편(願聖垂恩篇), 청성수계편(請聖受戒篇), 참제업장편(懺除業障篇), 발홍서원편(發弘誓願篇), 사사귀정편(捨邪皈正篇), 석상호지편(釋相護持篇), 득계소요편(得戒逍遙篇), 득성십도편(修成十度篇), 의십획과편(依十獲果篇), 관행계찬편(觀行偈讚篇), 회향계찬편(廻向偈讚篇), 화재수용편(化財受用篇), 경신봉송편(敬伸奉送篇), 보신회향편(普伸廻向篇)까지 모두 54편의 의식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본문이 끝난 다음의 “萬曆二十一年癸巳(1593)三月上旬畢全羅道潭陽地秋[月]山龍泉寺開○”과 같이 이 책은 1593년 3월에 전라도 담양의 용천사에서 간행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용천사는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한 불서 중에서 현전하는 것만도 근 20종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불서의 간행이 활발했던 사찰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출 시기는 17세기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중에서 1529년 충청도 홍산의 무량사 판본과 용천사 판본은 행자수가 8행14자 형식인데 비해 나머지는 모두 7행17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용천사 판본은 인근의 무량사 판본의 계통본으로 볼 수 있다.

앞표지 내면에는 “人生如幻又如夢, 樂日終時苦日長, 若也心頭無正慧, 死將何物答冥王”(『청허집』 권3의 「계쌍인소사(誡雙印小師)」, 쌍인 소사에게 훈계함), 뒤표지 내면에도 칠언시가 묵서되어 있다. 이전의 소장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표지는 근자에 원래의 표지 위에 다시 새로운 표지를 덧대어 개장해 놓았다. 전의 앞뒤 표지에는 『중례문(中禮文)』이라는 서명이 묵서되어 있고, 이 표지부터 제8장까지는 가운데 아랫부분의 손상이 제법 큰데 복장되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판심제는 『中』, 본문이

끝난 뒤에는 간행기록이 있는 장이 있는데 다행이 1-2행이 남아 있어서 이 판본의 간행사실을 알 수 있다.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중에서 이 판본 이전에 간행된 판본으로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258호로 지정된 15세기 합천 해인사 판본(1469년 김수온 발문)부터 1580년에 간행된 용인의 서봉사 판본까지 15종 이상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용천사 간행의 판본은 전 국토가 일본과의 전란중인 1593년 3월 상순에 완성된 판본이다. 비록 보존상태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임진왜란 중에 간행된 판본이라는 점과 용천사 판본으로는 처음 공개된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자료로 추천할 만하다고 하겠다.

사진자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598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점용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허가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1. 점용허가 신청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신청자 : (주)에스비이앤이 대표 이민희

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B-705

2. 점용장소 : 강서구 마곡동 91번지 서남물재생센터 2처리장 1계열 최종침전지 부근

3. 점용면적 : 13.85㎡
 4. 점용목적 : 티탄염 응집제를 이용한 인제거 응집실험 및 슬러지 회수 연구 수행
 5. 점용기간 : 2016.08.01. ~ 2017.07.31.
 6. 복구방법 : 점용시설물 자진철거 후 관련자재 반출
 7. 복구완료시기 : 점용허가기간 종료일전까지 복구완료
-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물재생시설과(☎02-2133-38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599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1. 사업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6~2020(착공후 60개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여의도 ~ 대방역 ~ 신림역 ~ 서울대입구앞	- 연 장 : 7.8km - 시설물 : 정거장11개소 차량기지1개소	남서울 경전철(주)/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51 6층 (신대방동 롯데타워)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02-772-7149)
- 남서울 경전철(주)(☎ 070-7464-6570)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서 : 물건조서 및 용지도(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02-772-7149)나 남서울 경전철(주)(☎ 070-7464-6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토지 집계표 (전체) ****

구 분	필지/면적	제방	전	답	대 지	학교	공원	하 천	도 로	구 거	잡 종 지	임야	주유소	철도	종교	미등록
서 울 시	4	1					1		2							
	127.3	16.7					73.4		37.2							
	8				4				4							
	410.6				167.8				242.8							
합 계	12	1			4		1		6							
	537.9	16.7			167.8		73.4		280.0							

**** 수용토지 집계표 (사유지) ****

구 분	필지/면적	제방	전	답	대 지	학교	공원	하 천	도 로	구 거	잡 종 지	임야	주유소	철도	종교	미등록
서 울 시																
합 계																

**** 수용토지 집계표 (국유지) ****

구 분	필지/면적	제방	전	답	대 지	학교	공원	하 천	도 로	구 거	잡 종 지	임야	주유소	철도	종교	미등락
서 울 시	영 의 내 배															
	신 건 배				1				1							
	영 의 내 배				27.1				192.4							
합 계	2															
	219.5															
	2				1				1							
	219.5				27.1				192.4							

**** 수용토지 집계표 (공유지) ****

구 분	필지/면적	제방	전	답	대 지	학교	공원	하 천	도 로	구 거	잡 종 지	임야	주유소	철도	종교	미등락
서 울 시	영 의 내 배															
	신 건 배				3				3							
	영 의 내 배				140.7				50.4							
합 계	4	1					1		2							
	127.3	16.7					73.4		37.2							
	6															
	191.1															
	10	1			3		1		5							
	318.4	16.7			140.7		73.4		87.6							

수 용 토 지 조 서

0 사 업 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 투자사업
0 소 재 지 : 서울시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		소유권이양권리 점유권 내 용	비고
				공	부	면	적	성	명	주	성	명	주	소
1	영등포구 여의도동	56	공원	16,458.0		73.4		영등포구						
2	영등포구 여의도동	5	도로	36,241.0		14.5		서울특별시						
3	영등포구 여의도동	5-6	도로	1,845.0		22.7		서울특별시						
4	영등포구 여의도동	5-7	제방	11,387.0		16.7		서울특별시						
소 계				65,931.0		127.3								
합 계(여의도동)				65,931.0		127.3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성 명	유 주 소		이 성 명	해 관 계		소유권이외권리 점유 및 내 용	비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주 소		
15	영등포구 신길동	4203	도로	2,966.0	192.4	국(국토교통부)							
16	영등포구 신길동	1372	도로	862.0	18.2	서울특별시							
17	영등포구 신길동	1164- 1	대지	934.0	15.4	서울특별시							
18	영등포구 신길동	1164	대지	14,117.4	27.1	국(국방부)							
19	영등포구 신길동	869-1	도로	395.0	29.5	영등포구							
20	영등포구 신길동	869-2	대지	598.5	20.0	영등포구							
21	영등포구 신길동	869	대지	617.4	105.3	영등포구							
22	영등포구 신길동	1192	도로	4,564.9	2.7	서울특별시							
	소 계			25,055.2	410.6								
	합 계(신길동)			25,055.2	410.6								
	총 계			90,986.2	537.9								

**** 지하사용토지 집계표 (전체) ****

구 분	필지/면적	제 방	전	답	대 지	학 교	공 원	하 천	도 로	구 거	잡 종 지	임 야	주 유 소	철 도	종 교	미 지 반
서 울 시	8	1					1	2	3							1
	4,323.7	609.3					1,292.6	999.0	908.8							514.0
	31				7				23							1
	18,828.5				322.3				18,414.2							92.0
합 계	39	1			7		1	2	26							2
	23,152.2	609.3			322.3		1,292.6	999.0	19,323.0							606.0

**** 지하사용토지 집계표 (사유지) ****

구 분	필지/면적	제 방	전	답	대 지	학 교	공 원	하 천	도 로	구 거	잡 종 지	임 야	주 유 소	철 도	종 교	미 등 록
서 울 시																
합 계																

**** 지하사용토지 집계표 (국유지) ****

구	분	필지/면적	제 방	전	답	대 지	학 교	공 원	하 천	도 로	구 거	잡 종 지	임	야	주유소	철	도	중	교	미등락
서	예	3							2											1
		1,513.0							999.0											514.0
		6				3				3										
		1,265.6				107.0				1,158.6										
합	계	9				3			2	3										1
		2,778.6				107.0			999.0	1,158.6										514.0

**** 지하사용토지 집계표 (공유지) ****

구	분	필지/면적	제 방	전	답	대 지	학 교	공 원	하 천	도 로	구 거	잡 종 지	임	야	주유소	철	도	중	교	미등락
서	예	5	1					1		3										
		2,810.7	609.3					1,292.6		908.8										
		25				4				20										1
		17,562.9				215.3				17,255.6										92.0
합	계	30	1			4		1		23										1
		20,373.6	609.3			215.3		1,292.6		18,164.4										92.0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 투자사업

○ 소 재 지 : 서울시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 도시철도 존속시까지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소유권이외권리 종류 및 내 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m 까지	비고
				공	부	성 명	주 소	성 명				
1	영등포구 여의도동	5	도로	36,241	218.5	서울특별시				26.95m	-7.55m~-26.12m 사이 18.57m	
2	영등포구 여의도동	56	공원	16,458	1,292.6	영등포구				27.18m	-7.58m~-26.28m 사이 18.7m	
3	영등포구 여의도동	5-6	도로	1,845.0	239.3	서울특별시				6.86m	-7.65m~-26.19m 사이 18.54m	
4	영등포구 여의도동	3-9	도로	20,512	451.0	서울특별시				29.46m	-7.65m~-26.19m 사이 18.54m	
5	영등포구 여의도동	5-7	제방	11,387	609.3	서울특별시				25.44m	-7.59m~-26.19m 사이 18.6m	
6	영등포구 여의도동	57	하천	30,033	624.0	국(국토교통부)				20.44m	-7.47m~-26.13m 사이 18.66m	
7	영등포구 여의도동	58	하천	18,261	375.0	국(국토교통부)				17.46m	-7.39m~-26.01m 사이 18.62m	
8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지번			514.0					18.26m	-6.51m~-25.93m 사이 19.42m	
합	계(여의도동)			134,737	4,324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소유권이외권리 종류 및 내 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m 까지	비고
				공	부	성 명	주	성 명			성 명	주				
72	영등포구 신길동	4200	도로	93.0	90.0	국(국토교통부)								6.22m	6.7m~16.45m 사이 23.17m	
73	영등포구 신길동	1372	도로	862.0	3.8	서울특별시								0m	7.07m	지상 물줄기
74	영등포구 신길동	4203	도로	2,966.0	1,049.6	국(국토교통부)								17.71m	1.61m~16.93m 사이 18.54m	
75	영등포구 신길동	4205	도로	271.0	19.0	국(국토교통부)								17.79m	1.65m~16.93m 사이 18.58m	
76	영등포구 신길동	1179	도로	2,452.2	846.0	서울특별시								18.05m	3.18m~16.68m 사이 19.86m	
77	영등포구 신길동	4875	도로	3,749.0	1,890.0	서울특별시								18.59m	6.22m~15.36m 사이 21.58m	
78	영등포구 신길동	4876	도로	1,498.0	1,107.0	서울특별시								18.04m	11.57m~12.36m 사이 23.93m	
79	영등포구 신길동	4877	도로	3,729.0	761.0	서울특별시								17.36m	10.2m~106m사 이 116.2m	
80	영등포구 신길동	1164	대지	14,117.4	2.0	국(국방부)								4.38m	19.79m~1.4m사이 18.39m	
81	영등포구 신길동	1164 -1	대지	934.0	43.6	서울특별시								9.33m	19.79m~3.13m 사이 22.92m	
82	영등포구 신길동	4878	도로	2,372.0	1,932.0	서울특별시								12.22m	23.4m~106m 사이 129.4m	
83	영등포구 신길동	4879	도로	2,392.0	2,066.0	서울특별시								11.82m	23.4m~3.56m 사이 19.84m	
84	영등포구 신길동	869- 1	도로	395.0	365.5	영등포구								6.11m	25.05m~6.69m 사이 18.36m	
85	영등포구 신길동	869- 2	대지	598.5	135.8	영등포구								6.11m	25.05m~6.69m 사이 18.37m	
86	영등포구 신길동	869	대지	617.4	35.8	영등포구								6.39m	25.05m~6.69m 사이 18.37m	
87	영등포구 신길동	1192	도로	4,564.9	113.3	서울특별시								5.49m	25.05m~6.69m 사이 18.37m	
88	영등포구 신길동	855- 1	도로	661.5	52.0	서울특별시								7.75m	25.05m~9.84m 사이 15.21m	
소 계				46,862.9	13,404.4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소유권이외권리 종류 및 내 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m 까지	비고
				공	부	성	명	주	소		성	명				
89	영등포구 신길동	4880	도로	3,451.0	1,934.0	서울특별시								13.18m	22.1m~5m 사이 27.1m	
90	영등포구 신길동	4881	도로	1,139.0	958.0	서울특별시								16.10m	13.54m~9.61m 사이 23.15m	
91	영등포구 신길동	4882	도로	1,283.0	1,015.0	서울특별시								9.96m	5.21m~106m사 이 111.21m	
92	영등포구 신길동	4883	도로	2,647.0	2,042.0	서울특별시								9.96m	5.21m~13.33m 사이 18.54m	
93	영등포구 신길동	623-1	대지	1,111.0	80.0	국	채무자:송혜경 상도4동 새마을금고						근저당설정	13.5m	12.78m~10.16m 사이 22.94m	
94	영등포구 신길동	1190	도로	12,961.8	25.0	서울특별시								6.58m	12.78m~10.16m 사이 22.94m	
95	영등포구 신길동	505-1	대지	116.6	25.0	국 (기획재정부)								6.58m	12.78m~10.16m 사이 22.95m	
96	영등포구 신길동	506-1	대지	13.9	0.1	서울특별시								6.57m	12.78m~10.16m 사이 22.96m	
97	영등포구 신길동	4884	도로	5,541.0	385.0	서울특별시								19.09m	6.79m~11.75m 사이 18.54m	
98	영등포구 신길동	미지번			92.0									18.71m	7.61m~11.75m 사이 19.36m	
99	영등포구 신길동	4209	도로	3,832.0	1,470.0	서울특별시								14.52m	13.76m~10.93m 사이 24.69m	
100	영등포구 신길동	4272	도로	218.0	96.0	서울특별시								10.28m	14.61m~3.69m 사이 18.3m	
101	영등포구 신길동	4270	도로	50.0	50.0	서울특별시								10.66m	14.03m~3.84m 사이 17.87m	
102	영등포구 신길동	4302	도로	8,588.0	144.0	서울특별시								9.45m	15.35m~3m사이 18.35m	
소 계				36,362.3	5,424.1											
합 계(신길동)				83,225.2	18,828.5											
총 계				217,962.2	23,152.2											

**** 일시사용토지 집계표 (전체) ****

구	분	필지/면적	제방	전	답	대 지	학교	공원	하 천	도 로	구 거	잡 종 지	임야	주유소	철도	종교	미등록
서	영 이 너 배	6	1					1	1	3							
		813.0	117.0					530.0	2.0	164.0							
		22				7				15							
		1,111.0				250.0				861.0							
	합 계	28	1			7		1	1	18							
영 이 너 배 구		1,924.0	117.0			250.0		530.0	2.0	1,025.0							

**** 일시사용토지 집계표 (사유지) ****

구	분	필지/면적	제방	전	답	대 지	학교	공원	하 천	도 로	구 거	잡 종 지	임야	주유소	철도	종교	미등록
서	영 이 너 배																
	합 계																

**** 일시사용토지 집계표 (국유지) ****

구	분	필지/면적	제방	전	답	대 지	학교	공원	하 천	도 로	구 거	잡 종 지	임야	주유소	철도	종교	미이용
서	예	1							1								
		2.0							2.0								
		5				3				2							
		309.0				104.0				205.0							
합	계	6				3			1	2							
		311.0				104.0			2.0	205.0							

**** 일시사용토지 집계표 (공유지) ****

구	분	필지/면적	제방	전	답	대 지	학교	공원	하 천	도 로	구 거	잡 종 지	임야	주유소	철도	종교	미이용
서	예	5	1					1		3							
		811.0	117.0					530.0		164.0							
		17				4				13							
		802.0				146.0				656.0							
합	계	22	1			4		1		16							
		1,613.0	117.0			146.0		530.0		820.0							

일 시 사용 용도 조치 서

○ 사업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 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시

○ 사용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 해당구간 공사 완료시 까지

[illegible]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소유권이외권리 종류 및 내용	비 고
				공	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38	영등포구 신길동	4200	도로	93.0	3.0	국(국토교통부)					
39	영등포구 신길동	1372	도로	862.0	41.0	서울특별시					
40	영등포구 신길동	4203	도로	2,966.0	202.0	국(국토교통부)					
41	영등포구 신길동	4877	도로	3,729.0	11.0	서울특별시					
42	영등포구 신길동	1164	대지	14,117.4	32.0	국(국방부)					
43	영등포구 신길동	1164-1	대지	934.0	80.0	서울특별시					
44	영등포구 신길동	4878	도로	2,372.0	5.0	서울특별시					
45	영등포구 신길동	4879	도로	2,392.0	15.0	서울특별시					
46	영등포구 신길동	1192	도로	4,564.9	73.0	서울특별시					
47	영등포구 신길동	869-2	대지	598.5	29.0	영등포구					
48	영등포구 신길동	869	대지	617.4	34.0	영등포구					
49	영등포구 신길동	855-1	도로	661.5	40.0	서울특별시					
50	영등포구 신길동	623-1	대지	1,111.0	42.0	국 서울특별시		상도4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188-43	근저당설정	채무자:송해경
51	영등포구 신길동	1190	도로	12,961.8	12.0	서울특별시					
소 계				56,299.0	7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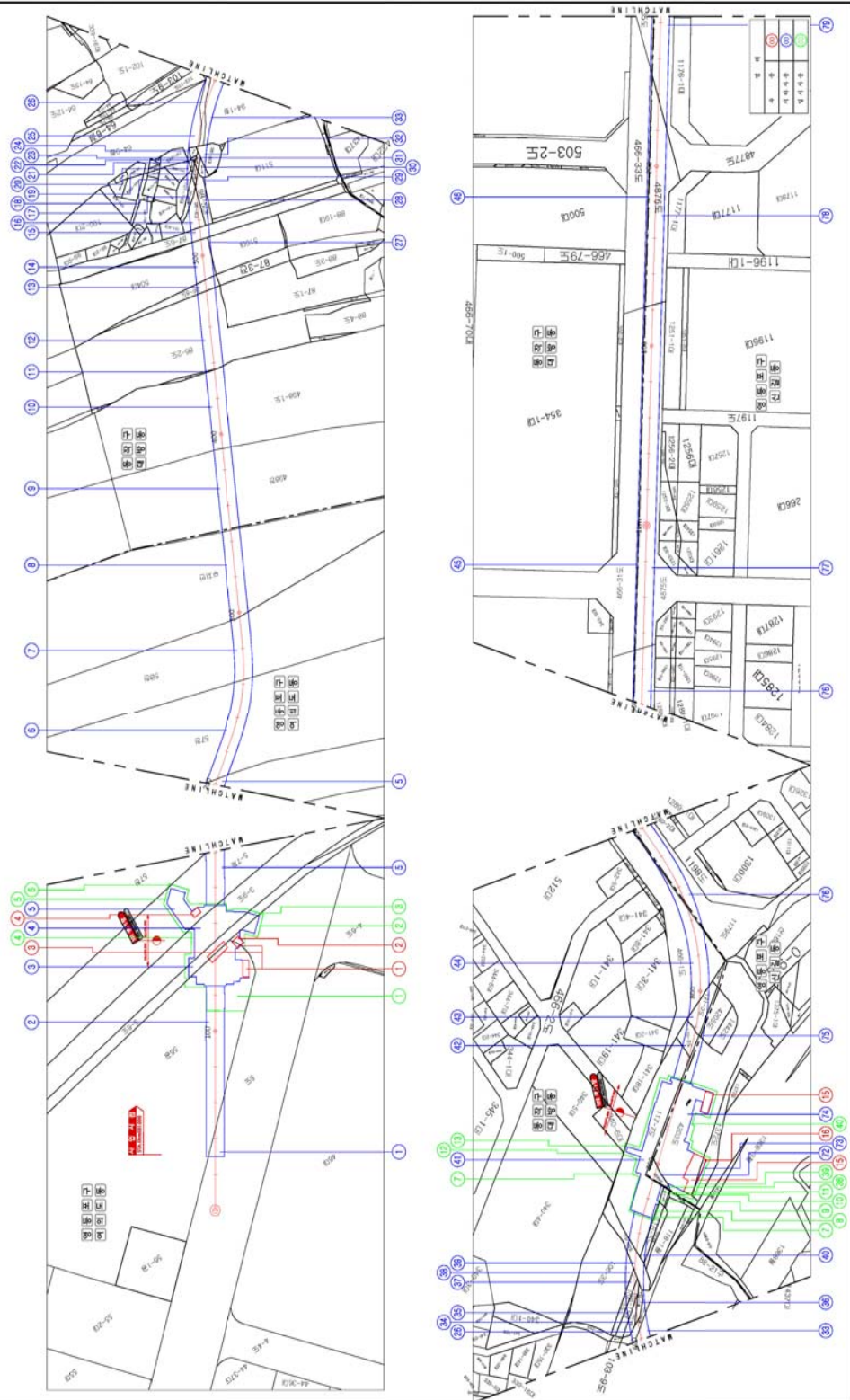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		소유권이외권리 종류및 내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2	영등포구 신길동	505-1	대지	116.6	30.0	국(기획재정부)					
53	영등포구 신길동	506-1	대지	13.9	3.0	서울특별시					
54	영등포구 신길동	4883	도로	2,647.0	43.0	서울특별시					
55	영등포구 신길동	4884	도로	5,541.0	65.0	서울특별시					
56	영등포구 신길동	4209	도로	3,832.0	237.0	서울특별시					
57	영등포구 신길동	4272	도로	218.0	51.0	서울특별시					
58	영등포구 신길동	4302	도로	8,588.0	42.0	서울특별시					
59	영등포구 신길동	4270	도로	50.0	21.0	서울특별시					
소계				12,688.0	351.0						
합계(신길동)				68,987.0	1,111.0						-
총계				185,463.0	1,924.0						

지 장 물 조 서

- 사업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외 권리 종류 및 내용	비 고
						성 명	주	소			
1	영등포구 신길동	869-2	창고	4.4*2.6*1.0 벽돌	10.8㎡	영등포구청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103점거장
			아외수영장	5.6*1.0*4.1 콘크리트	19.4㎡						
			담장1	15.9*1.4 벽돌	15.9m						
			담장2	1.3*0.7 벽돌	1.3m						
			대문	5.5*1.8 벽돌 및 철	1식						
			계단	7.3*1.2*1.3 철근콘크리트	1식						
			미끄럼틀	4.6*2.9*1.0 플라스틱	1식						
			놀이시설	5.1*0.6*1.0 플라스틱	1식						
			감나무	H:6.0m * B:15.0	1주						

신로편 입용지도 [1]



산로 평면영지도 [2]



선로편입용지도 [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620호

『2016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현액후보자 추천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들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해 『2016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현액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공적이 우수한 현액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선정인원 : 10명 이내 (단체포함)
2. 현액내용 : 현액대상자의 주요 공적사항 등이 표시된 동판 부조상
3. 추천대상자

-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시민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단체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시민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단체
 -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단체
 - 기타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 단, 현액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등

4. 추천권자

- 일반단체 및 개인 추천시 만 19세이상 시민 10이상 연서
- 서울특별시 (실·본부·국), 자치구 등

5. 추천 구비서류 : 붙임 첨부

- ① 후보자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주요경력 및 수상내용 1부
- ④ 공적 요약서 1부 ⑤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상기 제출서류는 원본 파일을 이메일 (kim0761@seoul.go.kr)로 함께 제출

▶ 추천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 뉴스·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서울시 명예의 전당 현액후보자 추천안내)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접 수 처

- 오프라인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 온 라 인 : 이메일 (kim0761@seoul.go.kr)

7. 접수기간 : 2016. 8. 4(목) ~ 9. 12(월), 근무시간 내 (09:00~18:00)

8.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온라인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는 2016. 9. 12(월) 일까지 도착한 우편물까지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편번호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청 7층 자치행정과)

- 온라인접수 (kim0761@seoul.go.kr)도 2016. 9.12(월) 18:00 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심사 및 발표 : 2016. 11월 중 (현액대상자는 개별통지)

10.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작성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현액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라. 현액식은 2017. 2월 중 실시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 2133-5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623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남동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일시 : 2016-07-08 10:50 장소 : 서울숲 내용 : 서울86바3138(덤프)차량 축하중 1.45톤 초과	과태료 10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6. 8. 27.(공고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최소 +10일이상)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준용),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와 함께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나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도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담 당 자 : 신현정(전자우편 : hopeism@seoul.go.kr)
- 전화번호 : 02-2210-1522
- 팩스번호 : 02-2210-156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62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2544	2016.7.4.	㈜디씨아이어드벤스 송권용 110111-4937277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15길 30-8, 2층(잠원동)
2	202545	2016.7.8.	시공전설(주) 황호진 110111-2482365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48길 16, 201호(대림동)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3	202546	2016.7.11.	(주)용백전설 곽의영 110111-1150898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49길 26, (용두동)
4	202547	2016.7.11.	다은정보통신(주) 정진영 110111-6053104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51, 9층(갈월동)
5	202548	2016.7.21.	에이아이에스테크놀로지(주) 이영섭 135811-1729750	서울 강남구 학동로 523, 502호 (청담동, 루나빌딩)
6	202549	2016.7.15.	(주)피델리스코리아 윤인규 110111-6053104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508호(구로동)
7	202550	2016.7.15.	(주)타이탄플랫폼 윤재영 120111-059023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6, 7층(역삼동)
8	202551	2016.7.15.	(주)지트인 김재환 110111-3991662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1008호 (가산동)
9	202552	2016.7.15.	(주)찬영씨엔씨 배범석 110111-5619527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 1802호(문래동5가)
10	202553	2016.7.15.	(주)이로텍 박상용 110111-6054938	서울 성북구 화랑로 280, 2층(석관동)
11	202554	2016.7.15.	한글정보통신(주) 최경환 110111-2094483	강서구 화곡로68길 82, 701호(등촌동)
12	202555	2016.7.15.	(주)엔케이에스지엠 김기효 110111-4191469	은평구 은평로 165, 7층(응암동)
13	202556	2016.7.20.	(주)티팩토리 최형석 135811-0178509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에이동 8층(성수동2가, 서울숲에스케이브이1 타워)
14	202557	2016.7.20.	(주)샌디아 이승수 110111-2 5 6 9 1 4 7	서울 강남구 논현로20길 14, (개포동)
15	202558	2016.7.21.	(주)케이씨이앤씨 문선목, 이성열 134611-0014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3길 5, (삼성동)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6	202559	2016.7.26.	(주)우선기술 정우영 110111-6082971	서울 마포구 성산로2길 21-30, 203호(성산동, 예지빌딩)
17	202560	2016.7.28.	(주)블루네트웍스 최광호 110111-426180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9길 10-8, 4층 (방배동,영일빌딩)
18	202561	2016.7.28.	(주)이음네트 김형규 110111-6056041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 11, 3층(신림동, 비앤에스빌딩)
19	202562	2016.7.28.	(주)서울티엔에스 김선오 110111-6056463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477, 8층(길동, 삼환빌딩)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 2133-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62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광장) 실시계획 정정공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577호(2016.7.28.)로 열람공고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광장)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실시계획 면적 또는 규모 등에 대한 정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를 합니다.
- 본 열람공고에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는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인, 미 통지인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변경결정(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서울역 고가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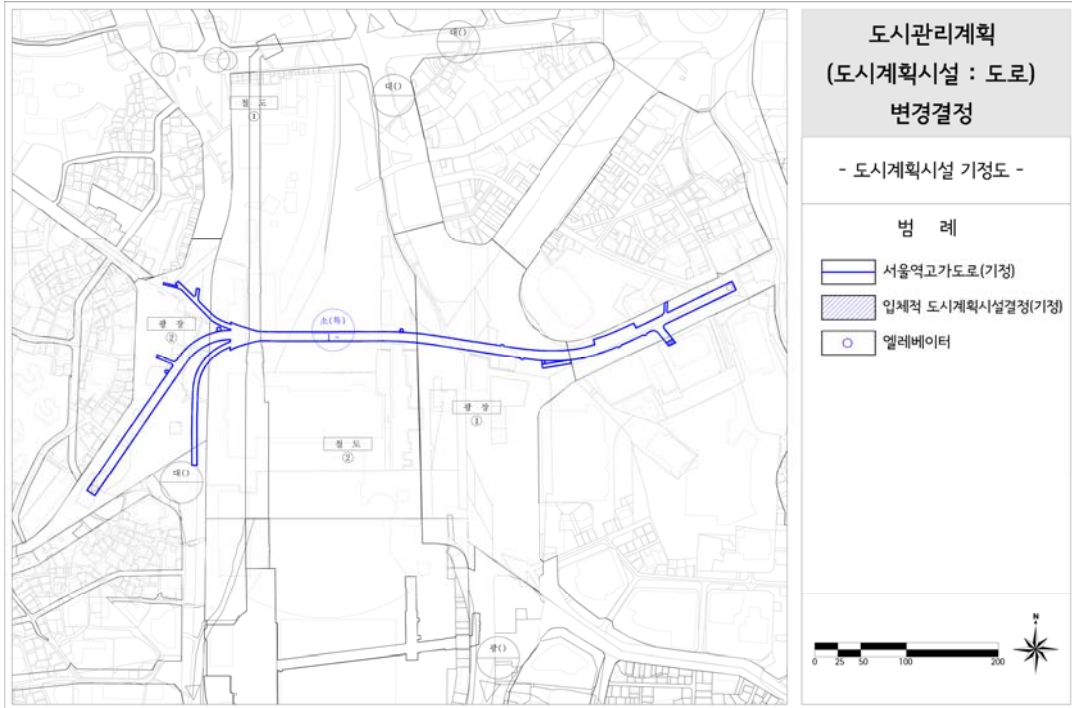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정정)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경	소로1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남대문로5가 526 일대	길이	3.24m	감) 0.09m	3.15m	-	
				폭	8m	감) 2.0m	6m		
				높이 (지표면기준)	5.6~6.5m	감) 0.8~0.7m	4.8~.5.8m		
				면적	25.9㎡	감) 7.0㎡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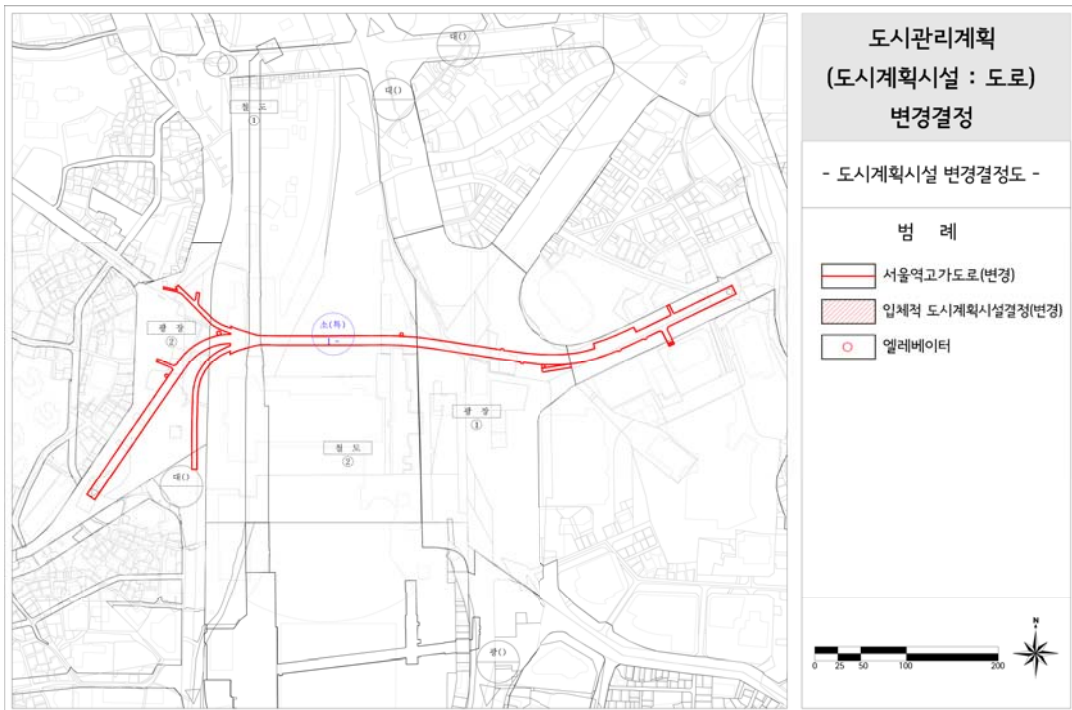
○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1	소로 1	도로 선형 변경 호텔마누 연결 부분 선형 직선화 변경	호텔마누와의 연결부분의 선형 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 변경 - 길이 : 3.24m→3.15m(감 0.09m) - 폭 : 8m→6m(감 2m) - 면적 : 25.9㎡→18.9㎡(감 7.0㎡)	대우재단빌딩과의 보행로 연결 부분의 입체적 결정 범위 폭원 및 선형 변경

■ 도시계획시설 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2) 도시계획시설(도로) - 퇴계로

○ 해당 없음

3) 도시계획시설(광장) - 만리동광장

○ 해당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광장)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36-2 ~ 만리동1가 62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광장)

② 명 칭 : 서울역 7017 프로젝트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서울역 고가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1	-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정정)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최 초 결정일	비 고
소로1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남대문로5가 526 일대	길이	3.15m	-	
			폭	6m		
			높이(지표면기준)	4.8~5.8m		
			면적	18.9㎡		

② 도시계획시설(도로) - 퇴계로

○ 퇴계로 보행길 : 폭 8.6m ~ 10.3m, 연장 214m

③ 도시계획시설(광장) - 만리동광장 (정정)

○ 광장 2 (만리동광장) : 10,353.1㎡ (전체 면적 : 24,15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서울특별시

②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서울역 고가도로)

○ 토지조서(사용)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사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구	행정동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 계					128,175.3	10,724.5	감) 58.4	10,666.1							
1	중구	남대문로 5가	67-4	도로	1,312.4	156.2	-	156.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중구	남대문로 5가	73-2	도로	477.6	196.6	-	196.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중구	남대문로 5가	74-1	도로	419.8	158.7	-	158.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중구	남대문로 5가	75-1	도로	142.1	4.0	-	4.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중구	남대문로 5가	280	도로	482.6	205.0	-	205.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중구	남대문로 5가	281	도로	409.9	91.6	-	91.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	중구	만리동 1가	5	도로	412.6	1.9	-	1.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	중구	만리동 1가	5-1	도로	376.9	165.7	-	165.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9	중구	만리동 1가	12-2	도로	832.4	215.9	-	215.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0	중구	만리동 1가	12-3	도로	506.1	96.8	-	96.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중구	만리동 1가	12-4	도로	100.2	11.1	-	1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2	중구	만리동 1가	15-3	도로	56.2	0.8	-	0.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3	중구	만리동 1가	17-2	도로	145.5	6.9	-	6.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4	중구	만리동 1가	22-32	도로	15.9	15.9	-	15.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5	중구	만리동 1가	22-37	철도	20.8	12.6	-	12.6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계속>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사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구	행정동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신규	비고
16	중구	만리동1가	22-43	도로	5.0	1.9	-	1.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7	중구	만리동1가	22-44	철도	74.4	44.5	-	44.5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18	중구	만리동1가	83	도로	534.8	123.1	-	123.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9	중구	봉래동2가	122	철도	4,696.9	54.5	-	54.5	한국철도 공 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0	중구	봉래동2가	122-15	철도	20,897.5	319.5	-	319.5	한국철도 공 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1	중구	봉래동2가	122-14	철도	3,589.8	161.7	-	161.7	한국철도 공 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2	중구	봉래동2가	122-16	철도	19,570.7	1,026.5	-	1,026.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3	중구	봉래동2가	124	도로	1,894.2	4.4	-	4.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4	중구	봉래동2가	124-1	도로	613.1	142.5	-	142.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5	중구	만리동1가	22-36	철도	16.5	14.7	-	14.7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26	중구	중림동	106-4	도로	931.9	183.3	-	183.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7	중구	중림동	106-3	도로	589.8	68.2	-	68.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8	중구	중림동	106-6	도로	1,632.6	62.1	-	62.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9	용산 구	서계동	217-2	도로	2,648.9	109.2	-	109.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0	중구	남대문로5 가	84-15	도로	15,607.4	2,536.6	감) 6.9	2,529.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규 186.9	연결통로 변경 (호텔마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 이터
31	중구	남대문로5 가	520	도로	3,769.70	616.7	감) 34.9	581.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규 97.0	연결통로 변경 (대우재단)
32	중구	남대문로5 가	526-1	도로	559.4	36.2	감) 9.6	26.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규 26.6	연결통로 변경 (대우재단)
33	중구	만리동1가	1	도로	11,043.8	1,153.2	-	1,153.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규 34.0	
34	중구	만리동1가	22-1	도로	6,942.6	1002.1	-	1002.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신규 28.2	엘리베이터
35	중구	봉래동2가	122-11	철도	10,063.0	956.3	-	956.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신규 18.4	엘리베이터
36	중구	봉래동2가	122-17	철도	10,420.6	741.7	-	741.7	한국철도 공 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신규 10.1	엘리베이터
37	중구	남대문로5 가	526	대지	3,081.1	25.9	감) 7.0	18.9	재단법인 대우재단외 1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 시 중구 남대문로 84	지상권	신규 18.9	연결통로, 입체연결 변경 (대우재단)

※ 신규 면적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9호(2016.5.19.) 및 금회 실시계획(안)에 의해 새로이 사용하는 면적

② 도시계획시설(도로) - 퇴계로 (정정)

○ 토지조서(사용)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구	행정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 계					22,778.2	1,843.2						
1	중구	남대문로 5가	281	도로	409.9	70.4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중구	남대문로 5가	282	도로	79.3	0.2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중구	남대문로 5가	288	도로	125.6	112.0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4	중구	남대문로 5가	290	도로	710.7	278.9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중구	남대문로 5가	292	도로	1,072.4	114.9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엘리베 이터
6	중구	남창동	235- 1	도로	2,488.6	182.3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	중구	남창동	236- 2	도로	757.8	239.4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	중구	남창동	239- 1	도로	297.5	53.1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9	중구	남창동	64-1	도로	16,836.4	792.0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엘리베 이터

③ 도시계획시설(광장) - 만리동광장 (정정)

○ 토지조서(사용)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구	행정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 계					19,024.5	10,353.1						
1	중구	만리동1가	1	도로	11,043.8	5,008.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중구	만리동1가	15-3	도로	56.2	2.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중구	만리동1가	17-2	도로	145.5	40.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중구	만리동1가	22-1	도로	6,942.6	4,552.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엘리 베이터
5	중구	만리동1가	22-32	도로	15.9	15.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중구	만리동1가	22-36	철도	16.5	16.5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7	중구	만리동1가	22-37	철도	20.8	20.8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8	중구	만리동1가	22-43	도로	5.0	5.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9	중구	만리동1가	22-44	철도	74.4	67.7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10	중구	만리동1가	73-4	도로	3.0	0.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	중구	만리동1가	79-6	도로	148.8	113.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2	중구	만리동1가	80-1	도로	17.2	14.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3	중구	만리동1가	83	도로	534.8	495.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경미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서울역 고가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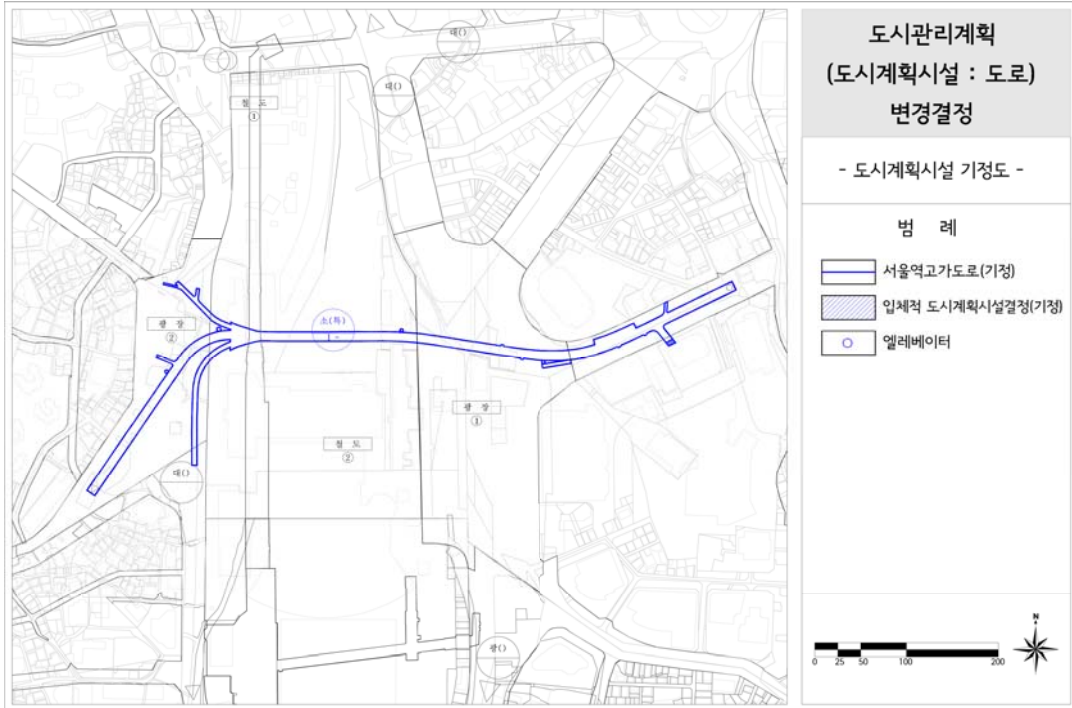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정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경	소로1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남대문로5가 526 일대	길이	3.24m	감) 0.09m	3.15m	-	
				폭	8m	감) 2.0m	6m		
				높이 (지표면기준)	5.6~6.5m	감) 0.8~0.7m	4.8~.5.8m		
				면적	25.9㎡	감) 7.0㎡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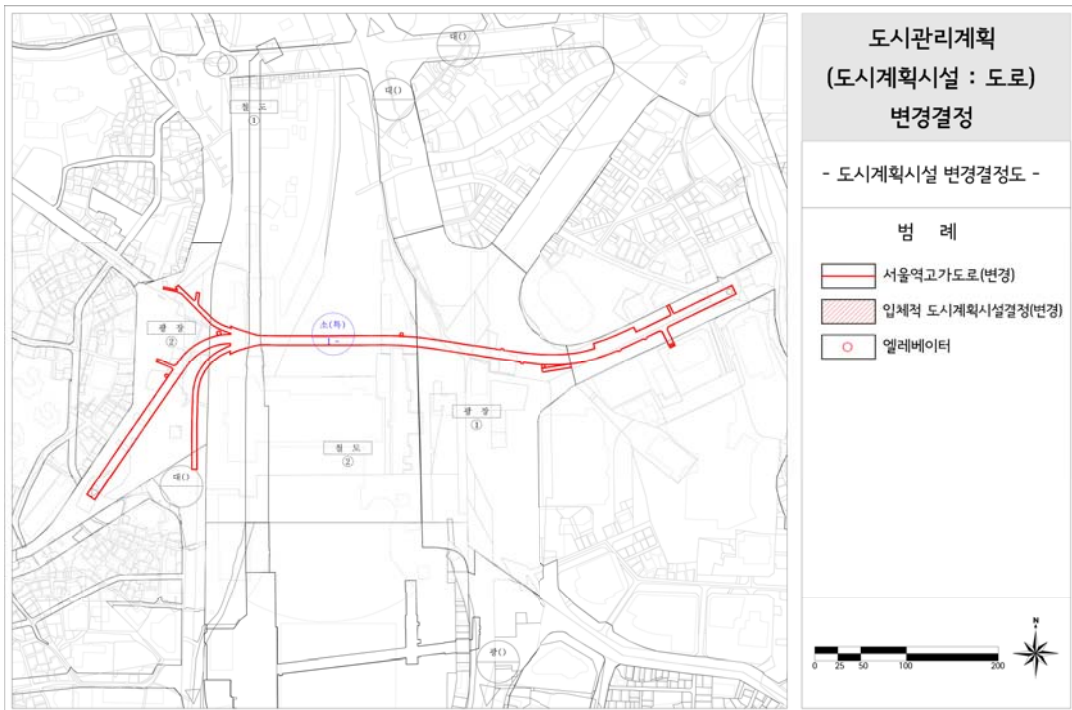
○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1	소로 1	도로 선형 변경 호텔마누 연결 부분 선형 직선화 변경	호텔마누와의 연결부분의 선형 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 변경 - 길이 : 3.24m→3.15m(감 0.09m) - 폭 : 8m→6m(감 2m) - 면적 : 25.9㎡→18.9㎡(감 7.0㎡)	대우재단빌딩과의 보행로 연결 부분의 입체적 결정 범위 폭원 및 선형 변경

■ 도시계획시설 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② 도시계획시설(도로) - 퇴계로

○ 해당 없음

③ 도시계획시설(광장) - 만리동광장

○ 해당 없음

8) 건축 허가,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 건축허가 의제 건축물 현황

연번	건축물명칭	용도	구조	층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1	만리동관리사무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6.91m	279.5㎡	279.5㎡	
2	만리동키오스크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3.78m	9.08㎡	9.08㎡	
3	퇴계로여행자카페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7.3m	225.87㎡	225.87㎡	
4	관광안내소+7017 기념관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4.05m	13.53㎡	13.53㎡	
5	Shop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4.05m	13.53㎡	13.53㎡	
6	꽃집+카페(범의귀과)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5m	42.5㎡	42.5㎡	
7	카페(목련과)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4.75m	16.12㎡	16.12㎡	
8	전시장(아욱과)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4.75m	16.12㎡	16.12㎡	
9	카페(장미과)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5m	41.48㎡	41.48㎡	
10	정원관리체험관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4.65m	16.12㎡	16.12㎡	
11	만리동여행자카페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4.4m	119.79㎡	119.79㎡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라. 관련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신청사 10층)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재생사업반(☎ 02-2133-86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6-80호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65호(2010.02.25)로 결정(변경)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돈의동 103-66의 1필지에 대하여 2016년 제5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07.22.)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종로구청장

1.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대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번호	구분	동명	지번	필지면적 (㎡)	획지면적 (㎡)	계획내용
기정	17	16	돈의동	103-63	13.2	123.4	공동개발 지정 : 103-64, 103-66, 103-68
			돈의동	103-64	33.1		공동개발 지정 : 103-63, 103-66, 103-68
			돈의동	103-66	33.1		공동개발 지정 : 103-63, 103-64, 103-68
			돈의동	103-68	44.0		공동개발 지정 : 103-63, 103-64, 103-66
변경	17	-	돈의동	103-66	79.4	-	-
		-	돈의동	103-68	44.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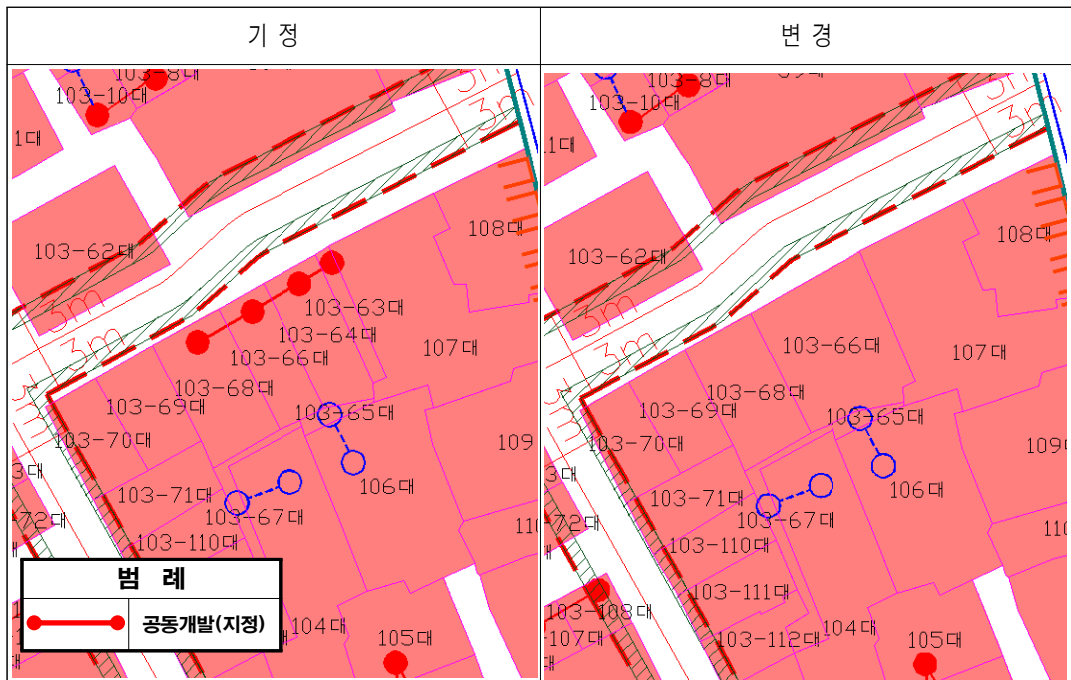
※ 2015.12.23. : 돈의동 103-63, 64, 66 → 103-66으로 토지합병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건축과(☎2148-281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고시 제2016-72호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63호(2005.09.01)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2호(2014.09.04)로 변경결정 고시된 우리구 북창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6.07.22)를 통해 의결된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중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중구 남대문로4가 71-1번지 일원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 획지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사항임

2.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사항

구 분		가구 번호	획지번호 (기결정)	공동개발 면적(㎡)	위 치		필지면적 (㎡)	비 고	획지(공동개발) 계획		기 공동건축	동일 소유			
기정	간선부	7	24	2,966.3	남대문로4가	17-8	568.6		획지 24	공동 개발 권장		○			
					남대문로4가	17-22	105.8								
					남대문로4가	17-23	2,134.6								
					남대문로4가	72-1	76.0								
					남대문로4가	72-3	16.5								
					남대문로4가	73-1	52.9								
					남대문로4가	17-40	2.0								
				남대문로4가	71-1	73.0	과소필지								
			159.5	남대문로4가	17-39	28.7	과소필지	공동개발 지정							
				남대문로4가	17-40	28.8	과소필지								
				남대문로4가	17-23	34.1	맹지, 과소필지								
				남대문로4가	17-48	67.9	맹지, 과소필지								
			변경	간선부	7	24	3,125.8	남대문로4가	17-23	3,120.2		획지 24	공동 개발 권장		
								남대문로4가	71-1	5.6					
24		남대문로4가				17-23	5.6	과소필지							
	남대문로4가	71-1				67.4	과소필지								

- 변경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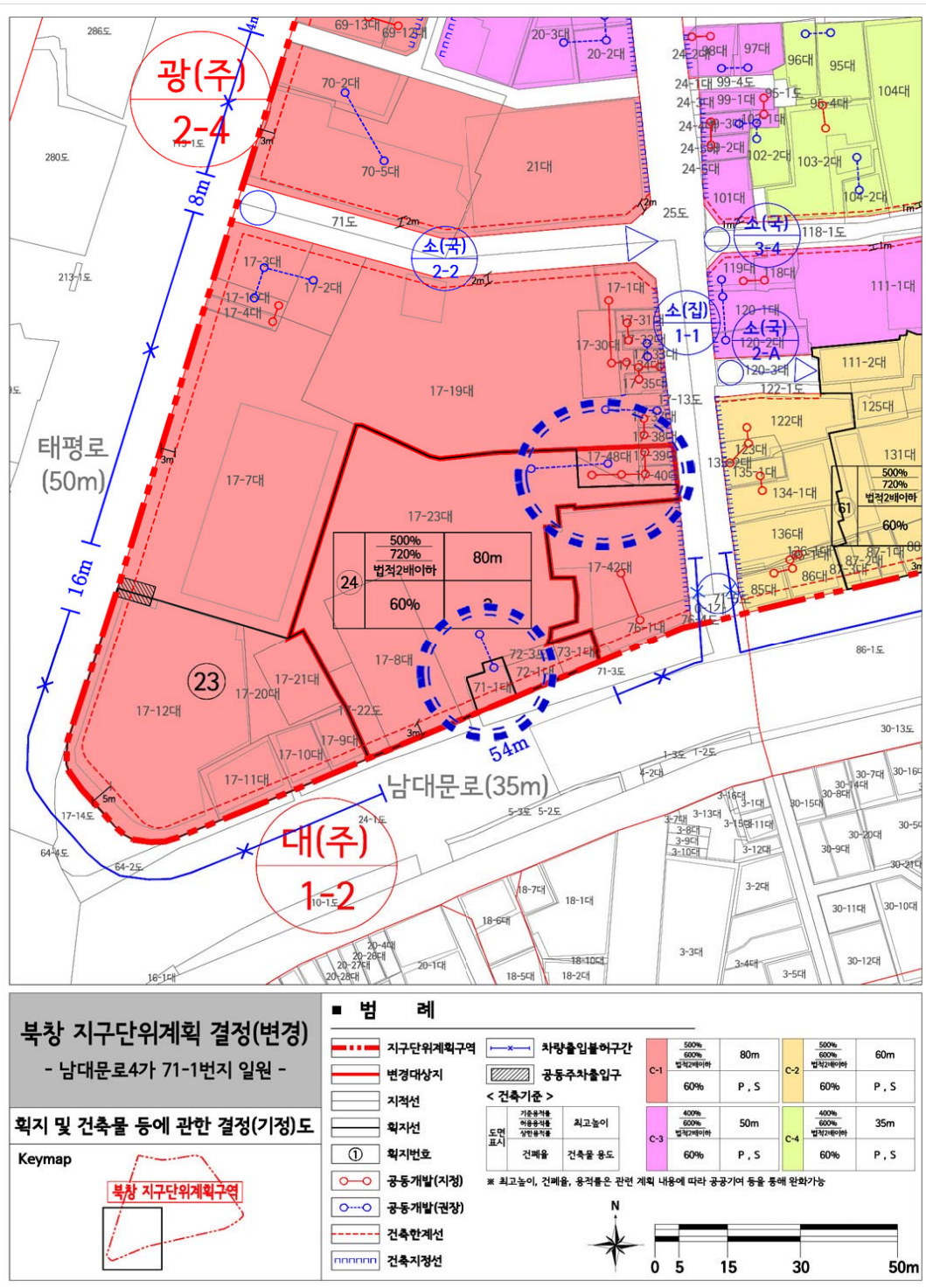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남대문로4가 71-1번지 일원	획지24 선형 및 면적 변경 - 2,966.3㎡ → 3,125.8㎡ (증 159.5㎡, 5.4%)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남대문로4가 17-23번지 외 8필지 공동개발에 따른 17-23번지로의 합필 내용을 반영하고, 남대문로4가 71-1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이 남대문로4가 17-23번지에 침범되어 있어 건축물 및 필지의 현황에 맞게 대지경계 조정하고자 획지계획 변경 결정함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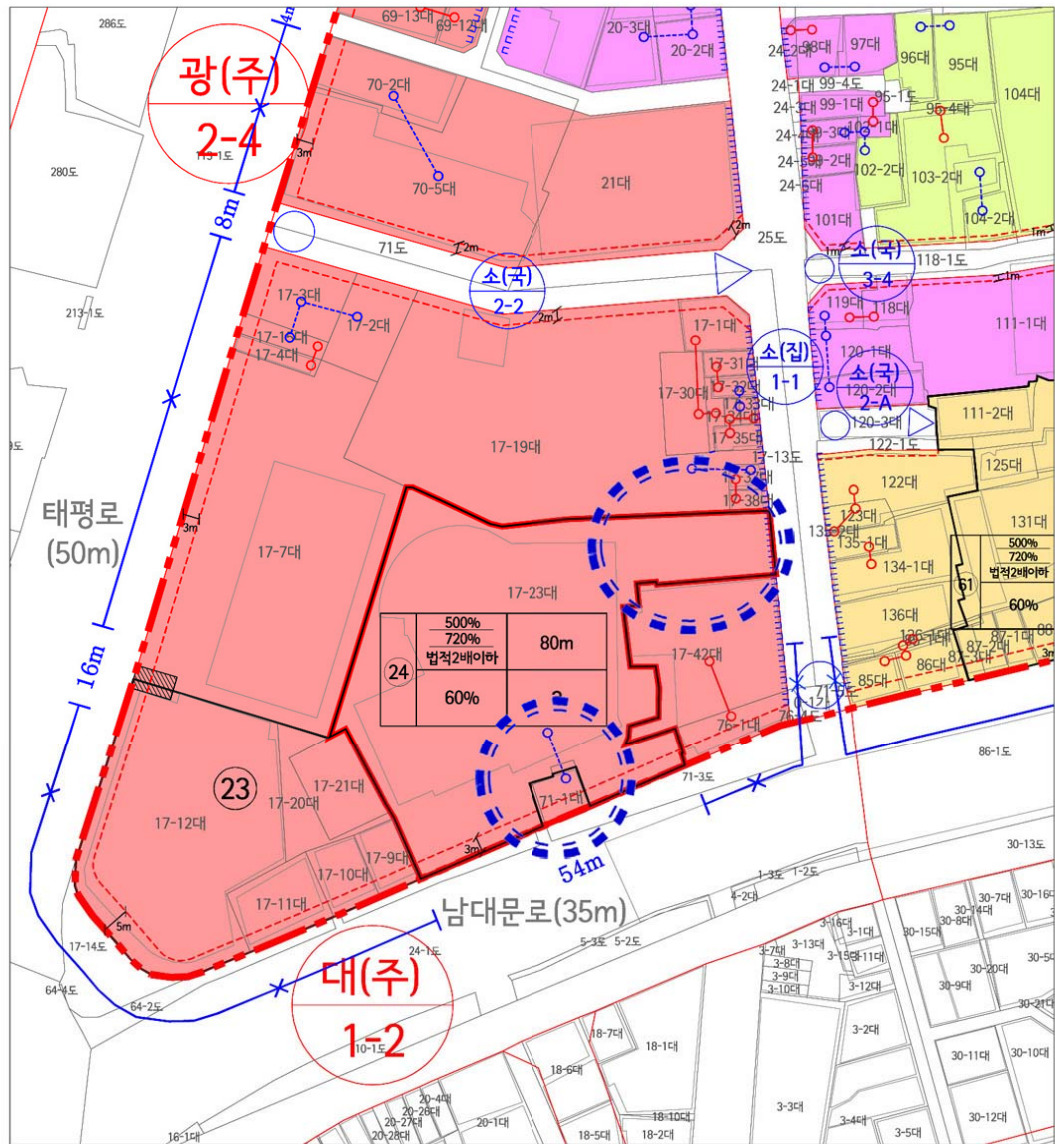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남대문로4가 71-1번지 일원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Keymap



■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차량통입불허구간		500% 600% 법적2배이하	80m		500% 600% 법적2배이하	60m
	변경대상지		공동주차통입구		60%	P, S		60%	P, S
	지적선		< 건축기준 >		400% 600% 법적2배이하	50m		400% 600% 법적2배이하	35m
	획지선		기존건축물 기존건축물 기반용지		60%	P, S		60%	P, S
	획지번호		최고높이		※ 최고높이, 건배율, 용적률은 관련 계획 내용에 따라 공공기여 등을 통해 완화가능				
	공동개발(지정)		건배율						
	공동개발(권장)		건축물 용도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 광진구고시 제2016-8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12-26호(2012.2.15)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12-87호(2012.7.5)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광진구 구의동 30-9번지 일대 『구의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교통지도과(☎450-79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8월 4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30-9호 외 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2) 사업의 명칭 : 구의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

- 1) 면 적(변경없음) : 1,170.6㎡
- 2) 규 모(변경)
 - 당 초 : 자주식 주차장 105면(지하1층, 지상2층/3단)
 - 변 경 : 자주식 주차장 95면(지하1층, 지상2층/3단)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

마. 사업의 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7. 4. 26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변경없음) : 생략

사. 변경사유 : 주차면수 감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450-7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고시 제2016-65호

도시계획시설(수도, 청소년수련시설)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5호(1977.08.23)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76호(1982.11.24)로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수도)에 대하여 2016년 제2차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7.07.27)결과(원안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수도,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은 평 구 청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수도(가압장) 시설의 기능 상실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수도)을 폐지하고, 은평구 내 지역 간 청소년시설 불균형에 따른 소외지역 주민의 시설확충 요구 민원을 해소하고자 청소년수련시설을 결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수도,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수도	갈현동 391-5	642.1	감)642.1	0	서고195 (1977.08.23)	
신설	청소년수련시설	갈현동 391-5	0	증)642.1	642.1	-	

○ 건축물의 범위 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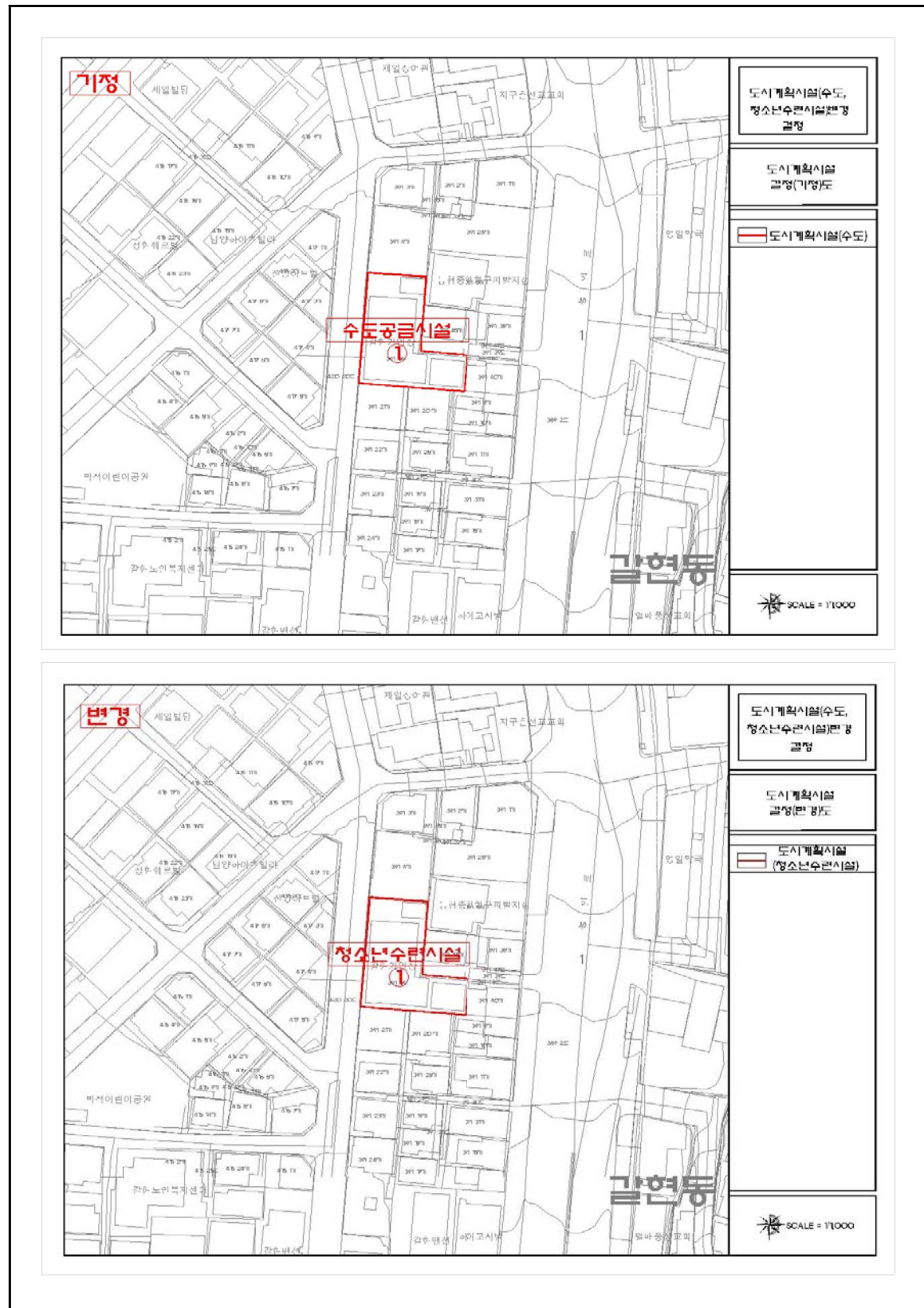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청소년수련시설	50%이하	250%이하	25m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0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고시 제2016-66호

도시관리계획(불광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07.05)로 구역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3호(2011.04.28.)로 최종 변경 결정된 「불광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불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은 평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사유

- 공동개발(규제)로 계획된 토지(2필지)와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토지(1필지)를 공동 개발에 의한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변경하는 것임.

나. 도시관리계획(불광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 가구 및 획지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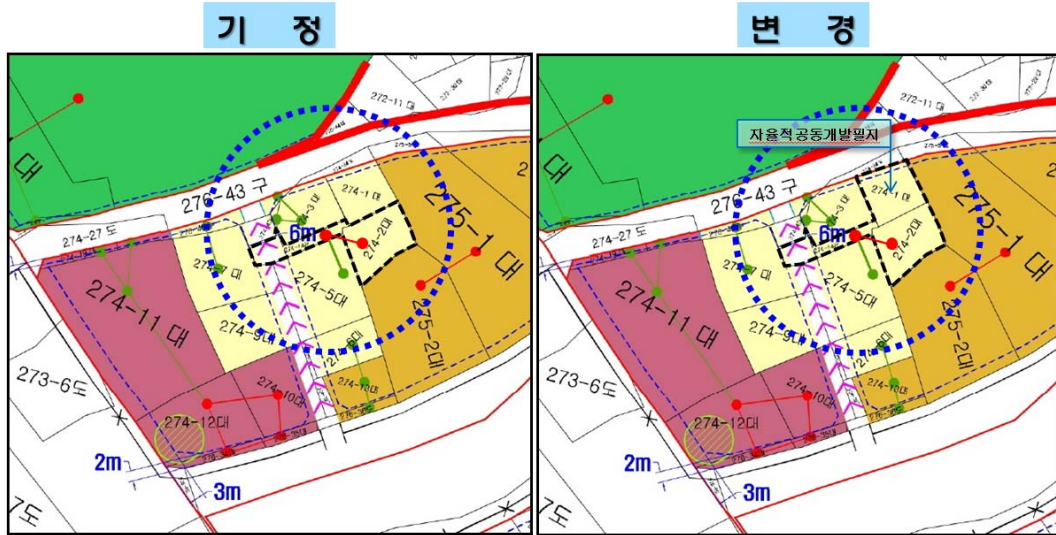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 면적 (㎡)	비고
기정	A	9,179	불광동 274-2	119	410	○공동개발(지정) : 274-2, 274-14 ○공동개발(권장) : 274-5, 274-14
			불광동 274-5	245		
			불광동 274-14	46		
			불광동 274-1	96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274-1
변경	A	9,179	불광동 274-2	119	510	○공동개발(지정) : 274-2, 274-14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 274-1 ※ 공동개발(지정) 및 자율적 공동개발 필지 를 포함한 3필지는 공동개발이 가능함 ○공동개발(권장) : 274-5, 274-14
			불광동 274-5	245		
			불광동 274-14	46		
			불광동 274-1	100		

다.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라.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마. 도시관리계획(불광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공동개발 필지 : 불광동 274-1, 274-2, 274-14)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서대문구고시 제2016-9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호 및 서울시 고시 제63호(1992.3.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2-56호(2012.3.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 및 서울시 고시 제353호(1998.10.9.)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2-367호(2013. 1. 3.)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인왕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6-354호(2016. 4. 28.)로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8월 4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6번지 등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무악재 녹지연결로(인왕산 ~안산)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 1,020.4㎡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 서대문구청장
- 2)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17.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사업의 주요내용 : 녹지연결로 조성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39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서대문구 현저동 1-6	공원	3,761.1	670.4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실시계획 열람공고의 현저동 1-7, 현저동 1-8, 현저동 1-9는 현저동 1-6으로 합병 (2016. 5. 2.) 및 지목변경 (2016. 4. 28.) 위치, 면적 변경없음
서대문구 홍제동 43-18	임야	910.0	6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종로구 무악동 산3-10	임야	2,579.0	290.0	국토해양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마포구고시 제2016-10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1998.06.1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과 택지개발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3호(2015.12.24.)로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

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과(☎02-3153-9403)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8월 4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15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2) 명 칭 : 상암동 DMC 주차복합빌딩 신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사업시행 면적 : 3,623.6㎡
- 2) 규 모 : 지하4층, 지상12층
 - 주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25,644.247㎡
 - 부용도 : 주차장외 용도 10,407.291㎡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6(장항동, MBC드림센터)
- 2) 성 명 : (주) 엠비씨씨앤아이 대표이사 전 영 배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 준공예정일 : 2019. 03.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상암동 1,615	주차장	3,623.6	3,623.6	(주)엠비씨씨앤아이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로 596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강서구고시 제2016-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0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196호(1976.08.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되고 “강서구고시 제2001-24호(2001.04.02)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171호(1972.11.23)

- 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설치를 위하여,
2.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16-35호(2016.05.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16-45호(2016.06.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강서구 공향동40-8~34-60 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동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변경 작성하여 인가 및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서구 공향동40-8~34-60 외 3개소 - 변경없음

나.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변경없음

다. 사업명 : 강서구 공향동40-8~34-60 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 - 변경없음

라. 사업규모 : 도로개설(B=8m, L=210m) 등 - 변경없음

마. 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 성 명 : 강서구청장

바.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1)당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6.12

2)변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7.12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변경조서참조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도로과(☎2600-69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공사명 : 공항동 40-8 ~ 34-60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공항동 35-14	대	88	88	김춘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35-6	1/1				변경없음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 공사명 : 공항동 40-8 ~ 34-60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1층	2층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공항동 35-6	건물	연와조	1층	59.57㎡	37.94㎡	김춘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35-6	1/1				당초
	"	건물	연와조	1층	59.57㎡	44㎡	"	"	1/1				변경
2	공항동 35-14	화장실	연와조	1층	5㎡	5㎡	"	"	1/1				추가
3	"	계단	시멘트		1㎡	1㎡	"	"	1/1				추가
4	"	삼나무	나무		1식	1식	"	"	1/1				추가
5	"	목련나무	나무		1식	1식	"	"	1/1				추가
6	"	담장	벽돌		2.13㎡	1.62㎡	"	"	1/1				추가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공사명 : 공항동 40-8 ~ 34-60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	방화동 644-12	담장	벽돌	54.2㎡	54.2㎡	정종영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39-13, 302동702호 (수기마을현대힐스테이트)	1/1				변경없음
2	"	EGI 펜스	철	10.2㎡	10.2㎡	"	"	1/1				변경없음
3	"	철문	철	1식	1식	"	"	1/1				변경없음
4	"	보안등	전등	1식	1식	"	"	1/1				변경없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공사명 : 방화동 642 ~ 647-14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성 명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	방화동 644-5	답	218	171	정종영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39-13, 302동 702호(수기마을현대힐스테이트)	1/1					당초
	방화동 644-5	답	181	181	"	"	1/1					변경
2	방화동 644-12	잡	23	23	"	"	1/1					변경 없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공사명 : 방화동 606-15 ~ 567-4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방화동 249-284	대	28	28	전창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68 신안네트빌1단지아파트 101-1404	1/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변경없음
2	방화동 580-149	대	28	28	민영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69-10	1/1				변경없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공사명 : 공화동 14-4 ~ 방화동 609-47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공화동 14-18	도	8	8	정정섭	창원시 신촌동 34-1 양곡아파트 2동 501호	1/1				변경 없음

위 치 도



◆ 구로구고시 제2016-125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구로구고시 제2016-86(2016.5.26)호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구로구공고 제2016-770(2016.6.16)호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 구로구고시 제2016-109(2016.7.7)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구로구 가리봉동 118-11 외 7필지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 반영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18-11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사업의 명칭 :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대지면적 1,760.8㎡, 건축연면적 4,384㎡(지상4층/지하2층)

※ 북측 대체도로 확보 147㎡(폭 4m, 연장 34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내용 별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재생과(☎02-860-2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사업의 명칭 :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1	가리봉동 111-5	대	360.0	265.0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측량성과반영 편입면적변경 감) 4㎡
변경		"	"	360.0	261.0	"	"				
기정	2	가리봉동 118-11	대	1,152.0	1,152.0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기정	3	가리봉동 132-98	도	427.1	17.8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기정	4	가리봉동 591-1	도	59.0	59.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정	5	가리봉동 110-6	대	3.0	3.0	박도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02, 503호(호계동, 서안이노빌)				
기정	6	가리봉동 111-8	대	175.0	123.0	허만준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1가길 13-6(가리봉동)				※측량성과반영 편입면적변경 증) 4㎡
변경		"	"	175.0	127.0	"	"				
기정	7	가리봉동 118-20	대	327.0	22.0	김주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12, 401동 1801호(사동, 현대2차아파트)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변경
변경		가리봉동 118-42	"	22.0	22.0	"	"				
기정	8	가리봉동 118-24	대	119.0	119.0	오오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2길 29-5(가리봉동)	구로구		압류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사업의 명칭 :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가리봉동 111-8	주택(지층)	연와조	76㎡	허만준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1가길 13-6(가리봉동)				변경 (기존 연와조)
2		주택(1층)	연와조	79㎡						
3		주택(2층)	연와조	79㎡						
4		창고	연와조	3㎡						
5		보일러실	판넬조	1㎡						
6		조립식건물 (옥탑)	조립식건물	7㎡						
7		쪽문(갈색)	알루미늄대문	1식						
8	가리봉동 118-24	주택(지층)	연와조	7㎡	오오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2길 29-5(가리봉동)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압류	추가
9		주택(1층)	연와조	70㎡						
10		주택(2층)	연와조	61㎡						
11		창고	연와조	25㎡						
12		화장실	연와조	1㎡						
13		철재대문 (녹색양문)	연와조기둥, 철재대문위 아치시설	1식						
14		쪽문(파랑)	철재대문	1식						
15		셔터	알루미늄	300(w)×210(h)						
16		돌출간판	아크릴	1식						
17		보일러실	목조천막지붕	2㎡						
18		보일러실	블록조슬레이트 지붕	1.5㎡						
19		사철나무	15년생	3주						
20	가리봉동 591-1	건물	연와조	30㎡	최복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13길 28 102동 202호 (금호동2가, 금호하이츠)				무허가건물
21		쪽문(녹색)	철재	1식						
22		셔터	알루미늄	260(w)×210(h)						
23		자바라	알루미늄	350(w)×230(h)	오복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1가길 21(가리봉동)				
24		차양	pvc 및 철재구조물	710(w)×120(h)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사업의 명칭 :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가리봉동 591-1 (110-5)	영업권	골목담배 (소매)	1식	오복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1가길 21(가리봉동)				무허가 건축물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현황사진



계획평면도



◆ 영등포구고시 제2016-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28호(2002.06.2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신길동 2862~신길동 3574-15간 도시계획시설(도로)』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신길동 2857~2871간 도시계획시설(중로3-3)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4호(2015.08.27.)로 변경결정됨] 『신길동 253-297~335-37간 도시계획시설(도로)외 1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의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53-297~335-37(중로 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857~2871(중로 3-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862~3574-15(소로 3류)
-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다. 사업의 명칭: 신길동 253-297~신길동 335-37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라. 사업 규모
 - 중로 2-1: 폭 15m, 연장 250m
 - 중로 3-3: 폭 12~16m, 연장 173m
 - 소로 3류: 폭 6m, 연장 26m
-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영등포구청장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등 권리명세: 별첨 조서
-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함.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02-2670-35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신길동 253-297~335-37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중로2-1)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영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성명	주소	
1	신길동	337-364	도로	9.0	9.0	122/139	재정경제부						
							엄문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68					
2	신길동	331-44	도로	10.0	10.0	48/210	김영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90-4 아름빌라 6-302					
						34/210	김영우	인천광역시 서구 겸암동 609-10 하이트캐슬비-202					
						34/210	김영배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90-1 거성파스텔아파트 105-2302					
						13/210	김승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61 태평2차아파트 101-1309					
						13/210	김금자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273-10 세한아파트가-102					
						34/210	김영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339 도담마을죽전파크빌 902-210					
						34/210	김영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여의도더샵아일랜드파크 102-913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주 소	권리종류	성명	주 소	
3	신길동	330-46	대	7.0	7.0	1/19	노진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					
						1/19	정승모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					
						1/19	김유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3					
						1/19	이재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4					
						1/19	강희성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5					
						1/19	신동욱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6					
						1/19	이희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8					
						1/19	김정욱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8					
						1/19	한계운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8					
						1/19	배만복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11					
						1/19	조관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11					
						1/19	김남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11					
						1/19	최태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18					
						1/19	우상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19					
						1/19	김삼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21					
						1/19	김홍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21					
						1/19	박구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24					
						1/19	김병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24					
						1/19	이순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0-26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성명	주 소	
4	신길동	329-214	도로	281.0	281.0		이병국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29동 2002호 (반포동, 반포자이)					
							이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20-43 반포자이아파트 129-2002					
							최태식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300, 202동 3701호 (목동, 목동현대아이페리온2)					
							최태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94번길 29, 605동 601호 (이매동, 이매촌 청구아파트)					
							권리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94번길 29, 605동 601호 (이매동, 이매촌 청구아파트)					
							김성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120번길 34, 1002동 901호 (고양동, 푸른마을)					
							황민상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72-42, 403호					
							김부남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61-4					
							우종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99 한빛아파트 133-802					
							신길11재정비 추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96-26 3층					
							길정숙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7길 21, 401호 (염창동)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성명	주 소	
5	신길동	335-37	도로	166.0	166.0	2/32	관용순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24, 104동 2405호 (부곡동, 경남한신아파트)					
							신용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로로149번길 62, 101동 302호 (오정동, 진성파크타운)					
							경복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64, 513동 901호 (화정동, 은빛마을)					
							박선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북로 45, 202호 (수내동)					
							박행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0, 9동 1407호 (개포동, 경남아파트)					
							이분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28-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신길동 253-297~335-37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중로3-3, 소로3류)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모번호)
	동명	지번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신길동	2863-1	대	2	2	임경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5 셋별마을 201-1002				신길동 2863
2	신길동	2863-2	대	28	28	임경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5 셋별마을 201-1002				신길동 2863
3	신길동	2862-1	대	40	40	배옥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2863	근저당권	취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신길동 2862
4	신길동	2865-1	대	8	8	배옥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2863	근저당권	취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신길동 2865
5	신길동	2841	도로	129	129	정상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한양아파트 이-103				
6	신길동	2845	도로	142	142	정상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한양아파트 이-103				
7	신길동	3574-1	도로	759	102	서울시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신길동 253-297~335-37의 2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중로3-3, 소로3류)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신길동	2863	주택(1층)	연외조	6.0	임경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5 셋별마을 201-1002					
			주택(2층)	연외조	7.0							
			대문	H=2.9m, L=2.0m	1식							
			담장	조적조 (H=1.85m, L=10m)	1식							
			수도계량기		1식							
			에어컨 실외기		1식							
2	신길동	2862	주택(1층)		2.0	배옥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2863	근저당권	(주)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주택(2층)		1.0							
			대문	H=3.0, L=3.1m								
			담장	조적조 (H=1.85m, L=8.5m)	1식							
			정원	수목 등 조경시설 일체	1식							
			수도계량기		1식							
			에어컨 실외기		1식							

수용 또는 사용할 영업권 조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신길동 253-297~335-37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중로3-3, 소로3류)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상호명	업종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주 소	권리종류	성명	주 소	
1	신길동	2863	영업권	성심가정의학과의원	병의원	배옥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2863					

◆ 관악구고시 제2016-7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 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4-360호(2014.10.23)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6-195호(2016.02.11)로 열람공고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청룡산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저촉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79-652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8월 4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 봉천동(청룡동) 산174-17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청룡산지구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라. 사업규모

- 1)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산174-172번지(변경전) → 봉천동 산174-657(변경후)
- 2) 면 적 : 11,551㎡(변경전) → 4,883㎡(변경후)
- 3)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 조서 : 붙임문서 참조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변경 구분	소재지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사항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기정			11,551	11,551							
	변경			4,883	4,883							
1	기정	봉천동 산174-172	임야	11,551	11,551	임야	박용민	11270분의 320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26, 411동 ***호 (삼평동,뚝들마을)			
							김춘선	11270분의 1457.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26,411동 ***호(삼평동,뚝들마을)			
							김춘식	11270분의 4371.0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95, 101동 ***호(불당동,펜타포트)			
							김춘애	11270분의 1457.66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61 ,1003동 ***호 (관평동,대덕테크노밸리10단지 아파트)			
							이대영	11270분의 779.56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1길52번길 5-*			
	변경	봉천동 산174-657	임야	4,883	4,883	임야	박용민	11270분의 320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26, 411동 ***호 (삼평동,뚝들마을)			
							김춘선	11270분의 1457.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26,411동 ***호(삼평동,뚝들마을)			
							김춘식	11270분의 4371.0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95, 101동 ***호(불당동,펜타포트)			
							김춘애	11270분의 1457.66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61 ,1003동 ***호 (관평동,대덕테크노밸리10단지 아파트)			
							이대영	11270분의 779.56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1길52번길 5-*			

구 공 고

◆ 성동구공고 제2016-631호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4일

성 동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02-2286-5553)

다. 도시관리계획(안)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주차장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주차장	성동구 용답동 53-3번지 외 6필지	-	증) 581.7	581.7	-	

- 공공공지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공공공지	성동구 행당동 346-3번지	203.0	감) 203.0	-	서고181 (‘95.6.29.)	재개발구역 지정시 결정

- 유수지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유수지	유수시설	금호동4가 56번지	7,839	-	7,839	87.12.31	●일부분(5,313.4㎡) 공간적 범위 결정

▶ 공간적범위 결정(신설)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공간적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구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유수지 (유수시설)	금호동 4가 56번지	면적(㎡)	-	5,313.4㎡	5,313.4㎡	· 일부분(5,313.4㎡) 공간적범위 결정 ※ 유수지 상부 비시설 설치는 세부내용, 결정도면 및 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높이(m)	-	평균해수면기준 +13.8m이하	평균해수면기준 +13.8m이하	

라.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기타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안)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 도시계획과(☎02-2286-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향후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진구공고 제2016-606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

내무부 고시 제413호(1958.2.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7호(2016.1.14.)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6-76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용마도시자연공원(구의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4일

광진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125, 5-14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용마도시자연공원(구의지구) 조성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 5,298㎡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12.31.

2. 열람장소,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나. 열람기간 : 2016. 8. 4. ~ 2016. 8. 17. (14일간)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6. 8. 4. ~ 2016. 8. 17. (14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공원녹지과(☎02-450-77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공고 제2016-63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1호(2012.11.22)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26호(2016. 3. 24.)로 실시계획인가고시한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산95-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조성]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4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95-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조성

3) 사업내용 : 토지, 물건 보상 및 녹색복지숲 조성 등

다. 사업규모 : 8,649㎡(중계동 산95-1번지 편입 위치 변경)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공고방법 : 시보게재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43)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토 지 조 서

사업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조성

최초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6. 3. 24.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 상황	이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소제지 지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와 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종류와 내용	
중계동 산95-2	임야	임야	6,149	이종호	서울시 노원구 한글바석로2길 51-80 (중계동)						변경없음									
중계동 산95-1	임야	임야	23,456	김병호	서울시 서대문구 연행로4길 102 22호 (홍은동, 동아아파트)						변경없음		편입위치 변경							
중계동 산96	임야	임야	12,883	이승문	인천 부평구 원적로 361, 106동 304호(산곡동, 한화아파트)	이정연	인천 남동구 방축로 501, 5동 302호(간석동, 우성아파트)	근저당권			변경없음									
				정강현	인천 남동구 석정로574번길 9-15, 102호(간석동)															
				조규춘	충남 태안군 남면 인면대로 1696															
				대한물고 조계중 모현사	노원구 상계동 1291															
				김이현	송파구 송이로17길 46-8, 3층 302호(가락동)															
				이광희	도봉구 마들로 646, 105동 2001호 (명학동, 방학동삼래미아파트)															
				홍순정	종로구 북촌로 94-5, 301호(거좌동)															
				홍해숙	서초구 동광로19길 51, 307호 (방배동, 레미안명배메뉴)															
				홍순영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2동 401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물 건 조 서

사업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조성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관리 내용	비고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1	노원구 중계동 산95-1	가건물	목조, 판넬, 시멘트	255㎡	주거용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2	노원구 중계동 산95-1	가건물	목조, 판넬	72㎡	창고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3	노원구 중계동 산95-1	가건물	목조, 판넬	45㎡	창고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4	노원구 중계동 산95-1	가건물	목조, 판넬	39㎡	창고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5	노원구 중계동 산95-1	아치형 올타리 (입구)	철재, 비닐 9m*5m	1식	진입로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6	노원구 중계동 산95-1	가설물	목조, 판넬 2m*2m	1식	화장실, 창고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7	노원구 중계동 산95-1	파이프, 철판 (다리)		1식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8	노원구 중계동 산95-1	수목	두릅나무	300주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9	노원구 중계동 산95-1	수목	대추나무	2주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0	노원구 중계동 산95-1	수목	앵두나무	1주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 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	노원구 중계동 산95-1	전기시설		1식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2	노원구 중계동 산95-1	수도시설		1식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3	노원구 중계동 산95-1	전기보일러		1식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4	노원구 중계동 산95-1	정화조		1식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5	노원구 중계동 산95-1	동물	개	6마리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6	노원구 중계동 산95-1	개집	철재	6식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7	노원구 중계동 산95-1	수목	은행나무	1주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8	노원구 중계동 산95-1	수목	오동나무	1주		정점례	노원구 중계동 산95-1				
19	노원구 중계동 산96	가건물	목조, 시멘트, 철근	82㎡	사육시설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0	노원구 중계동 산96	연탄보관함	철재2.5m*1m	1식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1	노원구 중계동 산96	평상	목재 2m*1m	1식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2	노원구 중계동 산96	창고	철재 3.5m*4m	1식	창고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3	노원구 중계동 산96	보일러(연탄)		1식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4	노원구 중계동 산96	전기시설		1식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5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도시설		1식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6	노원구 중계동 산96	동물	개	50마리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7	노원구 중계동 산96	실내개장	철제	90개	개집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8	노원구 중계동 산96	사육시설	파이프	1식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29	노원구 중계동 산96	석축	시멘트, 석조	1식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0	노원구 중계동 산96	웬스	비닐, 파이프, 40m	1식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1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두릅나무	6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2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필레꽃	2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3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단풍나무	1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4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산수유	1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5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매화나무	1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6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사철나무	1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7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취뽕나무	1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8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영산홍	1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39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주목	1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40	노원구 중계동 산96	수목	개나리	2주		김순덕	노원구 중계동 산96				
41	노원구 중계동 산95-2	분묘	유연단장	1기		박길천	노원구 중계동 90-41				
42	노원구 중계동 산95-2	정화조		1식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43	노원구 중계동 산95-2	가건물	비닐하우스	36㎡	창고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44	노원구 중계동 산95-2	가건물	비닐하우스, 목재	47㎡	창고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45	노원구 중계동 산95-2	가건물	판넬	60㎡	창고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46	노원구 중계동 산95-2	가건물		1㎡	화장실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 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7	노원구 중계동 산95-2	평상	5m*2.5m	1식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48	노원구 중계동 산95-2	보도블럭	7m*4m	1식	바닥포장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49	노원구 중계동 산95-2	보도블럭	4m*4m	1식	바닥포장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0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도시설		1식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1	노원구 중계동 산95-2	전기시설		1식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2	노원구 중계동 산95-2	건자재		1식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3	노원구 중계동 산95-2	석상		6개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4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두릅나무	10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5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복숭아	20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6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감나무	1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7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대추나무	3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58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보리수나무	3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9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사과나무	1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60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자두나무	1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61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소나무	5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62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영산홍	3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63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회양목	11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64	노원구 중계동 산95-2	수목	단풍나무	30주		이종호	노원구 중계동 산95-2				
65	노원구 중계동 산95-2	벌통	판재	100통		이영달	노원구 중계동 602 비콘드림힐 101-1305				중계동 산95-2 주거면 벌통 포함

◆ 금천구공고 제2016-775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71호(2013.08.22.)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군부대 부지 특별계획구역내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되지 않거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년 8월 4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명 칭 : 군부대특별계획구역내 사회복지시설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위치 : 금천구 시흥동 113-142외 6필지
- 면 적 : 615㎡
- 내 용 : 사회복지시설 건립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19.5.30일까지

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02-2627-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대지권)

사업시행자 : 금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시흥동113-142회 6필지)

번호	소재지 주소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 (㎡)
		공부상	현황	공부상	현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계				615						615
1	시흥동 113-142	대	441	대	441	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34-1, 101동303호(한신아파트)				441
2	시흥동 113-39	대	102	대	102	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34-1, 101동303호(한신아파트)				102
3	시흥동 113-41	대	23	대	23	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34-1, 101동303호(한신아파트)				23
4	시흥동 113-42	대	7	대	7	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34-1, 101동303호(한신아파트)				7
5	시흥동 113-43	대	2	대	2	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34-1, 101동303호(한신아파트)				2
6	시흥동 113-44	대	39	대	39	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34-1, 101동303호(한신아파트)				39
7	시흥동 산191	묘지	1	묘지	1	(주)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	강남구 도산대로 322, 파라다이스B/D 3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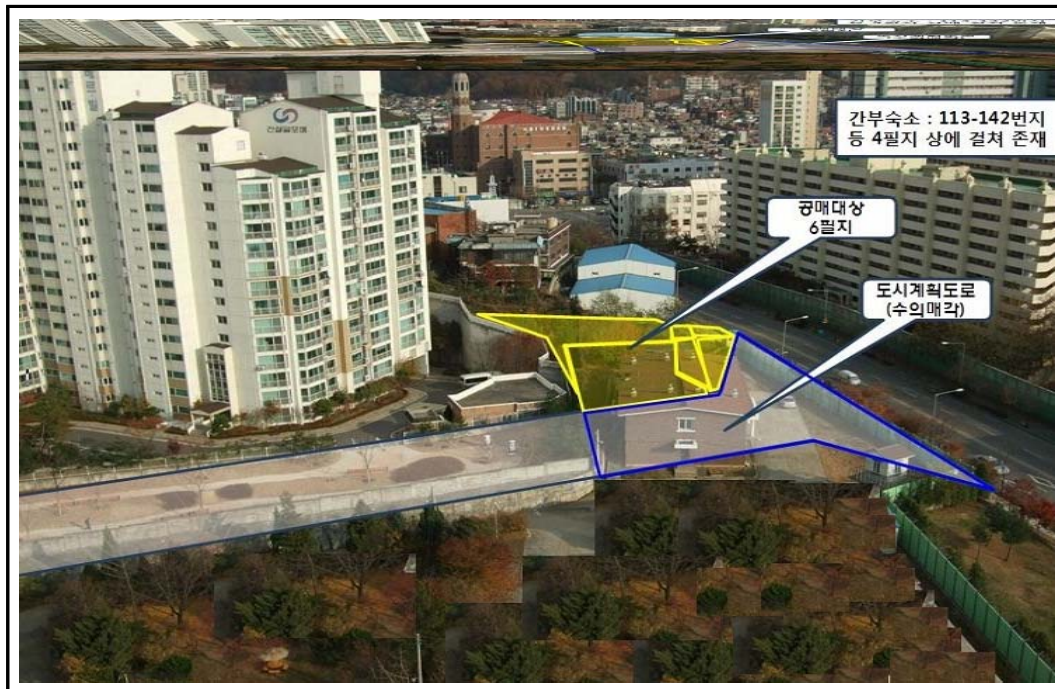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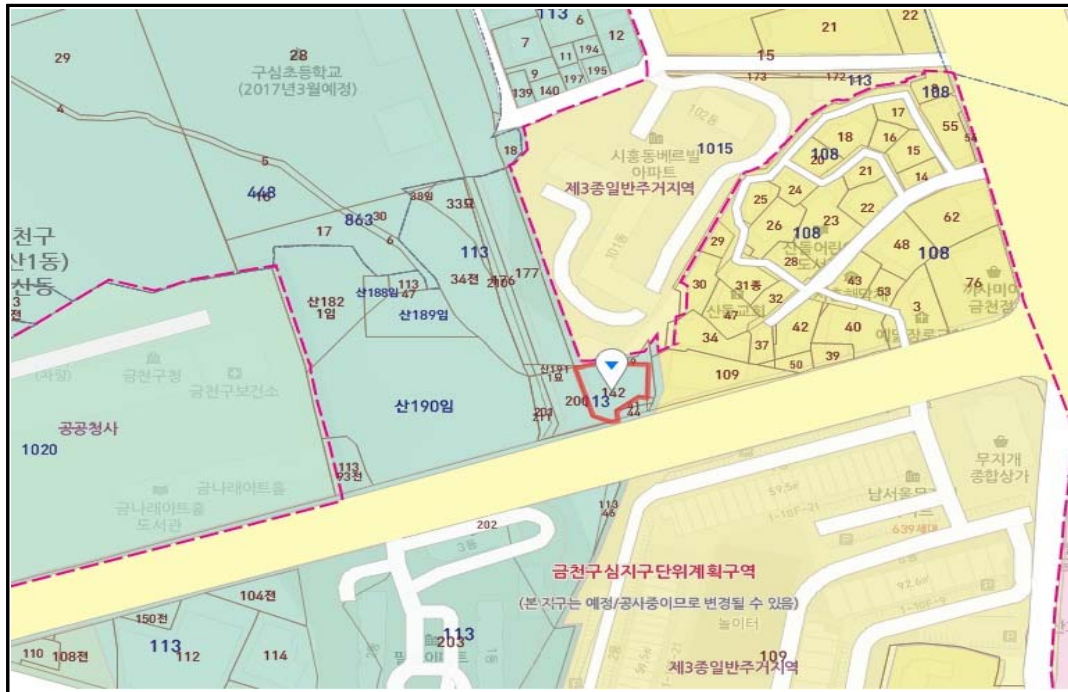
지 장 물 조 서

사업시행자 : 금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시흥동113-142회 6필지)

입면 일련 번호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실제이 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시흥동 113-142일대	나무		5주		미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강동구청고 제2016-9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64호(2006. 7.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06-47호(2006. 8.17.)로 지형도면 승인된 “구천면길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내용은 강동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사업에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촉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인, 미 통지인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년 8월 4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천호동 217-18~명일동 320-2(천일초교~명일역간)

- 금회(4차) 사업 시행지 : 강동구 암사동 421-142, 강동구 암사동 425-10
강동구 암사동 425-179, 강동구 암사동 425-187
강동구 암사동 425-186, 강동구 암사동 425-197
강동구 암사동 425-164, 강동구 암사동 425-188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 : 구천면길 도로확장공사(4차)

라.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12~15m→15~22m, 연장 1,340m

- 금회(4차) 사업구간 : 강동구 암사동 421-142~암사동 425-164(305m²)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2019.12.31.까지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4)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 구친면길 도로확장공사(4차)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암사동 421-142	37	37	도	이*수	서울 강동구 명일동 2*~5 **아파트 *08~*07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로*가 *-1 (***지점)	근저당권	
2	암사동 422-10	314	3	대	*성* 중합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동구 *호동 *80-6 *층					
3	암사동 425-179	1,828	2	대	유*학	서울 송파구 신*동 *-88 롯데*슬*드 *02-3*0*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가 *03 (***지점)	근저당권	
4	암사동 425-187	317	22	주유소	유*학	서울 송파구 신*동 *-88 롯데*슬*드 *02-3*0*					
5	암사동 425-186	335	1	대	최*영	서울 강동구 구**로 3*5 (암사동)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 구친면길 도로확장공사(4차)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연번	소재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6	암사동 425-197	329	1	대	2/3	최*호	서울 성동구 **심리동 992 *학*아파트 *02-1**5				
					1/3	최*복	서울 강동구 **동 2*5 **마을**아파트 *02-2**3				
7	암사동 425-164	25	13	대		조*철	서울 강동구 암*동 산*3				
8	암사동 425-188	226	226	도		강**로벌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암*로 *01 **아파트 *1동 *08호 (암구정동)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1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 내 한강	선박 2척	성산대교 하상 구간의 현장조사 및 시험을 위한 선박 운항	2016. 8.1 ~ 2016. 8.31	2016. 8. 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1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동호대교 ~ 행주대교	선박 2척	한강교량 공사잔재물 수거작업을 위한 선박 운항	2016. 6.13 ~ 2016. 9.23	2016. 8. 1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289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공사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3. 공사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42-1번지 등 8필지
 - 면 적 : 2,250㎡(영구 405㎡, 일시 1,845㎡)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공원 나들목 설치
 - 내 역 :
 - 보행자전용 연결통로 1개소(압입추진 방식)
 - 육갑문 1개소
 -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각 1개소 등
5. 공사기간 : <당초> 2014.10.16.~2016.04.30.
 <변경> 2014.10.16.~2017.05.31.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